

독 일 통 일 백 서

(1995년 ~ 1997년)

1998. 9

통 일 부

- 이 책자는 독일 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7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 이 연례보고서는 '95년 가을부터 '97년 가을까지 진행되었던 통합과정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일부가 기 발간한 「독일통일백서」('94),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 두 책자와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이 보고서를 번역한 주독일한국대사관 통일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과 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8. 9.

통 일 정 책 실 장

목 차

책을 내면서

제 1 장 통일으로의 길	1
제 2 장 외교·안보정책	13
I.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조정	13
1.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13
2. 구소련군의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13
3. 구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14
II. 통합군으로서의 독일연방군	15
1. 정책의 틀	15
2. 통합군	16
3. 계속적인 재건조치들	17
4. 국방통합의 재건 측면	18
4.1 교육분야	18
4.2 직업보도 서어비스	18
4.3 주택지원	19
4.4 상이한 봉급.....	19
4.5 군인원호법	20
4.6 종교생활	21

4.7	예비역 군인들의 자원활동	22
4.8	민·군협동	22
4.9	교육시설	23
4.10	동독지역 측량지원	24
4.11	공공행정의 지원	24
4.12	군용물자의 매각	25
4.13	환경보호	25
5.	경제요소로서의 연방군	26
제 3 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28
I.	국가와 헌법	28
II.	신연방주의 형성	28
1.	신연방주의 편입	28
III.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29
IV.	신연방주의 행정체제 구축	31
1.	통일이전의 상황	31
2.	연방행정체제의 구축	32
2.1	연방재산관리행정	32
2.2	관세행정	32
2.3	수운 및 해운행정	33
3.	주 행정체제의 구축	34
3.1	주 행정체제 구축과정의 전개	34
3.2	조세행정	34

V. 법치주의적 사법체계의 구축	35
1. 재판절차	36
2. 사법제도의 확충	36
2.1 판사와 검사	36
2.2 변호사와 공증인	37
3. 주민들의 소송태도와 소송건수의 부담	37
4. 사법비용의 할인	37
5. 파산법	38
6. 국가책임법	38
7. 통일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39
8. 기타사항	41
8.1 연구프로그램	41
8.2 「인민의 이름으로?-구동독의 사법제도 전시회」	41
VI. 공직근무	42
VII.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43
1. 서 문	43
2. 특수행정의 구축	44
2.1 재산관리청의 설립	44
2.2 측량과 등기제도	44
VIII. 국내치안	45
1.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45

2.	국경수비대	46
3.	연방헌법보호청법 제2조2항에 의한 주헌법보호청 설립	46
4.	민방위 및 재난보호체계의 구축	47
IX. 정치교육		47
X. 통계행정체계의 구축		49
제 4 장 형법, 불법청산, 시장경제적 재산질서 회복		51
I. 통일의 형법적 측면		51
II. 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51
1.	정권적 범죄행위	52
2.	국가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형사소추	53
3.	통일관련 경제범죄	53
4.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Ⅱ부	55
III. 복권을 통한 SED 불법청산		55
1.	형사법적 복권법의 집행과 긴급한 개선	56
2.	행정적 복권법 및 직업적 복권법과 긴급한 개선	57
IV.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		59
1.	재산법	59

2.	보상 및 조정금부법	59
V. 시장경제적 재산질서의 회복		
1.	성 과	60
2.	국유재산의 귀속	60
3.	구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의 재산	61
4.	투자우선	63
5.	물권법의 정리	63
6.	채권 조정	64
7.	토지등기부 제도	64
8.	측량제도	65
9.	임대차 개혁	65
VI. 장벽대지법		
VII.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		
제 5 장 경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I.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자원조달		
1.	공공재정 이전의 전개과정	68
1.1	연방예산	70
1.2	독일통일기금	70
1.3	유럽공동체	70

1.4.	사회보장	71
2.	1997년 까지의 이전재원 조달	72
3.	구부채의 처리	74
4.	새로운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	75
II. 경제통합의 과정		77
1.	1995년 이래 동독지역 경제상황의 전개	77
1.1	서론	77
1.2	일반경제적 전개과정	78
2.	동독지역 재건	79
2.1	경제정책적 도전	79
2.2	민간투자의 장려	80
2.3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81
3.	신탁청	82
3.1	1994년 주요임무 완료	82
3.2	신탁청 후속기관	82
4.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83
4.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83
4.2	문제점과 전망	84
5.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84
5.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85
5.2	각 산업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85
5.2.1	수공업	85
5.2.2	공업부문의 중소기업	86
5.2.3	서비스업	86
5.2.4	상업	87

5.2.5	관광업	87
5.2.6	자유업	88
6.	산업부문의 연구, 개발 및 혁신	89
6.1	통일이전의 상황	89
6.2	연방정부의 지원	90
7.	신연방주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적 혁신	93
8.	대외경제 : 코메콘에서 자유국제무역으로	97
8.1	화폐·경제·사회통합 이후 대외경제의 발전	97
8.2	대외경제에 대한 지원	97
9.	신연방주의 EU로의 통합	98
9.1	EU 규정의 적용	98
9.2	EU 구조조정기금	99
Ⅲ.	신연방주 농업의 구조조정	100
1.	1995년 이후의 농업경제의 상황전개	100
1.1	농업정책의 목표	100
1.2	법적 기초	100
1.3	농업분야 구조변경 현황	101
1.4	과거 인민소유적 농림지와 기업의 사유화	103
2.	연방정부의 대책	104
2.1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결합	104
2.2	구조조정 지원	105
2.3	구부채에 대한 규정	107
2.4	EU 농업개혁 관련 특별규정	108
Ⅳ.	신연방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109
1.	교통	109

1.1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109
1.1.1	개 관	109
1.1.2	독일통일 교통계획	110
1.1.3	기타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112
1.1.4	공공근거리 여객교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건설 지원	113
1.2	복합교통 및 화물교통센터	114
1.3	항공교통	115
1.4	해상교통과 항만	116
1.5	도로교통안전	117
1.6	도로화물운송 관련업체	118
2.	우편 및 통신	119
2.1	우 편	120
2.2	통 신	122
3.	현대적인 환경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123
3.1	식수공급과 수리보존	124
3.2	하수처리	127
3.2.1	신연방주의 하수도 연결율과 시설현황	127
3.2.2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의 절감	127
3.3	폐기물 처리	128
3.4	민간경제의 참여에 의한 경쟁력 있는 해결책	129
4.	도시건설과 지역개발	131
4.1	통일당시의 상황	131
4.2	도시건설 혁신의 법적 기초	131
4.3	도시건설 관련조치	132
4.4	도시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133
V.	노동법 관련제도의 개편	134
1.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발전	134

2.	노동시장의 발전	135
3.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 제도를 통한 사회문제의 완화	136
VI.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140
1.	신·구연방주에서의 연금법의 단일화.....	140
2.	신연방주 연금 조정과정의 전개	141
3.	연금수준.....	141
4.	「청구권 및 승계권 이양법」의 개정.....	142
5.	고령에 처한 농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43
5.1	농업 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 이양	143
5.2	「농업활동 중단에 대한 지원법」의 이양.....	143
5.3.	농림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보험의 이양	144
6.	의료보험법의 이양	144
7.	신연방주 간병구조의 구축과 정비	145
8.	상해보험.....	146
9.	전쟁희생자 원호대책	146
10.	사회부조	147
11.	보건제도의 개편	148
11.1	외래의료 서어비스 및 치과의료 서어비스	148
11.2	입원치료	148
11.3	정신병치료	148
11.4	의약품의 공급.....	149
11.5	공공보건 서어비스	150

11.6	건강보호	150
12.	장애자의 재활 및 적응	150
12.1	의료재활	150
12.2	장애자의 직업적응	151
12.3	사회적 재활	152
12.4	중장애자 현황	153
13.	외국인 지원체제의 확충 및 편입조치의 신연방주에로의 확대 ..	153
VII.	생태학적 생활조건의 단일화	154
1.	통일이전의 환경상황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	154
1.1	위험방지 : 인간과 환경의 보호	155
1.2	법적 근거	157
1.2.1	환경법의 도입	157
1.2.2	각종절차의 신속처리	158
1.3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환경정화	160
1.3.1	생태적 환경정화와 개발의 지원	160
1.3.2	갈탄 채광지역의 정화를 포함한 토양오염의 정화	160
1.3.3	고용촉진조치에 의한 환경정화	162
1.3.4	현대적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163
1.4	자연적인 생활공간의 보존	165
1.5	환경오염 정화의 효과	166
2.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 협력	170
제 6 장	교육, 학문, 연구 및 기술	173

I. 개 요	173
II. 교 육	173
1. 신연방주의 교육체제	173
2. 직업상담	176
3. 직업교육	177
3.1 지원조치	177
3.1.1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77
3.1.2 직업훈련 대상직업의 구조	178
3.1.3 여성	179
3.1.4 우수자 장학제도	179
3.1.5 장애인 지원	180
3.1.6 기업공동 직업훈련기관	180
3.2 구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증의 인정	181
3.3 직업보수교육의 촉진	182
4. 평생교육	184
4.1 평생교육 상담	184
4.2 평생교육 참가	185
4.3 시범계획	185
4.4 일반평생교육 및 문화평생교육	186
5. 연방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의 촉진	186
6. 신연방주의 EU 교육정책에로의 편입	187
III. 대학과 학문	190
1. 대학개혁	190

1.1	대학개혁 프로그램	190
1.2	대학특별프로그램	193
2.	대학내 연구의 촉진	194
2.1	특별연구 분야	195
2.2	석사과정	195
2.3	혁신과정	196
3.	대학건축	197
4.	개혁과정의 결과	197
IV. 연구와 기술		198
1.	공공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의 건설화	198
2.	프로젝트 지원	201
3.	체제전환 과정의 성과	202
제 7 장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정책		203
I. 가정실태의 개선		203
1.	사회의 근간으로서의 가정	203
2.	가정에 대한 지원	205
2.1	경제적 상황	205
2.2	자녀양육비, 자녀양육휴가	205
2.3	가정급부조정	205
2.4	생계비 보조	206
2.5	어머니와 자녀-태아 보호 연방재단	207

3.	가정지원사업 구조의 구축	207
3.1	가정지원단체, 가정自助 및 가정상담, 가정교육	207
3.2	임신상담과 가정계획의 구축.....	208
3.3	가정센터와 「아동·가정에 우호적인 지역」 경연대회.....	208
3.4	독신양육자를 네트워크 구축.....	208
3.5	가족휴양과 가족만남 지원	209
3.6	산모요양제도의 구축	209
II.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		209
1.	통일당시의 상황	209
2.	직장생활의 유연화	210
3.	경연대회 : 「가정에 친근한 기업」	211
4.	직장생활 복귀	211
5.	산모보호.....	211
6.	유아양육.....	212
III. 경제적·사회적 변화 속의 여성		212
1.	통일당시의 상황	212
2.	직장생활에서의 여성	213
2.1	노동시장정책적 조치	214
2.2	시범계획 「일자리 마련의 새로운 길」.....	216
2.3	창업	215
3.	노후보장	216
4.	사회 속의 여성	216

5. 남녀평등의 향후 발전.....	217
IV. 노인정책	218
1. 통일당시의 상황	218
2. 양로원	219
3. 사회복지원-외래, 보건, 사회복지 서서비스를 위한 조직	220
4. 자발적 참여.....	221
V. 신연방주의 청소년 지원	221
1. 출발상황	221
2. 청소년 지원	222
3. 청소년 교육기관의 건축 및 수리	223
4. 적대감과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223
5. 연방의 청소년플랜을 통한 정규 및 시범지원 조치.....	224
VI.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	225
VII. 민간 복지사업체제와 명예직 참여 및 자력구제단체 구축지원 .	226
VIII. 묘지관리	227
제 8 장 문화, 스포츠	228
I. 문 화	228

1.	통일당시의 상황	228
2.	통일조약 제35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228
3.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의 지원	229
3.1	베를린	229
3.2	신연방주	231
4.	문서관리, 문화재 반환	235
5.	결론	236
II. 스포츠		237
1.	통일당시의 상황	237
2.	일반체육	237
2.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237
2.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237
2.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238
3.	장애자 체육	238
3.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238
3.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238
3.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239
4.	선수체육	239
4.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239
4.1.1	체육단체 지원	239
4.1.2	연방트레이너	240
4.1.3	올림픽 훈련소 및 연방종합체육센터	240
4.1.4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건축	240
4.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240
4.2.1	연방트레이너	240

4.2.2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건축	241
4.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241
4.3.1	연방트레이너	241
4.3.2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의 건축	241
5.	체육학 연구	241
제 9 장 독일의 국제적 역할		243
I.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		243
1.	유럽연합(EU)	243
2.	EU의 확장	244
3.	서유럽동맹(WEU)	245
4.	NATO, 북대서양 협력회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회의	246
5.	OSCE의 확충	248
II. 통일독일의 책임 증대		251
1.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독일	251
2.	중부,동부 및 남부유럽의 안정과 소련승계국가들에 대한 지원	252
3.	구유고슬라비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262
4.	동구권 거주 독일인을 위한 지원	263
5.	개발도상국 지원정책	265

6.	외국인 및 망명자 보호정책	266
7.	분쟁지역 관리에의 참여	270

제1장 통일으로의 길

1990년 10월 3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날 까지도 연방과 각 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정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신연방주에 거주하는 수 백만 독일인들의 일상생활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물질적 풍요는 이제 더 이상 서독인들의 것만은 아니다. 40년이 넘게 분단되었던 독일에 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사회복지적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가 형성되어야 했다. 사람들은 체제전환 과정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생활조건의 급격한 변화이자, 자기정체성과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계획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들이 열망했고 결국 쟁취해 낸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광범위한 개인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독일인들이 현재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통합 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통합과정 이 끝나게 된다는 연방정부의 특별한 책임의식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물질적 통합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인프라와 주민 생활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정치·행정·사법분야에서 주민생활을 규율하는 새로운 질서가 신연방주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활동과 개인활동의 원칙으로서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의회제도가 독일 전역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기본법의 자유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1990년 가을 이후 연방과 구연방주들의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이고 법치주의적인 행정체제가 신연방주에 구축될 수 있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법치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사법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구동독공산당(SED) 정치국에 제출된 바 있는 「Schürer 보고서(1989.10)」가 이미 분석·예견한 바 있는 동독의 경제적인 몰락은 통일독일에 거대한 짐이 되었다. 신연방주의 경제 및 사회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연방주로 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이전급부(Transferleistungen)가 지원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로의 공공재정 이전 규모는 역이전을

제외하고도 거의 1조DM에 달한다. 아직 상존하고 있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건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외국방문객들도 놀라와하고 있다. 5,000Km의 연방철도와 11,000Km의 연방 장거리 도로가 건설·보수·확장되었고, 1996년 말 까지 5백만 회선의 새로운 통신망이 독일 텔레콤에 의해 구축되었다. 두 채 중 한 채 풀인 420만채의 주택이 정비되었다. 소득과 연금 수준도 서독 수준에 더욱 가까워졌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거의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를 벗어났다.

1995년 신연방주가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Finanzausgleich)」에 편입됨으로써 재정정책상의 과도단계는 이미 종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남아있다.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행정체제가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혼동상태가 제거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연방재정정책은 신연방주에서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재건과정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독일전체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수준의 고용상태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산체계의 건실화와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로의 편입을 통해 신연방주의 재정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구조를 구연방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재정 이전의 규모를 통해 이 과제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매년 서독지역 국내생산량(BIP)의 4~5%가 공공예산(사회보장보험 포함)을 통해 신연방주로 이전되고 있다. 막대한 급부가 연방으로 부터 지원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급부는 연방의 연간 총지출액의 약 1/4에 달하고 있다.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상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 직접지원 이외에도, 1995년 부터 연방정부가 이전급부(Transferleistung)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1995년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규모는 1,350억DM에 달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금까지 최고수준인 1,380억DM가 지원되었다. 또한 1997년 예산에 있어서도 신연방주에 대한 예산지출 규모는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1997년 신연방주에 대한 지출예산 규모는 1,400억

DM로서, 신연방주로 부터의 조세 및 행정수입금을 공제하고 나면 순재정 차입계획분을 초과하고 있다.

신연방주 경제구조의 긴급조정은 확실히 진전되었다. 열악했던 통일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신연방주의 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1996년 「독일과 유럽에 있어서 동독지역 재건의 기회와 위험 (Aufbau Ost - Chancen und Risiken für Deutschland und Europ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열거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경쟁시장에서 자기자신의 힘으로 자립하여 충분한 고용과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신연방주에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EU, 경제주체와 임금협약 당사자 등 경제부문에서의 책임주체들이 이에 기여해야 한다. 이들의 공동노력을 통해서만이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동독지역 재건은 서독경제의 구조와 경험, 그리고 기준을 그대로 모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체제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신연방주의 경제적 재건이라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법을 찾는 작업이다.

독일이 통일된 이듬해인 1991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1995년 5.3%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1996년에는 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신연방주 재건의 속도가 다소 늦추어졌다. 우리는 그 원인을 성장주도 세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초기의 건설 붐은 사라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서비스업 분야는 1996년에 활기차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붐이 사라진 후 남은 공백을 완전히 메꾸지는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업문제이다. 저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25%에 달하고 있다. 단축조업, 직업전환교육, 고용창출 조치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1997년 1월 현재 70만명이 실업상태를 벗어났다. 1997년 1월의 통계를 보면, 공식 실업률은 18.7%(1996년 1월 16.8%), 실업자 수는 139만3천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6년 12월보다 13만5천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도 경제성장율을 2%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을만한 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생활환경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항상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통일 직후에 이미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정책이 개발된 것이다.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주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동독지역 재건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 남을 것이다. 인프라 개선과 투자촉진 정책은 1998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향후 지원책은 1997년 초에 확정된다.

동독의 붕괴와 함께 기존의 노사관계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와 함께 나타난 과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안에 새로운 경제형태에 걸맞는 새로운 임금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현재 이러한 과정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신연방주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에 완벽한 임금협약 체제(Tarifwerk)가 존재하고 있다. 1996년에도 구연방주의 단체협약 임금수준에 접근하려는 평준화 과정이 완만하게나마 계속되었다.

근로자의 평균 기본임금 수준은 1995년 말에 서독지역 협약임금의 87% 수준이었으며, 1996년 말에 89%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한 앞으로도 수 년 간에 걸쳐 임금수준을 서독지역에 접근시키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서독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질임금이 협약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임금협약에 기속되는 고용관계를 갖는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협약임금과 대체로 일치한다. 임금협약상의 제반 근로조건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데, 1996년 말 구연방

주의 경우 37.5시간인데 비해 신연방주지역은 39.5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95년과 1996년에도 신연방주의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5년에 298억5천만DM, 1996년에 252억3천만DM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지출되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에 105만8천명이, 1996년에는 81만7천명이 고용되어 노동시장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었다. 지출액의 감소현상은 전적으로, 실업자 수의 감소현상은 부분적으로, 고령과도기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령자들의 연령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실업자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97년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 가지고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제반 경제조건 개선의 통째로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고용촉진개혁법(Arbeitsförderungs-Reformgesetz)」에 의한 연방노동청의 절약과 효율성 향상이 여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금협약 당사자들(Tarifpartner)들은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창출을 지향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와 노동조합, 독일사용자협회와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동독지역에서의 고용확대를 위한 공동 발의(Gemeinsame Initiative für mehr Arbeitsplätze in Ostdeutschland)」를 꼽을 수 있다. 동독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이 연합체의 목적은 1998년 부터 연평균 약 10만명의 고용인원을 추가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이다.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세제개혁(Steuerreform)의 효과로 인해 중기적인 고용상황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또한 연금법에 있어서도 법적인 평준화가 종결되었다. 1992년 1월 1일 부터 서독지역의 연금법이 신연방주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점으로 부터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법정 연금보험법상의 연금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정되고 있다. 연금 전환 당시 이미 연금 수령자였던 사람들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과 연금연령 도달예정자들을 위한 특별규정은 1996년 말까지 모두 만료되었다. 1992년 1월 1일 이전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유족연금법이 신연방주에 도입됨에 따라 신연방주 미망인들의 물질적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1996년 7월 1일 현재 월간 미망인 연금액은

평균 878DM로 인상되었다. 1996년 7월 1일 부터 연금지급액은 신연방주의 임금인상율(매년 7월 1일 기준)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다. 이전에는 매년 두 번씩 조정되었다. 1996년도 조세법안에 따른 향후 순연금지급예상액이 지금 까지 예상됐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조정 절차의 시행은 필요하다. 연금조정 절차의 시행에 따라 신연방주 임금수준의 변동과정에서 보여지는 역동성이 연금분야에도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임금변동의 역동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연방주 주민들은 연금조정 과정에서 더 높은 연금조정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금수준은 근로자 수입의 변동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고, 기여금에 기반을 둔 연금법적·연금인구학적 구조의 차이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범위 내에서 신·구연방주의 연금수준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연금의 평균화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점을 짐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연방주의 월간 연금액은 1,597.57DM로서 1,941.59DM인 서독지역의 8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신연방주 남성과 여성들의 평균가처분연금액은 1,345DM으로서 1,259DM인 서독지역의 106.9%에 달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별로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은 각각 98.4%와 134.4%이다. 신연방주에서 높은 연금급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보험인구학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연방주 남성들의 보험가입 기간은 평균 46.37년인 반면, 구연방주지역은 37.47년이다. 여성들의 경우, 신연방주는 32.88년인 반면, 구연방주는 25.13년이다.

마찬가지로 보건분야에서의 새로운 질서 구축도 종결되었다. 의료 및 치과 외래 서어비스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다. 의료 서어비스의 90% 이상이 현지 의사와 치과의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병원 운영체제는 구연방주의 병원 운영체제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수 십년간 충분한 보수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신연방주 병원건물들의 열악한 상황은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입원진료 서어비스의 수준을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보건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 제14조를 통해 1995년~2004년 동안 매년 7억DM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각 주정부가 적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병원 이용자와 진료비 부담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기여금을 부담하게 된다. 최소한 210억DM에 달하는 이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입원치료 서어비스는 2004년까지 서독지역의 수준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의 도시건설 지원은 경제재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비록 통일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정비와 도시기능의 개선과 함께 특히 건축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호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작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건축유산의 보전과 도시건설의 혁신을 위해 신연방주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1990년~1996년 동안 약 54억DM를 제공하였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적인 재정지원을 합치면 125억DM 이상의 자금이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분야에 투입되었다. 1997년에도 연방은 5억2천만DM를 각종 도시건설 관련 조치들을 위해 신연방주에 제공하게 된다.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방정부는 다음 목적들의 달성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거주, 문화, 상공업, 서어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부여를 통한 활력있는 도심창출 및 건축문화적 유산들의 보존
- 사회·생태적 측면의 고려하에 건축물의 보전과 개선
- 거주지역의 개선과 도시건설적 기능의 개선을 통해 대규모 신축지역을 바람직한 도시생활지역으로 계속 개발

그동안 도시건설 지원책은 신연방주 건축물의 보전과 개선, 주거만족, 시·군의 매력과 입지조건을 계속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도시건설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지원프로그램과의 결합 및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 및 노동정책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다.

생활의 질은 생태학적 기본 생활조건과 현대적인 환경보호인프라 수준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공동협약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통일 초기에 특수한 환경보호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산업, 공기정화와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등의 분야에서 생태학적 인프라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0년 까지 독일전체에 국제적 수준의 환경조건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환경상황과 환경인프라가 점점 개선되어감에 따라,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차원의 지원은 그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자연의 지속적인 이용 및 환경친화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여전히 취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의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연방 지원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 특히 E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부터의 지원책도 활용될 수 있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프로그램 차원에서 신규승인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연방환경부는 1995년과 1996년에 총 250만DM를 신연방주에 지원하였다. 폐수처리, 공기정화와 환경친화적 교통인프라 부문이 중점지원 대상이었다.

1990년~1993년 동안 이루어졌던 신연방주 문화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도적 재정지원이 종결된 후, 연방의 책임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문화시설에 집중되었다.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예를 들어 라이프찌히의 독일도서관, 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 이외에 무엇보다도 소위 「등대(Leuchtturm)」라고 불리는 문화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폐쇄적인 문화 인프라분야에서의 특별한 재건수요를 고려하면서, 선정된 사안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재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의 정도가 검토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목적의 지원에 편입되어야 마땅한 장벽과 경계선 부동산의 판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방차원의 문화지원은 수도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민족적이고 국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유적에 집중되어 있다. 베를린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는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3억5천4백만DM와 4억3백만DM를 지출하였다. 1997년에도 4억1천4백만DM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연방지원의 대부분은 베를린의 문화시설과 프로이센 문화재 관리재단 및 베를린 축제회사의 행사계획과 같이 국가전체적인 의미를 갖는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차원의 「등대 프로그램(Leuchtturm-Programm)」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신연방주 소재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성 재단
-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 자료관
- 데사우 건축재단
- 바이마르 고전주의재단
- 부헨발트, 작센하우스, 라벤스부뤼크 사적지
- 소르벤인들의 문화시설
- 루터공회당과 Melanchton의 생가(Wittenberg)
- 루터가 출생한 집과 루터가 사망한 집(Eisleben)
- 프랑켄재단(Halle)
- 뤼어스트 뤼클러 파크 재단(Muskau)
- 독일 해양·수산업 박물관(Stralsund)
-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Berlin)
- Wartburg 재단(Eisenach)
- Dessau-Wörlitz 문화재단
- 뤼어스트 뤼클러 박물관 재단과 브라니츠궁
- Lessing 박물관(Kamenz)
- Kleist 기념연구소(Frankfurt/Oder)
- 중부독일 바로크음악 연구공동체(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독일의 통일은 광범위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일반체육과 선수체육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야 했다. 이러한 신체제의 구축은 1990년~1993년 동안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구연방주지역의 수준에 미달되는 신연방주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개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독일체육연맹

은 1992년 연방정부에 소위 「황금계획(Goldener Plan Ost)」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스포츠 시설 개선분야를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계획과 관련된 투자지원 법안에 편입시켰다. 선수체육에 있어서는 새로운 체육단체들이 신연방주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장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책 2000(Förderkonzept 2000)」이 개발되었으며, 1997년 부터는 독일체육연맹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범연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선수 및 지도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동독지역으로의 재이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연방주에 7개의 올림픽 훈련소와 연방종합체육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1996년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체육시설의 새로운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더욱 발전되었다. 이로써 서독지역에 유효한 기준들이 신연방주의 체육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이미 종결된 물질적인 통합과정과는 달리, 내적인 통합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태도의 변화가 마지못해 구조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의 과정은 서로 상이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의 생활에서 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교적 장기적인 과정들이 구조적이고 단기적인 법적 조건들의 변화를 뒤따르고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단체들간의 협조가 요구되는 이러한 과정을 주의깊게 수행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물질적 통합과 내적 통합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이러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생활조건들의 광범위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들을 세밀히 고려해야 하며, 참을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사려깊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의 길은 국가의 정치적, 법적, 도덕적 원칙들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그 목적은 자기정체성과 책임의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개개인은 「나는 기본법의 기본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지킬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 이 목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동독과 서독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

내가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서 연방정부가 제거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기본법의 정치적 가치질서에 대한 동독지역에서의 동의의 부족
- 구동독의 권력구조와 일상생활에 대한 서독인들의 정보 및 이해 부족
- 독일의 민주당, 정치·국가기관들에 대한 동독지역에서의 신뢰 부족
- 「동독 대 서독(Ost gegenüber West)」 내지 「서독 대 동독(West gegenüber Ost)」이라는 감정적 태도, 서독지역 사람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동독지역 사람들은 고마와하지도 배우려하지도 않는다는 지레짐작적인 상호불만
-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시민운동,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와 같은 시민사회의 원칙에 대한 동독 및 서독지역에서의 이해부족
- 2등국민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신연방주 주민들이 동독의 국민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는 자기존중 의식의 부족

이러한 점에서 내적 통합은 헌법에 의해 제시된 가치질서의 원칙위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의식이 있는 독일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적 통합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은 지식과 가치의 동시적인 조정과정이며, 신연방주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적 통합은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과정이며,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들은 국가와 사회에서의 가치변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의 부분주체들이다. 내적 통합은 신연방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내적 통합은 독일 전체 국민에 대한 사항이다.

자기정체성과 내적 통합의 관계는 공개토론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연방하원의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여기에서 종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공공기관과 자신의 능력과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정체

성은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에 있어서 개개인은 그가 새로 편입되는 유대관계가 모래 위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신뢰의 기본원칙 위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여러 방면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으나, 서독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 이러한 사실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서독지역에서의 삶의 계속성은 이제 공동의 국가가 된 독일의 함께 성장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동독지역에서의 인생계획의 단절과 부딪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듯이, 「함께 속하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나긴 과정이다.

동독의 붕괴에 따라 동독정부가 직·간접으로 호도해왔던 모든 이념과 주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 사상과 재능과 기억들이 갑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자기정체성은 파괴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제반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체념과 무기력이 만연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꺼이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는 구성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민주사회는 유대감과 협동심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들에 의해 유지된다. 정치적 재건과 같은 근본적인 전환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유대에 대해 그들이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방법과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서독으로의 이주 후에 Reiner Kunze는 동독에 남아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도착했다. 이 곳 또한 나의 조국이다」.

대부분의 신연방주 주민들이 통일된 독일에 대하여 이와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적 통합은 달성되는 것이다.

제2장 외교·안보정책

I.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조정

1.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독일통일에 따라 발생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을 통일조약 제12조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였다. 통일조약 제12조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존속, 조정, 효력상실 등을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체결 당사국과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독이 체결한 것으로 공표한 2,600건의 국제조약 중 80% 이상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 구소련군의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1990년 10월 9일 「독·소간 이양협정(Überleitungsabkommen)」과 1992년 12월 16일 양국간 「공동성명」에 의해 합의된 구소련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이들 병력의 주둔비용과 철군비용 및 정착비용에 대해 155억5천만DM에 달하는 독일의 재정적 지원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구소련군의 철군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구소련군의 기한부 주둔과 철군비용으로 30억DM, 철수병력 수송비용으로 10억DM가 1994년에 이미 지불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 소련에 30억DM를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하고, 소련은 1995년 부터 이를 상환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파리클럽에서 다자간 합의의 원칙에 의해 체결된 러시아에 대한 채무 상환기간 연장협정에 편입되었다.

철수한 구소련 군인들이 고향에서의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계획에 85억5천만DM가 지출되었으며, 독일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와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총 43개의

주택건설지역에 약 4만5천동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는 약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 주택 이외에도 40개의 학교, 60개의 유치원, 33개의 병원과 외래진료소, 30개의 상업단지, 36개의 화력발전소, 32개의 정수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인프라들이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 생산공장 10개소가 건설되었다. 2개의 주택건설 콤비나트가 설립됨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은 1997년에 완전히 종결된다.

1996년 말에 종결된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총 2억DM가 15개의 직업전환교육센터(러시아 10개, 우크라이나 3개, 백러시아 1개, 카자흐스탄 1개)를 건설하는데 투입되었다. 직업전환교육센터에는 상업직과 기술직으로의 직업전환 교육을 위해 총 3,850개가 넘는 현대적인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2만5천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 중의 대부분이 그들의 자격에 맞는 직업을 구하였다.

재정적 지원은 소련군이 별다른 마찰 없이 조속히 철군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흐스탄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3. 구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연방환경부의 「구소련군 서부주둔병력 주둔지역 중 환경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소련군 서부주둔병력(WGT)이 사용해 온 총면적 231,000ha의 지역과 1,026건의 부동산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중 전체적으로 약 33,000ha의 지역이 환경오염 의심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 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와 수단들이 이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일반적 응용이 가능한 이러한 경험과 사례들은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적용가능하며, 이미 다방면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중부·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GUS) 국가들이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개발하였던 방법들이 극도로 오염된 군사지역의 시범적 정화사업에 도

입되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루었다.

게다가 경험의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각종 조치방법들이 평준화되고 기술이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II. 통합군으로서의 독일연방군

1. 정책의 틀

독일연방군은 1990년 이래 그 4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혁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기나긴 과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두 개의 커다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자, 우선 동독 인민군(NVA)이 해체되고 신연방주에 독일연방군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독일 전체병력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축·전환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새로 주둔하게 되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독일연방군은 33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감축하였으며, 936개의 주둔지 중 1/3을 감축하였다. 2,500대 이상의 전차, 4,200대 이상의 장갑차, 1,600문 이상의 대포, 140대 이상의 전투기와 3백만 개의 지뢰가 폐기되거나 매각되었다. 1995년 1월 신연방주에 주둔하고 있는 연방군 병력이 NATO에 편입됨으로써 연방군 개혁의 첫단계는 종료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 연방군 개혁의 정책적 원칙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었다. 그것은 향후 안보상황의 전개와 인구통계적 추이 및 가용자원의 한정 등을 감안하여, 병력을 개인별 능력, 규모, 조직에 따라 변화된 임무의 수행에 적합하게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병무행정 분야에서도 임무의 변화와 병력의 감소에 따른 행정적 적응이 이루어졌다.

2. 통합군(Armee der Einheit)

독일연방군은 내적 통합의 선도자이다. 불과 몇 년 안에 통합군이 탄생하였으며, 독일연방군은 구동독과 구서독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있다. 약 11,000명의 동독인민군 출신 군인들이 편입되어 연방군 군인으로 양성되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업적이다. 그동안 25만명이 넘는 신연방주 출신의 젊은 남녀가 연방군에서의 근무를 통해 민주사회에서 군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경험하였다. 병역의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내적 통합은 공동의 목적을 향해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동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더욱 진전될 것이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약 5만명의 신·구연방주 출신 군인들과 2만명 이상의 신·구연방주 출신 민간인 군속들이 120개소의 군사주둔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통합군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연방군 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신·구연방은 하나로 묶여지고 있다. 에어푸르트의 제39기갑여단은 튀링겐주와 헤센주에 소재하는 예하부대들을 지휘하고 있으며, 노이브란덴부르크의 제14기계화보병사단은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 브란덴부르크주와 니더작센주에 주둔하고 있는 예하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의 경우에는 베를린-가토프의 제3비행사단 예하에 신·구연방의 단위부대들과 출동부대들을 소속시켰다. Lagge 지역의 제73비행전대와 Bad Sülze/Böhlendorf 지역의 제2대공미사일전대 외에도 니더작센과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 주둔하고 있는 2개 출동전대와 1개의 대공미사일전대도 그 예하에 소속되어 있다. 1995년 1월 1일 이래 NATO의 통합방공체제의 틀 속에서 독일 전체 영공의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있다.

수 많은 신연방주 주둔 병사와 부대들이 평화유지의 임무를 띄고 유고 내전지역에 투입되었다. 신·구연방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간에는 이제 더이상 군사체제, 장비, 교육, 전투 준비태세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독일에 하나 밖에 없는 일부 근무처를 포함해 18개의 주요한 근무처가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거나 이전되고 있다. 해군의 고속함 전단이 이전된 Warnemünde는 현대적인 해군기지로 떠올랐다. 육군

장교학교는 하노버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전된다. 연방군 종합병원은 베를린과 라이프찌히에서 운영되고 있다. 포츠담의 군사역사연구소는 독일 전체와 세계각국으로 부터 온 군인들과 학자들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Strausberg에 있는 연방군 정보·통신아카데미와 정신전력학교 및 연방군 사회과학연구소는 신연방주 시민들과 군인들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인들과 민간인 군속 및 이들의 가족들을 위한 주택건설을 포함한 인프라의 개선은 우선해결 과제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3. 계속적인 재건조치들

연방국방부의 부대주둔지 결정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축으로 인해 단위부대들의 신연방주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원의 감축은 신연방주의 생활조건과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Lagge 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은 공군의 우선적인 과제이다. Lagge 지역의 제73비행전대와 Sobernheim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분전대를 통합하는 것은 1997년에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199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Delmenhorst의 제24대공미사일군단을 Bad Suelze/Boehlendorf로 이전하는 계획과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Holzdorf 지역의 제62수송비행전대의 통합계획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은 제4군단내 비정규전 부대를 위해 Brueck/Neuseddin에 중앙동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새로운 주둔개념이 최초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구서독지역에 대한 모델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신연방주 병무행정체제의 구축은 종결되었다. 신연방주 병무행정의 기본

구조와 인적 자원은 서독지역의 그것과 같다. 통합과정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는 1998년 부터 Kiel에 있는 제1병무행정 지원청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새로운 국방지구(Kiel 지역의 제1방위지구사령부와 제1병무행정지원청)는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와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 그리고 함부르크시를 포괄하게 된다.

4. 국방통합의 재건 측면

4.1 교육분야

신연방주 출신 장교들과 하사관(의무복무자와 직업군인)들은 서독지역 출신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책도 다르지 않다. 기술훈련 분야에서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보수교육이 시작되고 있으며, 군대복무 후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12,000명이 「군사행정 및 국방기술 연방아카데미」, 「연방공공행정대학(연방군사행정학부)」과 「연방군사행정학교」의 중앙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제7병무행정지원청 소속의 관리직, 사무직, 기능직 공무원 약 47,000명이 직장교육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미 1991년 부터 신연방주 출신 신규채용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훈련생을 양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약 470명의 교육생 정원이 배정되었다.

신연방주에 근무하는 연방 및 주 정부 근무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영어와 불어 중심)은 연방언어학교 Naumburg/Saale 분교에서 이루어졌으며, 1997년 3월 부터는 Strausberg의 제7병무행정지원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4.2 직업보도 서어비스

독일연방군에 편입되지 못했거나, 독일연방군에서 2년간의 한시적 근무를 끝마치고 전역한 구동독 인민군 군인들을 위한 직업전환교육이 1993년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12,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 교육은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연방노동사회부와와의 협조 하에 독일연방군의 직업보도 서어비스 종사자들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다

「군인원호법(Soldatenversorgungsgesetz)」의 규정에 따라 1993년 부터 신연방주에서 기본병과에 한시적으로 근무했던 약 45,000명의 군인들이 직업보도 방침에 따른 연방군의 직업보도 서어비스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1996년에는 총 13,250명의 군인들이 직업적 자질과 일반 직업생활으로의 편입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일반교육, 직업 전환교육, 보수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군인원호 관련법상의 제반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다.

4.3 주택지원

1991년과 1992년 이래 신연방주에는 약 1,600동의 연방군 주거용 주택이 신축되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 3억DM의 대부분은 연방국방부의 개별계획에 의해 조달되었다. 또한 현재 850동의 주택이 건설 중에 있으며, 1,350동의 주택에 대한 추가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은 2000년에 종결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약 3억5천만DM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은 연방건설부의 개별계획에 따르게 될 것이다.

약 64,000동의 구동독인민군 임대주택이 신연방주에서 인수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700동이 연방군 숙소로 정비되었으며, 7,800동이 정비 중에 있다. 이 정비사업은 연방재무부의 개별계획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4.4 상이한 봉급

통일 당시 동·서독지역 간에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통일조약은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동독지역의 경제 및 재정상황의 전체적인 발전추이에 따라 서독지역의 임금 수준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

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의 경제발전 정도와 공공예산의 재정력을 감안해 볼 때, 점진적이고도 장기적인 임금 평준화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연방주의 공무원, 판사, 군인들의 임금은 구연방주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협약의 변경(Tarifänderungen)에 따르고 있다. 1996년과 1997년도 「연방 봉급 및 보조수당 평준화 법률안」에 따르면, 1997년 9월 1일 현재 신연방주의 임금 수준은 구연방주지역의 85%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임금분야에서의 법적 형평 달성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다.

신연방주의 기본병과 군인들은 이미 1991년 6월 30일 부터 군인봉급법(Wehrsoldgesetz)에 따라 구연방주지역의 기본병과 군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다.

4.5 군인원호법

신연방주 행정체제의 구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구연방주지역의 전문인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원호법(Beamtenversorgungsrecht)」과 함께 군인원호 관련 제반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퇴직군인을 고용주를 달리하는 신연방주의 공법적 고용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전고용주가 지게 되어있던 원호부담이 어느 정도 대체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연방주 공공예산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일단 1996년으로 한정되었던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1999년까지로 연장된다. 게다가 1994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로 되어 있던 관련규정들도 1996년 까지 연장되었는데, 이로써 퇴직군인들을 한시적으로나마 신연방주의 재건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용관계로 편입시키기가 용이해졌다. 이 규정들을 통해 퇴직군인들의 추가소득 상한선이 30% 정도 높아졌으며, 신연방주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완전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총근무기간에도 추가로 합산될 수 있다.

동독인민군의 직업군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전역하게 되는 고령자들에 대한 원호상황(Versorgungssituation)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 군인들은 독일

연방군에서의 짧은 복무기간 때문에 최소원호지원(Mindestversorgung) 수준의 지원청구가 가능할 뿐이며, 60세 이상자에 대한 일시퇴직금(Ruhegehalt) 인상조치에서 배제되어 있다.

4.6 종교생활(Militärseelsorge)

종교와 신념, 지식의 자유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대동맥이자 본질적 특징이다. 근무수행과 관련한 몇가지 제한을 제외하고, 이러한 자유권은 독일연방군 군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신적 안정과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대한 군인들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보장되고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간의 군종활동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연방군 내에서의 종교활동 영위의 권리는 신연방주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군종활동은 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신연방지역에의 연방군 체제 구축과 함께 구연방지역에 적용되어 오던 국가교회법적 규정들에 따른 카톨릭 군종활동이 신연방주에도 도입되었다. 주 정부의 관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8개의 카톨릭 군종근무처가 설치되었다. 포츠담의 제7, 8 카톨릭군종처와 그 예하의 Neubrandenburg, Leipzig, Bad Frankenhausen, Berlin, Burg, Eggesin/Karpin과 Schwerin 군종사무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도들이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고 부대 소재지도 분산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신연방주에서 개신교의 군종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는 8개의 신연방주 주 교회가 군종목회 활동에 대한 협약을 국가와 교회 간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연방주 교회들의 희망에 따라 1996년 6월 12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개신교종교회의(EKD)」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방군내 개신교 군종활동의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종업무에 종사하는 목사들은 「독일개신교종교회의(EKD)」에 고용된 교직자가 되며, 이들은 개신교 군종사(Militaeribischof)의 지시에 따라 군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 교직자가 신연방주 군대의 군종업무에 대한 전권 수입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근무조건을 지원하고 보장한다.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개신교의 군중활동 체제는 현재 포츠담의 전권 수임자와 Eggesin, Berlin, Leipzig, Strausberg와 Weissenfels의 목사들로 구성되게 된다. 현재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개신교의 군중활동 체제 구축작업은 1997년 중반에 종결된다.

이러한 기본협약은 협약체결자의 의사에 따라 잠정적인 해결책으로서만 기능하도록 되어있다. 동일조건에 따른 군사통합을 군중분야에서도 이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국방부는 신연방주의 8개 주 교회가 현재의 군중협약을 앞으로 단일한 법적 원칙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잠정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유효한 범위내에서 군중협약을 제한없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4.7 예비역 군인들의 자원활동

「독일연방군 예비역연합(Verband der Reservisten der Deutschen Bundeswehr)」은 연방군 내에서의 자원활동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 이외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방예산에서 조달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예비역 자원활동의 수준을 구연방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신연방주의 각 주에 각각 2개소의 「독일연방군 예비역 연합」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국방관련 법률들과 통일조약상의 제반 원칙을 근거로 보충적인 규정들이 제정됨으로써 동독인민군 군인들은 통일과 동시에 연방군의 자원이 됨은 물론, 「독일연방군 예비역 연합」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4.8 민·군협동

민과 군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령부 당국은 郡(Kreis)과 주(Land)와 별다른 마찰없이 협력하고 있다. Kiel 지역에 있는

제1방위지구사령부의 국방문제 관련 협의파트너는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와 구연방지역의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주 정부이다. Leipzig 지역의 제7방위지구사령부와 제13기계화보병사단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일반 군사행정적 사안에 있어서 9개의 방위지구사령부와 베를린의 주둔사령부가 협의 파트너이다.

공군은 Erfurt, Holzdorf와 Laage에 탐색 및 구조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군은 Parow(1998년 1월 1일 부터는 Warnemünde)에 탐색 및 구조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공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민간항공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Bad Saarow, Jena, Neustrelitz에 항공구조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신연방주 북부지역에 대한 신속한 우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까지 군사비행 안전요원이 투입되었으며, 우편 야간항공 배달업무를 수행을 위해 양성된 민간인 비행안전요원들이 Laage 지역의 군용비행장에서 일하고 있다.

4.9 교육시설

현재 독일연방군은 전투병과와 함께 산업, 수공업, 행정 등 11개의 다양한 관리병과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약 460개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이미 1991년에 Doberlug-Kirchheide에 첫 교육실습장을 설치한 바 있다. 두번째 실습장은 1995년에 Spechtberg와 Basepohl에서 운영되었다. 게다가 육군은 1995년에 처음으로 Berlin과 Gartz의 민간 교육기관에서 군사분야의 화물차량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1996년에는 조직·인사분야의 사무요원 및 금속·전자공학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하고, 위탁강의를 해 주는 교육전문회사가 Strausberg에 생겨났다.

공군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실습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교육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993년에 Holzdorf에 교육실습장이 설치

되었다. Trolenhagen 지역의 교육실습장 설치 등 추가적 교육실습장의 설치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군은 해군기술학교가 들어서게 될 Stralsund/Parow지역에서 한시적 근무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공인 직업교육을 1992년 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2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는 산업기술자와 기계기술자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2년 동안 계속되는 이 교육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매년 24명이 교육을 받았다.

4.10 동독지역 측량지원(Vermessungsunterstützung Ost)

그동안 방치되었던 신연방주의 토지대장과 부동산제도의 구축을 위해 최근 4년간 신연방지역 측량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측량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대규모 투자나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는 불분명한 소유관계가 투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에 총 107명의 군인이 이 측량지원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 측량지원 사업은 현지 당국이나 주민, 언론들로 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희망에 따라 1997년에도 약 50명의 군인이 투입된 가운데 계속 추진되고 있다.

4.11 공공행정의 지원

독일연방군은 신연방주의 공공행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Gauck관청(Stasi 문서관리청) 지원인력으로 25명이 진출되었으며, 128명이 파견되었다(이는 1996년 10월 1일자로 종료되었다). 238명은 인력보충을 위해 주 행정당국 근무처로 파견되었다. 그 사이에 이 중 213명이 진출되었다. 공공재산관리직 공무원으로 6명이 진출되었으며, 24명이 파견되었다(이는 1996년 10월 1일자로 종료되었다).

4.12 군용물자의 매각

군사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연방주에 대한 교육임무로의 신속한 임무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와함께 도태된 구동독인민군 물자 처리와 감시임무에 대한 연방군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했다.

연방정부 산하의 「물자저장서어비스회사(MDSG)」가 구동독인민군 물자의 감시와 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회사는 최대 1,820명의 인원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인원의 대부분은 주로 연방군으로 부터 인계받은 인원들이었다. 1994년 12월 지분권의 매각을 통해 「물자저장서어비스회사(MDSG)」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동독인민군 물자 전체와 함께 Pinnow지역의 「Buck Inpar 회사」로 사유화되었다. 이로써 이 업무의 장기적인 존속이 보장되었으며, 적어도 일부 협력업체들에게는 일자리가 계속 보장되게 되었다.

폐기되거나 재처리되어야 할 물자가 아닌 한, 구동독인민군의 물자는 신연방주의 유자격자, 다른 관할구역, 우방국가, 박물관 등과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에 제공되었거나, 매각주식회사(VEBEG)가 연방정부를 위해 신탁관리하면서 처분하였다.

4.13 환경보호

독일연방군은 1990년 동독인민군으로 부터 약 277,000ha에 달하는 약 2,350건의 부동산을 인수하였다. 또한 소련군의 철수를 통해 52,531ha 규모의 부동산 21건도 인수하였다.

이 지역의 환경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격납고와 지하창고에는 많은 위험물질이 쌓여 있었다. 인프라, 특히 군용물 공급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국경선 지역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훈련장과 사격장은 탄약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위험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

음으로써 커다란 환경오염이 나타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1,877건의 부동산이 완전히, 15건의 부동산이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의 일반토지재산으로 이양되었으며, 그 면적은 109,666ha에 달한다. 남아있는 부동산 중에 약 350건의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연방군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이래 이 부동산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 전지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느 정도 긴급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2,200개의 지역이 오염 가능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16개 주둔지의 장비로 인한 오염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지역들에 대한 난방시설 정화작업은 1996년에 완료되었다. 4천5백만 DM의 자금으로 508개의 시설이 정화되었다. 이로써 연간 먼지 배출량이 8,000톤에서 25톤으로 낮아졌으며, 아황산가스의 배출량도 10,000톤에서 500톤으로 낮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동비용도 1억6천만DM에서 8천2백만DM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1991년에 시작된 위험물질의 처리는 1995년에 종결되었다. 4만8천톤에 달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1억8천5백만DM가 사용되었다.

연방군의 감독하에 1,477.7Km에 달하는 국경지역의 시설물들이 철거되었다. 347.7Km에 달하는 위험지역인 국경차단지역에서 1,104개의 지뢰가 발견되어 폐기되었다. 이 지역은 이제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한」 지뢰가 없으며, 민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훈련장의 탄약제거 작업도 시작되었다. 1996년 말 까지 Altmark 군사훈련장(총면적: 약 23,000ha) 중 1,550ha가 정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9,330만DM가 지출되었다.

5. 경제요소로서의 연방군

1991년 이래 연방군은 군수품 조달사업 분야에서 약 40억DM의 주문을 신연방주 기업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주문량의 상당한 부분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1991년~1996년 말 동안 건설사업을 위해 약 55억DM가 지출되었는데, 이 중 10억7천만DM는 1996년에 지출된 것이다. 신연방주에서의 대규모 건설계획으로는 Warnemünde-Hohe Düne 지역의 해군 지원기지 건설과 Laage 지역의 공군 비행장 건설, Stralsund/Parow 지역의 해군기술학교 건설, 베를린, 라이프찌히 지역의 연방군 종합병원과 앞으로 알버트슈타트-카저르네 드레스덴 지역에 들어서게 될 육군 장교학교 건설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8억DM이다.

최근 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방군은 많은 양의 주문을 신연방주 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연방군은 다른 연방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제3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I. 국가와 헌법

1995년 7월 1일 까지 헌정분야에서의 전개상황은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1996.6)」 55페이지~65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II. 신연방주의 형성

1. 신연방주의 편입

기존 동독지역에 존재했던 5개 주의 부활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설치법(Laendereinfiuehrungsgesetz)」이 시행되어 구동독의 행정지구(Bezirk)에 대한 병합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연방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경우 구동독의 행정구역 개편조치(1952.7.23) 이전까지 소속되었던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소속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설치법은 이런 지역들을 위해 해당 주간의 조약 체결을 통해 주민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 사이의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1990년 10월 3일 연방주의 재편 이후에도 1952년 7월 23일 이전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주로 다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고려한 것이다.

1992년~1996년 동안 브란덴부르크주와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총 2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교환), 튀링겐주와 작센주(총 10개의 튀링겐주 지방자치단체가 작센주로 복귀)가 각각 「주경계선 변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발효시켰다. 기본법 제29조(연방지역의 재편)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률규정은 기본법 제143조제2항(통일관련 경과규정)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2월 31

일까지만 유효하다. 그 이후로는 오직 통일 이후 신·구연방주간의 경계선 변경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법 제29조만이 적용될 것이다.

주간 경계선 변경은 관련 주들 간의 조약이나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을 통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숫자가 기본법에 명시된 숫자(5만명)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기본법 제29조제7항). 그 일례로서 1993년 3월 2일과 3월 9일자 「주간 조약(Staatsvertrag)」을 통해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 소속 Neuhaus가 니더작센주로 복귀한 것을 들 수 있다. 합동헌법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기본법 제29조제7항의 개정을 통해 주민 인구수가 5만명(개정전: 1만명)을 넘지않는 지역에 대한 병합·재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신설된 기본법 제29조제8항은 관련 주들간의 조약을 통한 지역 병합·재편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경우에 편입되는 주의 주민투표를 통한 확인절차와 연방구성의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연방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기본법 제29조의 「주간 조약」에 의한 병합·재편 규정에 따를 수 없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지역의 병합·재편은 통일조약 제5조(기본법 개정)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과정에서 신설된 기본법 제118a조(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재편)에 의해 가능해졌다.

기본법 제118a조에 따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병합을 위한 양 정부 사이의 조약은 1996년 5월 5일 주민투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기본법 제118a조가 신설됨으로써 용이해진 지역병합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1991년~1995년 동안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조직적·법률적 준비작업과 확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1996년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이전준비와 Bonn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조정

조치들이 실천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베를린과 Bonn지역에 대한 계획과 이전대상 공무원들을 확정하고,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이전을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완료하기 위한 수 많은 기본적 조건들과 특별원칙들이 결정되었다.

1991년 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에 대한 조직적이고 법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991년 6월 20일자 연방하원의 소재지 결정
- 1991년 7월 5일자 연방상원의 소재지 결정
- 연방부처의 제반기능을 각각 베를린과 Bonn 지역으로 분배·조정하는 조합모델(Kombinationsmodell)에 따른 연방정부의 소재지 결정 및 Bonn지역에 대한 조정조치들에 관한 연방정부의 1991년 12월 11일자 결정
- 1993년 10월 12일자 연방정부의 이전계획 의결(2000년까지 이전하되, 각 기관의 청사와 직원의 주거가 마련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전)
- 1994년 3월 10일자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이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베를린/Bonn법」의 제정
 - 연방하원의 소재지, 베를린과 Bonn 사이의 공정한 업무분담, 베를린과 Bonn지역을 위한 연방차원의 조치사항, 다른 연방기구의 Bonn으로의 이전 등을 규정
- 「베를린/Bonn법」에 따른 1994년 6월 29일자 Bonn지역과의 보상합의(28.1억DM) 및 1994년 6월 30일자 베를린지역과의 수도조약(13억DM) 체결
- 1996년 1월 24일자 연방정부의 베를린 배치계획(연방부처의 향후 배치 계획 규정)
- 1995년 6월 29일자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연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에 대한 경비·주택제공 계획 및 복무관련 규정의 기본원칙
- 향후 연방시(Bundesstadt)로 존속하게 되는 Bonn지역에 대한 1995년

10월 11일자 배치계획

- 1996년 7월 이사비용계약
- 1996년 7월 24일자 베를린 이전과 Bonn지역에 대한 조정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 독일통일의 완수를 위한 1991년 7월 20일자 연방하원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1996년 7월 30일자 복무관련법
- 1996년 9월 27일 연상상원의 베를린 이전 의결
- 1996년 10월 1일자 이전비용(200억DM)의 현실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결정

계획단계에서 건설단계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연방정부는 이전의 전 과정에 걸쳐 연방정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긴요한 건설, 조직, 인사 측면에서의 예방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베를린 이전을 완수함과 동시에 베를린/Bonn법에 의해 제시된 목표와 200억DM의 비용한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있다.

IV. 신연방주의 행정체제 구축

1.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의 공공행정은 지방자치단체(Gemeinde)와 郡(Kreis)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집권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독은 통일과 동시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행정은 통일조약 제13조에 따라 기본법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공공행정을 담당해 왔던 기관들은 해당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귀속되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통일과 함께 불필요하게 된 기관들은 정리 후 해체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정리를 위한 관할권은 통일조약 제13조의 의정서 성명문에 따라 공공임무의 사실관계를 따져 정해졌다. 만일 이러한

관할권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법률적인 조치와 함께 통일조약은 공공행정의 체제에 관해 유지되고 있는 기본법상의 기본사항들이 동독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능률적이고 우수하며 법치국가적 요건에 맞는 공공행정이 동독지역에 신속하고도 무리없이 구축되기 위한 조직상의 제반 요건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2. 연방행정체계의 구축

신연방주에 행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연방정부의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연방고유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나 신연방주의 행정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당시 200개 이상의 기관이 56만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연방정부로 이관되었다. 철도, 체신, 국방분야를 포함하면 4천개 이상의 기관이 이관되었다.

2.1 연방재산관리행정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에 「연방재산관리청(BVV)」이 가능한한 빠른 기간 내에 설치되어야 했다. 게다가 새로운 재정지침에 따른 5개 연방재산관리국과 14개의 연방재산관리청이 설치되었다.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제3산림감시청과 32개의 연방산림청이 신설되었다. 현재 신연방주 재산관리 행정체제 구축과정에서 구서독지역의 재산관리청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통일 초기에 나타난 전문성의 부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되었다. 신연방주에서의 재산관리행정의 구축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관세행정

광범위한 신연방주 관세행정 체제의 구축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오늘

날 관세행정 서비스는 전독일에 걸쳐 동일하게 국민과 경제주체들에게 제공된다.

조세행정 임무에 대한 인식과 전문적, 조직적, 인사적 기본사항들의 전환, 그리고 기술의 도입과 행정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모든 관세행정의 영역에서 단일한 기준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세를 공평하게 징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주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연방 관세행정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폴란드, 체코와의 제3국경지대에서 국경통과와 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남아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서독지역 관세행정청의 인원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3년 이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세관원으로서의 취업신청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 수운 및 해운행정

신연방주의 수운 및 해운행정은 1990년 10월 3일 부터 재편된 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존체제로 통합되었다. 발틱해 연안관리를 위해 Stralsund와 Lübeck에 수운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Kiel에는 북부지역 수운국이 있음),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에 있는 연방수로의 관리를 위해 Dresden, Magdeburg, Lauenburg, Brandenburg, Berlin, Eberswald에 수운사무소가 설치되었다(Berlin에는 동부지역 수운국이 있음). 연방해운국(BSH)은 Rostock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연방수리공사관리청(BAW)과 연방수리학관리청(BfG)은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하였다.

연방의회내 초당적 연방위원회의 1992년 5월 27일자 의결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연방해운국의 150개 직위가 Hamburg에서 Rostock으로 이관되며, 베를린의 연방수리공사관리청 외청이 없어지는 대신 튀링겐주의

Ilmenau에 110개의 직위를 가진 외청이 신설되고, 동부지역 수운국이 베를린에서 마그데부르크시(작센-안할트주)로 이전된다.

현재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조치들은 2000년 까지 완료될 것이다.

3. 주 행정체계의 구축

3.1 주 행정체계 구축과정의 전개

그동안 주 행정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각 주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다. 이 중 사법과 조세, 일반행정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 연방의 지원은 자문, 교육훈련과 행정요원에 대한 자격 추가인정 조치들에 중점이 두어졌다.

3.2 조세 행정

효율적인 조세행정의 재건은 거의 완결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적절한 인원과 기술적인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체계가 마련되었다.

물론 조세행정의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의 질이 더욱 개선되었다. 이것은 기업과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과세와 징세 등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실무가 요구되는 노동관련 조세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일선 실무자와 관리자 차원에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실무교육 경험이 없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적 자질을 제고하는데에 중점이 두어진다. 정년퇴직자의 수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신연방주는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적절한 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감사와 탈세적발 분야에서도 능력이 제고되었다. 신연방주들은 다른 연방지역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기업감사 분야에 종사하는 감사인원을 2배로 증원하였다. 1996년에도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1999년 이전까지 신연방주는 구서독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의 훈련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대기업에 대한 기업감사와 탈세적발 분야에 있어서는 빨라야 1999년에 충분한 고유인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구서독지역이 1997년에도 계속 기업감사와 탈세적발 분야에 대해 기꺼이 행정지원을 하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성패는 행정지원 인력을 위한 예산상의 제반조건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긴축조치의 맥락에서 경비보상과 출장비에 대한 예산 책정이 현저하게 감축되어 구서독지역으로 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인력을 지원받는다든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감사와 탈세적발 분야 인력의 자질을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접근시키는 한편, 업무의 우선순위를 이 분야에 두어가는 방법 이외에 신연방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감사결과 확정기한의 연장조치」를 통해 「DM-개시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에 의한 기업감사 분야의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주어졌다.

V. 법치주의적 사법체계의 구축

독일의 내적 통합은 사법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완결되었다. 몇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고,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볼 때 사법분야에서의 통일은 완성되었다. 사법업무의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법체제가 현재 독일연방 전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신·구연방주 사이의 차이는 구연방주 각 주간의 차이 또는 한 연방주 안에서의 차이보다도 훨씬

적다.

1. 재판절차

독일 전역에 걸쳐 모든 종류의 소송사건에 대해 단일한 재판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신·구 연방주 법규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단일화되고 있다. 공증 분야에 있어서 신연방주에서는 여전히 자영업증인의 직업활동이 인정되고 있다. 공증업무에 대한 연방의 규정을 신연방주에도 그대로 적용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방공증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3차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2. 사법제도의 확충

사법체계 구축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과 내부 자원을 사용하는 업무조직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연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있다. 연방정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신·구연방주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고 있다.

2.1 판사와 검사

사법행정을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가진 사법체계의 구축은 서독지역에서 과견된 법조인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과도기간 동안에 구연방주의 인력을 신연방주의 사법제도 재건에 투입했던 것 만큼의 긴급성은 사라지고 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신연방주에는 3,293명의 판사와 1,181명의 검사, 266명의 기타 고위직 공무원, 5,011명의 영구직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인원 중 969명은 구동독으로 부터 인수되어 온 인원이고(약 20%), 2,410명은

새로 임용된 인원이다(약 50%). 또한 165명은 새로 임용된 구동독 법과대학 졸업 법조인(Diplomjuristen)이며(약 3%), 847명은 서독지역에서 전보된 인원이고(약 18%), 253명은 파견된 인원이다(약 5%).

2.2 변호사와 공증인

1996년 초 까지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약 6,500여명의 변호사가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연방 전체로는 변호사가 평균 약 6% 증가한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약 25% 증가한 것이다. 신연방주에는 이제 광범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졌다. 신연방주의 필요에 따라 공증인의 초빙이 이루어졌다.

3. 주민들의 소송태도와 소송건수의 부담

소송건수의 과중함은 신·구 연방에서 모두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신·구연방주간 소송 건수의 차이는 미미하다. 현재 소송개시, 소송종결, 소송지연 건수의 차이는 구연방주내 각 주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주민의 소송태도 분야에서 신·구연방주 주민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효율적 국가」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요구와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연방지역 주민들의 소송태도에 대한 법사 실적 조사는 이 분야에 있어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4. 사법비용의 할인

통일조약은 재판비용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서 20%의 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재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공증인 비용, 증인과 전문가에 대한 보상, 명예 판사 비용, 집달관 비용에 적용된다. 이 할인율은 통일조약의 위임규정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 또는 폐지되고 있다.

1996년 4월 15일자 규정에 따라 할인율은 1996년 7월 1일 부터 20%에서 10%로 낮추어졌다. 이러한 부분적 조치는 임금수준을 비롯한 신·구연방주 지역 간의 경제상황이 할인율을 완전히 폐지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정도까지는 근접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이 적은 관계로 수수료가 인상되면 구연방주 주민들 보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된다.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여야 한다. 법원과 변호사의 문턱을 높이는 모든 행위는 이러한 신뢰의 구축을 더디게 만든다. 연방정부는 주어진 기간 내에 언제 할인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5. 파산법

파산법의 영역에서는 현재 서로 다른 법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구연방주에는 파산법과 화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1990년 7월 1일자 동독 내각평의회 「통합강제집행규정」에 근거를 둔 같은 명칭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법과 비교하여 내용이 복잡한 파산법과 화해법을 이제 막 구축된 신연방주 사법체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법 자체도 여러가지 문제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었다.

1999년 1월 1일 부터 파산법이 발효하게 되면,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종결될 것이며, 독일 전체에 단일한 파산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6. 국가책임법

국가책임법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법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법 제14조(재산보호)에 따라 민법 제8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전체에 유효하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 조약에 따라 1969년 5월 12일자 동독의 국가책임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신연방주지역에서 주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한다.

작센-안할트주는 1992년 8월 24일자 법률(GVBLS.655)을 통해 국가책임법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명칭도 「작센-안할트주에서의 보상청구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이로써 동독 국가책임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절차가 폐지되고, 손해배상청구도 보상청구로 전환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1993년 6월 14일자 법률(GVBLS.198, 202)을 통해 국가책임법 제6조의 소원절차를 폐지하였다. 베를린시는 1995년 9월 21일자 법률(GVBLS.607)을 통해 국가책임법을 폐지하고, 구연방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튀링겐주는 현재 주의회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국가책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와 작센주에서는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동독의 국가책임법이 계속 유효한 상태이다.

1994년 가을 기본법이 개정된 이래 연방은 기본법 제74조제25호(연방의 경합적 입법대상)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에 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현재 연방법무부는 국가책임법 분야의 연방 단일법안 마련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법은 또한 국가의 몰수와 이와 유사한 침해 및 희생과 결과제거 청구를 다루는 법률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1996년 11월 21일과 22일 회의를 갖고, 연방법무장관이 이 작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통일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는 수 많은 재판에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방향제시적인 결정들을 통해 통일독일의 법적 상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기할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연방하원 선거를 위한 첫 독일 전체지역 총선에 대한 결정(BVerfGE 82, 332와 353)

- 1945년에서 1949년 까지 소련군 점령지역에서의 점령법과 점령고권에 따른 소련군의 재산몰수 조치에 대한 합헌결정(BVerfGE 84, 90과 94, 12)
- 공직근무자의 고용관계 미이양으로 인한 휴직을 규정한 통일조약에 대한 합헌결정(BVerfGE 84, 133)
- 동독 사회과학연구소 종사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결정(BVerfGE 85, 360)
- 동독 건설연구소와 농경제연구소 종사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결정(BVerfGE 86, 81)
-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지역 임차료의 한시적인 유효성에 대한 합헌결정(BVerfGE 91, 294)
- 개인재산의 부족을 이유로 한 통일조약상의 특별해약 통지 조항의 합헌결정(BVerfGE 92, 140)
- 독일연방공화국과 나토 동맹국에 대한 간섭행위를 한 동독 국가안전부와 군사정보기관 요원과 협조자에 대한 가벌성 인정 결정(BVerfGE 82, 277)
- 국경에서의 살상행위에 가담한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과 국경수비대원에 대한 결정(1996년 10월 24일자 결정은 제4장 제2절 참조)

통일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량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총 5,911건의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5개 연방주와 베를린이 편입됨으로써 인구가 약 25% 증가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주가 1/3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법무부는 1996년 여름 연방내무장관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Benda박사의 주재하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부담 경감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부담경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법의 개정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테두리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체제와 헌법소원 기구와 같은 것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1997년 가을에 나올 예정이다.

8. 기타사항

8.1 연구프로그램

1988년 부터 1994년 까지 연방법무부에 의해 진행된 법률사실적 연구프로그램인 「사법제도에 대한 구조분석」은 통일 이후에 신연방주지역에도 확대되었으며, 「신연방주에서의 법원조직」 연구 프로젝트와 「신연방주에서 예상되는 법원의 재판부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 두가지의 연구보고서는 1996년 연방관보출판사(쾰른 소재)가 발간한 「변혁기의 사법제도(Justiz im Umbruch)」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신연방주 사법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연구로서 1994년 「사법제도에 대한 구조분석」의 틀 속에서 「민법에 있어서 법원외적 및 법원내적 분쟁해결의 접속점-구연방주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본 신연방주의 현황과 문제점」이 완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연방관보출판사에 의해 발간되었다. 1996년에는 수수료 규정의 실제 적용사례가 조사되었다.

8.2 「인민의 이름으로?-구동독의 사법제도 전시회」

연방법무부는 「인민의 이름으로? - 구동독의 사법제도 전시회」라는 이름의 이동전시회를 준비, 1994년 6월 24일 베를린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다. 그 이후로 이 전시회는 Braunschweig, Magdeburg, Karlsruhe, Trier, Leipzig, Dresden, Frankfurt am Main과 Jena에서도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과거청산과 신·구연방주 주민 상호간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전시회는 구동독 공산당에 의한 사법제도의 도구화라는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동독의 사법제도가 일상생활의 분쟁에 대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VI. 공직근무

기본법 제33조에 규정된 공직근무의 체계가 신연방주에 완전히 적용되어야 비로소 연방과 구연방주의 행정지원은 종결될 수 있다.

모든 신연방주는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 공무원법을 발효시켰다. 단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통일조약상의 경과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통일조약에 따라 「공무원원호법」과 「군인원호법」이 신연방지역에 도입되었다. 신연방주에서의 특별한 사정은 경과규정을 통해 고려된다.

이 경과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무기간과 보수 및 군인법상의 부상자 원호 부문에 적용된다. 1994년 9월 20일자 「공무원원호법(1993년)」 개정법의 시행으로 신연방주에 대한 원호법적 주요 경과규정들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영구히 「공무원원호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군인분야에 대해서도 병행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원호법적 규정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임금분야에서는 1996년 임금협상에서 임금협약 당사자들이 동독지역의 급료와 임금을 1997년 9월 1일 부터 서독지역의 85% 이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임금규정은 최소한 199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된다. 추가적인 급료와 임금의 평균화는 또 다시 신연방주의 경제 및 재정상황을 감안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이 규정들은 신연방주의 공무원에게도 시간적·내용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게다가 1997년 1월 1일에는 서독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상응하는 노령자 및 유족 원호제도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추가로 동독지역의 연방, 주, 지자체의 공직근무자들에게도 도입되었다.

VII.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 서문

신연방주 행정체계 구축에 있어 처음 몇 년 동안 연방으로 부터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후, 연방의 지원은 종결되었다. 연방-주 조직정비처와 신연방주 재건단,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안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행정지원이 1994년 말에 종결되고 난 후, 1996년 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청을 위한 연방 변호사프로젝트가 종결되었으며,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방의 행정인력 지원도 마찬가지로 종결되었다.

행정인력의 지원은 신연방주에서의 행정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분야의 하나이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법적으로 기능하는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연방지역 행정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주체도의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초기단계에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신연방주의 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통일후 초기에 2,600명의 전문가가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었는데, 이 인원의 많은 수가 계속 그 곳에 남아있다. 연인원 350명의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청에 근무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방은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 약 21만5천명의 근무자들이 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991년 이래 연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지원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4억8천만DM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연방은 인건비 보조금 지원계획과 병행하여 신연방주가 연방공무원을 자신의 행정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1,000명 이상의 연방공무원이 신연방주 공무원으로 전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은 9천만DM 이상의 자금을 추가지출하였다.

신연방주 행정체계 재건을 위한 총 5억7천만DM 규모의 연방내무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행정분야에 대한 지원인력의 투입이 없었다면 신연방주 행정체계의 재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써 신연방주의 경제발전과 통일독일의 단일한 생활수준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마련되었다.

2. 특수행정의 구축

2.1 재산관리청의 설립

변호사들을 재산관리청의 상담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연방의 변호사프로젝트는 1996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연방정부는 1997년에도 이들에게 전체비용의 25%(총 6백6십만DM)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재산관리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변호사프로젝트는 신연방주와의 협력하에 1996년에 이룩한 실적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2.2 측량과 등기제도

신연방주 측량 및 등기분야 행정체계의 구축에 대한 지원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특히 자매결연주 측량행정기관으로의 전문인력 무상파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견 인원을 당분간 신연방주에 계속 파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이 파견자의 원소속 주의 공직근무 원칙에 따라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연방주 측량 및 등기분야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교육·연수의 지속적 실시라는 차원에서 신연방주의 자매결연주를 위해 자문을 계속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서류들이 자매주인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로 송달되어 검토되고 있다. 고도의 측량기술을 요하는 행정요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튀링겐주 취업희망자와 시보공무원들은 자매주인 헤센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연방내무부는 1994년 부터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 측량 관련기관에 대한 인력 배치를 가능케 했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비해 연방국방부는 신연방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연방국방부는 1993년 부터 1996년 까지 또한 1997년에도 국방부의 비용으로 측량학 전공장교와 일반병사를 측량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으로 연방군의 기자재, 차량과 함께 신연방주에 파견하였다.

VIII. 국내치안

1.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신연방주들은 자체 경찰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신연방주 기동경찰의 창설은 구연방주의 방식에 따라 연방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연방과 각 주간의 쌍무적 행정협정에 의해 정해졌다.

2. 국경수비대(BGS)

1995년 이후 신연방주 국경수비대의 임무영역은 독일-폴란드와 독일-체코공화국간의 국경경찰 임무에 대한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동부 국경의 개방과 유럽내 자유통행으로 인해 국경통과 교통이 계속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경을 통해 유입·유출되는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영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불법입국 외에도 특히 밀수, 자동차 밀매, 마약범죄 등을 들 수 있다. 독일로의 불법입국의 중심 채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부 국경지역이다. 신연방주에서는 1995년과 1996년에 동부 국경지역에 약 1,100명의 경찰병력을 증원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국경수비대원 개개인의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동부국경지대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경수비대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수비대의 중심적인 활동영역은 국경감시이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국경수비대 인원을 출신지에 상관없이 서로 섞어 근무토록 하는 조치를 통해 전체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경수비대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계속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3. 연방헌법보호청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주헌법보호청 설립

민주주의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임무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연방주 헌법보호청의 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신연방주에도 헌법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임무는 완료되었다.

헌법보호청은 연방제도에 맞게 구축되었다. 하나의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으며, 16개의 독자적인 주헌법보호청이 있다. 모든 헌법보호 활동영역에 있어 법적 공조의무는 이행되며, 주 당국의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조의무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4. 민방위 및 재난보호체계의 구축

안보정책의 전반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방위의 임무도 변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신연방주 민방위 및 재난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 정부는 약 1,400대의 차량을 지원하였다. 신연방주 출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작센-안할트주의 「중앙소방재난방지학교」(마그데부르크 인근 Heyrothsberg 소재)에서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향후 80개의 지역연합체가 설립된다. 재난 보호 및 항공조난 구조를 위해 신연방주는 각각 민방위용 헬리콥터 1대씩을 운용하고 있다. 신연방주도 환경오염 방사능의 감시를 위한 방사능 측정 조기 경보체계에 편입되었다. 총 2,150개소의 측정소 가운데 약 560개소의 측정소가 신연방주에 위치하고 있다.

IX. 정치교육

민주주의는 저절로 알게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져야 하며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가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여기에 정치교육의 근본적인 과제가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을 가르치고, 정치적 참여를 가능케 한다. 이것이 민주적 공동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이 동독의 「국가시민학습(Staatsbürgerkunde)」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정치교육은 이데올로기 대신에 학문에 기초를 둔 계몽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의 신화화와 과거부정 현상에 대한 반작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SED 정권의 몰락 이후 자율성과 자기결정에 입각한 다원주의적 정치교육을 통해 신연방주 주민들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질서에 정신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특히 중대하고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위시하여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정당산하 재단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이 과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베를린에 연방정치교육본부 지청이 설치된 것과 신연방주에 정당 재단 산하의 정치교육기관들이 설립된 것이다. 특히 동서독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선입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과도기간 동안에 교사연수 분야의 업무도 수행해 왔으며, 5개 신연방주 문화교육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신연방주에 교육 과정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동독의 몰락과 함께 「국가시민학습」이 사라지면서 생긴 국민교육 분야의 공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메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정치교육의 중요한 대상이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변혁기 직후에 역사에 대한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SED 정권 통치 기간 동안의 일방적이고 이념적으로 고정된 역사교육으로 나타난 인식의 공백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의 주된 주제는 구동독에서 오로지 반파쇼의 자기합리화로 귀결되었던 나찌즘과 나찌 범죄에 대한 논쟁이다. 이 분야에서 출판과 모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연방주의 나찌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문서화작업이 종결직전에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이스라엘 여행프로그램은 대학살(Holocaust)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출판활동에 있어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신연방주로 부터도 집필자를 선발하였으며, 주간신문인 「Das Parlament」지는 신연방주에 특파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주정치교육본부와의 협력도 심화되었다.

신연방주내 자율 교육기관의 설립도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1992년 이래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신연방주에 13,400건의 교육행사에 약

2천4백만DM를 지원하였다. 약 34만명의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지방언론의 보도는 지방 고유의 정치적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기존의 지방언론인 프로그램을 신연방주에까지 확장시켰으며, 질적으로 향상된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세미나와 각종 회의에 1천명 이상의 언론인이 참가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내적 통합의 촉진이 정치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첨단 매체를 통한 발간활동의 계속과 함께 특히 연방하원의 「Enquete 위원회」의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SED 독재체제의 잔재 청산」 보고서를 활용한 역사교재의 발간이 계획되어 있다. 동독역사의 수정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와 작업모임, 기타 단체들과의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통일과정의 어려움에 맞서 나감으로써 비로소 정치교육은 신뢰를 받게 된다. 옳다고 믿었던 준거가치의 상실, 실업, 유럽과 세계에서의 독일의 역할은 물론, 극우주의와 폭력행위 등도 주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통일의 과정을 다른 문제와는 상관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정치현상의 전개과정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독일의 내적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X. 통계행정체계의 구축

연방통계 관련법령의 적용과 함께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통계 체계의 지속적인 도입은 완결되었다.

연방통계의 모든 작업영역으로 부터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독일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양상 뿐만 아니라 특히 서독지역과의 비교 하에 신연방주 지역의 상황을 관측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구연방주의 지역별 통계결과가 사용되고 있다.

인구, 노동, 제반 경제분야,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 총 17개 분야에 걸친 조사결과를 나타내 주는 통계결과가 매 3개월 마다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연방통계청은 구동독의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통계를 선별함으로써 구동독의 통계치를 연방통계청의 통계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리즈 책자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28권이나 발간되었다.(예: 인구, 주택건설, 산업, 수공업, 무역, 농업, 교통, 사법, 문화, 보건, 사회복지 등)

제4장 형법, 불법청산, 시장경제적 재산질서 회복

I. 통일의 형법적 측면

형법 분야에서의 법적 통합과정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형법전의 특정 분야에서의 동·서독지역간 법 적용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6차 형법개정안은 구연방지역에만 적용되는 조항(제144조 해외 위장이민죄와 제236조 동의에 의한 납치죄)과 신연방지역에만 적용되는 조항(동독형법 제238조 재판의 독립성 침해죄)의 폐지를 상정하고 있다.

II. 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연방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24일자 판결을 통해 소위 「장벽에서의 총격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적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동독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들과 동·서독간 국경에서의 동독 탈주민의 살상행위와 관련된 국경수비대원에 대한 유죄판결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03조제2항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03조제2항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기속되는 민주적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형법상의 「특별한 신뢰의 원칙」내에서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권력담당자가 명문의 규범을 뛰어넘어 불법을 조장·이용하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정당화의 방법을 통해 그 가벌성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까지 기본법 제103조제2항의 엄격한 신뢰보호가 이루어져야 안된다는 것이다.

1. 정권적 범죄 행위

1997년 4월 1일 현재 베를린에서는 구동독공산당(SED)의 정권적 범죄 분야에서 총 6,729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이 중 5,896건이 종결처리되었다. 이 중 226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5,670건은 기소중지되었다. 기소사건 중 87건은 동서독 경계선에서의 폭력행위(살인)에 대한 것이며, 57건은 불법재판, 44건은 통일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 15,350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이 중 30건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처벌명령(Strafbefehl)이 이루어졌으며, 약 6,400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동서독 경계선에서의 폭력행위 분야에서는 49명에 대해 1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8건의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명이 자유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었다. 불법재판과 관련하여 13,100건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총 12명에 대해 5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소유예 등의 방법으로 6,150건이 처리되었다. 상해분야에서는 1,8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4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125건이 기소중지되었으며, 약 1,765건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타 범죄에 대해 약 400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에서는 1996년 7월 31일 까지 약 4,410건의 조사가 진행되어, 이 중 46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3,722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되었다. 그동안 기소사건 중 6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5개의 사건은 동서독 경계선에서의 폭력행위에 관한 것이다.

작센주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 약 9,300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약 4,500건은 기소중지되었고, 1997년 2월 17일 현재 154명의 혐의자에 대한 111건의 조사절차가 기소와 처벌명령 신청의 방법을 통해 종결되었으며, 총 53건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불법재판 분야에서는 약 5,500건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1997년 2월 17일 현재 47명에 대해 38건의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6건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약 3,000건은 기소중지로 종결되었다.

작센-안할트주에서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약 6,400건의 조사절차가 진

행되었는데, 이 중 약 65건은 기소되었으며 약 5,400건은 기소중지 처리되었다. 약 20건은 경계선에서의 폭력행위에 관한 것이며, 약 4,510건은 불법채권에 관한 것이다.

튀링겐주에서는 경계선에서의 폭력행위 혐의로 29건, 불법채권 혐의로 4,699건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몇몇 신연방주에서는 2000년 말까지 SED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청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2. 국가보위부(MfS) 요원들에 대한 형사소추

1995년 5월 15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오직 동독지역에 체류하면서 동독지역에서 활동한 동독의 간첩들은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와 비밀간첩행위로 인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3. 통일관련 경제범죄

독일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통일관련 경제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범죄들은 사기죄와 배임·횡령죄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과거 동구경제협력기구였던 COMECON 국가들 간의 대금결제 수단이었던 「이전 루블화(Transferabler Rubel)」를 독일 마르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교환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저질러진 부정행위를 들 수 있다. 경제범죄의 두번째 유형으로서는 신탁청(1995년 1월 1일 부터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과 구동독의 정당 및 대중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를 들 수 있다.

1990년 말까지 COMECON 국가들과의 상품교역에 있어 「이전 루블화

결제제도」의 많은 부분이 악용되었다. 당시 지체없이 도입되었던 감시·보안조치들과 함께 「이전 루블화」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독을 통해 「이전 루블화」를 독일 마르크화로 불법 兌換한 독일기업을 상대로 15억DM에 달하는 반환청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4억DM가 넘는 금액이 연방재정으로 들어왔다. 「신용재건기금(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과의 협력 하에 경제범죄에 대한 민사법적 규명과 청산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화폐교환 시행과정에서 동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며, 불법적으로 교환된 금액에 대한 반환절차가 수립되었다. 1996년 말까지 약 300억 동독 마르크가 예금되어 있는 약 15,300개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240만DM가 법률에 따라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화폐교환 과정에서의 부정이 당초에 걱정했던 수준에 비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Ⅱ부는 1994년 9월 부터 1996년 12월 31일 까지 1,099건에 달하는 통일관련 경제범죄를 다루었다. 이 중 930건이 종결처리되었다. 124건이 기소되었으며(이는 처벌명령 신청이 포함된 숫자로, 이 중 「이전 루블화」 관련 부정사건이 8건, 신탁청 관련 부정사건이 36건, 화폐교환 관련 부정사건이 80건임), 806건이 기소중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이 분야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액은 30억DM~90억DM로 추산된다. 형사기관들의 활동으로 18억DM에 달하는 보상이 이루어졌다.

1996년 12월 말 까지 총 2,772건의 사건이 신탁청법상의 특별업무담당관에게 제출되었으며, 이 중 2,427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사건 중 363건은 특별업무담당관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으며, 1,092건이 검찰의 조사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1996년 10월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은 「공동조사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는데, 이 작업반은 기존정보의 종합·분석을 통해 국내외에서 민사법적 제반 청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Ⅱ부

정권범죄, 불법재판, 통일관련 경제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Ⅱ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1994년 9월 30일 부터 1997년 4월 1일 까지 20,7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863건이 처리되었다. 이 중 403건이 처벌명령 신청을 포함해서 기소처리 되었으며, 17,460건이 기소중지되었다.

정권범죄의 청산은 독일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연방과 구연방주들은 인력지원을 통해 베를린과 다른 신연방주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 48명이 1997년 3월 10일자로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0명의 파견정원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일부 구연방주는 인원과 파견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1997년 3월 10일 현재 93건의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41건은 구동독의 경제관련 범죄에 대한 것이며, 43건이 통일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것이다.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1999년 까지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인해 1997년 말 또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나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제2차 법률」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소와 본안 심리 사이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적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판결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Ⅲ. 복권을 통한 SED 불법청산

구동독의 과거청산 작업에 있어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조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가지의 복권 관련법들, 즉 형사법적 복권법, 행정법적 복권법, 직업적 복권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한다.

본래 짧게 설정되었던 신청기한은 그동안 연장되었다. 원칙적으로 형사법

적, 행정법적, 직업적 복권 신청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자본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기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의회에서의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개정안에 관한 토론 결과, 신청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형사법적 복권법의 집행과 긴급한 개선

형사복권법은 실무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1996년 말 까지 신언방주와 베를린의 형사법적 복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법원들에 접수된 복권 신청은 145,000건을 넘어섰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처리될 수 있었다. 1996년 말 까지 지불된 보상금과 지원금은 약 6억8천만DM에 달하였다. 게다가 구동독 정권의 박해로 인한 건강상의 손상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따른 급부도 지원된다.

구동독 치하에서 정치적 구금을 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단체들은 구금으로 인한 건강상의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사회보상법상의 증명요건의 완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일관적인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보를 통해 연방노동사회부는 각 주정부에 법적인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한 새로운 의학적 증명방법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히 교육받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권장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침해를 입은 정치적 구금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금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수입하한선을 인상함으로써 지원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제반 조건들이 모두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정치적 구금자의 유족들과 처형당한 사람과 구금을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유리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복권법 및 직업적 복권법과 긴급한 개선

행정적 복권법과 직업적 복권법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기관들에 접수된 복권신청 건수는 1996년 말 현재 약 68,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략 24,000건에 대한 복권 심사절차가 완결되었다.

출발단계에 있는 신설 복권업무 담당기관들은 조직적인 면에서나 전문적인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법은 1994년 7월 1일에 발효하였음). 그러나, 이 법들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또한 직업적 복권법에 따라 연금보험상에 나타났던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게 되는데, 연금보험 시행기관이 이 문제를 고려했을지라도 복권업무 담당기관들이 객관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했다.

초기에 나타났던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동안 극복되었다.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직업적 복권 절차는 대개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보다 고령인 사람들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행정적 복권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강제이주 조치에 대한 복권조치이다.

연방하원의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행정적 복권법의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도덕적인 복권의 측면에서 피해당사자들에게 인격적 보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법의 결함으로 인해 복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구동독 공산체제의 불법조치들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적 복권법의 중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의 손실보전은 연금보험 시행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데, 1인당 연금보험 손실 보전액은 개인별 보험기간에 따라 매달 1,000DM 까지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충분히 수공은 가지만 실망스러운 경우는 이 법의 규정들에 의한 비교계산의 결과로 인해 장기간의 박해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금법적 규정들이 이미 박해로 인한 피해보전 규정들을 담고 있거나(예를 들면 구급기간을 보상기간으로 계산), 신연방주 연금수령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20년 이전에 박해기간이 끝남으로 인해 연금산정시 박해기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그러한 경우들이다.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직업심화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직업적 복권법 제2절)과 중대한 침해에 대한 조정급부(직업적 복권법 제3절)들은 다만 극히 소규모로만 청구되었을 뿐이다.

직업심화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에 있어 신연방주에서의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는 고용촉진법에 지원책이 이미 존재하였고, 이러한 지원책이 계속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형편에 특별한 영향을 받은 박해희생자들에 대한 조정급부에 있어서는 직업적 복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신청권의 기준이 되는 수입하한선의 뚜렷한 인상을 통하여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이 법의 제4절에 의해 연금보험의 피해보상 만을 받아오던 연금수령자들도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조정급부를 받을 수 있다. 월간 조정급부액은 300DM(연금수령자: 200DM)로 인상되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개선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동독시절의 박해의 영향이 오늘날 까지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피박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IV.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

1. 재산법

재산법에 따른 제반 신청들은 잘 처리되고 있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연방미해결재산관리청은 기업관련 신청서의 약 74%와 약 230만건에 달하는 토지관련 신청서의 약 72%를 처리하였다.

재산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해 연방하원은 또 다시 동 법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1997년 3월 20일 연방하원에 의해 「주택 현대화 및 보수 확정에 관한 법(주거현대화법, BT-Drucksache 13/7275)」이 제3회 독회(Lesung)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투자우선 문제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보수유지가 필요한 주택들의 현대화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보상 및 조정급부법(EALG)

「보상 및 조정급부법」은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최종안으로서 구동독지역에서 보상없이 이루어진 몰수재산에 대해 보상액의 규모와 보상기금으로부터의 재정조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 법은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재산(1945-1949)」에 대한 조정급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복권을 받은 다음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산법상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타 조항들은 나찌 박해자에 대한 특별 보상, 구동독 채권에 대한 최종처리, 제국마크화의 무효화 선언 및 신연방주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독일제국의 동부지역으로부터 넘어온 실향민에 대한 4,000DM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에 관한 것이다.

「보상 및 조정급부법」에 불복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6년 5월 21일 헌법소원 제기와 연계하여 제출된 잠정적 규정 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1945년 부터 1949년 사이의 몰수재산을 재산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헌법소원을 연방헌법재판소는 1996년 4월 18일 판결을 통하여 기각하였다.

보상 및 조정급부법은 주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1996년 말 현재 보상기금 으로부터 1,000만DM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500개 이상의 채권이 발행되었다. 1994년 까지 적용됐던 중간규정을 포함하여 동 법에 의거하여 몰수재산에 대해 약 9,000만DM, 나찌 피박해자에 대해 약 6,000만DM, 그리고 50만 명이 넘는 실항민에 대해 20억DM 이상이 지원되었다.

V. 시장경제적 재산질서의 회복

1. 성과

부동산법과 임차권 분야에 있어서 지난 2년간은 제12대 의회회기 동안에 입법된 관련법률을 시행하고 공고화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공고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입법작업의 결과와 효율성을 정확하게 관측하는데 치중하였다.

2. 국유재산의 귀속

구동독이 민주적 법치국가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재산권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일정한 소유권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정부·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은 지역법인과 공공법인의 재산과 개인재산에 대한 구매와 몰수를 통해 조성된 국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조약을 통한 구동독 공공재산의 분할과정에 있어서 종래의 단일중앙 정부가 다양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국가로 재편된다는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했다.

여러 관청들이 재산권 관련규정과 통일조약상의 물권적 조항들의 집행을 통해 신연방주의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연방주의 경제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재산귀속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 총 약 190만건에 달하는 농경지 재산권 관련 신청을 중국 처리하였는데, 이는 60% 이상의 처리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연방의 고유행정으로 수행되는 재산귀속 업무가 재산권 관련 신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에서의 재산권 관계의 조속하고도 명확한 설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로 인해, 해당 관청들과 단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다.

3. 구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의 재산

「구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 재산심사위원회(UKPV)」는 그들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강력하고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종료되었다.

1996년 그들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연방하원에 두 개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6년 4월 4일에 제출된 제1차 보고서는 구동독공산당(SED)과 함께 구동독에 존재하였던 4개의 정당, 즉 구동독 CDU, 민주농민정당, 자유민주당 및 민족민주당에 관한 것이었다. 1996년 4월 22일에 제출된 제2차

보고서를 통해 대중조직인 「자유독일청소년(FDJ)」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는 종결되었다. 현재 「자유독일노총(FDGB)」을 포함한 여타 17개 대중단체에 대한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있다.

반법치국가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확정된 재산을 신탁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의 확보와 매각을 통해 총 약 5억3,200만DM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판매를 통해 최소한 2억6,700만DM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모든 액수는 199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한 것임).

구동독의 최대정당이었던 SED에 대한 UKPV의 조사는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일부는 아주 어려운 조사가 특히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 위원회는 SED 국내재산의 대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의 수입은 약 16억4,100만DM 규모에 달하며, 이 중 6,100만DM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앞으로 약 3억2,300만DM의 추가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SED의 국외재산 중 2억300만DM가 매각되었다. 「Novum 주식회사」의 재산인 약 5억2,500만DM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대측은 UKPV와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이 구동독 공산당(SED)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재산을 오스트리아 공산당을 위한 신탁관리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말 베를린 행정법원의 예비재판에서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과 UKPV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은 UKPV의 동의하에 1996년 말 까지 재산 매각대금에서 총 4억5천만DM를 신연방주의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계속해서 2억5천만DM가 경제지원금으로 신연방주의 건설화기금의 증액을 위하여 예치되었다. 추가적으로 5천만DM는 문화 및 사회분야의 민간운영자 지원금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1998년에서 2004년 까지 총 7억3,500만DM의 수입금들은 구부채변

제기금에 이관된 구동독 사회기관들의 구부채에 대한 신연방주의 연도별 이자 변제금 부담금으로 계산된다. 이를 위해 사회기관들에 대한 구부채처리법, 구부채변제기금법 개정법, 동독채권투자촉진법(구부채정리법) 개정법 등이 제정되어, 1997년 3월 7일에 발효되었다(BGBI. I S. 434).

4. 투자우선

「투자우선법」은 이 보고서의 보고기간에도 유효하다. 1995년 12월 8일로 종료되는 동 법의 효력은 관련법규(BGBI. I S. 1609)에 의해 1998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다.

「사용자보호법」에 대한 연방상원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현대화 및 보호법안」이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는 주택에 대한 현대화를 투자우선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현대화는 부지의 반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권자인 신청인에게 제공되었는가에 달려있다.

5. 물권법의 정리

물권정리법의 규정은 대체로 유효하다. 물권법적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원칙적인 권리조정 규정에 입각하여 법원이나 감정사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적절한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기술적인 해결이 필요한 바, 이러한 것들은 담보권정리법 분야에서 곧 바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물권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토지들은 또 다른 개별법의 규율대상이며, 그 법의 주요골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채권 조정

채권조정법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들은 아직도 미미하다. 현재 존재하는 이용계약의 효력은 포괄적인 해약금지를 통하여 1999년 말까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용비용 규정과 관련하여 이용비용 인상의 상한선을 정함에 있어, 당해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이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결정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는 점이 나타났다. 지역에서 통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조약체결 사례들이 부족하다. 연방정부는 현재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7. 토지등기부 제도

토지등기부 관청들의 인력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제1회 직업교육생들은 새로운 토지등기부 관청에서 그들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신연방주는 구연방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신연방주에서 나타났던 업무 폭주량은 구연방주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연방주는 구연방주의 지원에 힘입어 통일 이후 엄청나게 쌓여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증가하는 신연방주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등기 신청량이 폭증하였기 때문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구연방주에서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투자를 위한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등기신청들은 1994년 10월 3일자 「투자목적 토지등기 신청건의 우선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되게 되어있으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신청서들은 구연방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토지등기부 분야에서의 법률 조정은 이 보고서의 보고기간 동안 뚜렷한 진척을 나타내었다. 일반법규들과 긴급한 특별법규들이 신연방주에서 아무

런 마찰없이 잘 적용되고 있다. 등록절차신속화법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토지등기부 전산화는 바이에른주와 함부르크에서는 물론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와 같은 신연방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8. 측량제도

신연방주 측량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토지분리법에 의한 절차 및 귀속계획 절차)은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측량절차 그 자체보다는 그 기초가 되는 물권법적 규정에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과의 합의하에 일반행정규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절차가 거의 종결되어 올해 안으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임대차 개혁

임대차법에서는 주거공간 임차를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사라졌다. 이를 통해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하리라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복지적 임차권을 통해 신연방주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당한 주장들이 서로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법적인 동화과정은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이미 착수한 임대차 간소화 작업을 통해 계속 촉진될 것이다.

VI. 장벽대지법(Mauergrundstücksgesetz)

장벽 및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판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법)이 1996년 7월 19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원소유주들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대지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동독은 이러한 대지를 보상을 통해 몰수한 바 있다. 따라서, 재산법에 의해 무상으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연방정부는 통일조약에서 이러한 사실을 수용해야 했다.

재구입은 시가의 25%로 이루어지며, 토지취득세는 면제된다.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매각의 경우에도 매각세가 면제된다. 대지가 공공목적에 위해 필요하거나, 법률 발효 이전에 이미 매각되었기 때문에 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구매권자가 시가 혹은 매각대금의 75%를 수령한다.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동법에 따른 의무이행 급부를 공제한 후, 신연방주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VII.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 (Stasiunterlagengesetz)

1991년 12월에 발효된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슈타지 문서법)」은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동 법률은 구동독의 정치적 잔재를 청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것은 40년간에 걸친 불법정권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1996년 12월 20일 슈타지문서법에 대한 제3차 개정을 통해 피해가 경미하거나 사안이 오래된 경우에 대한 연방전담관의 정보제공이 크게 제한된 반면,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에 대한 슈타지 협력 전력 유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슈타지문서와 자료들을 연

구 및 정치교육은 물론 나찌즘에 대한 정치·역사적 차원의 청산을 위해 각 방송매체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슈타지는 각종 과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180km에 달하는 자료들을 남겨 두었으며, 여기에는 약 4천만 장의 색인목록 카드와 수십만 점의 사진 및 녹음테이프 기록물, 그리고 수 천개의 찢어진 자료들이 담긴 자루들이 포함 된다. 이 중에서 약 58km 정도의 분량 만이 슈타지 도서관에서 정리된 상태로 인수될 수 있었다. 찢어진 자료가 담긴 자루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서의 약 절반 정도 만이 조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었을 뿐이다.

이제까지 자료열람 및 전력조사 신청서, 사법기관의 신청서 및 복권에 대한 신청서가 350만건 이상 제출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자료열람 분야에서는 120만건 이상의 신청건 중에서 약 955,000건 정도가 처리되었으며, 기타 220만건의 신청서 중에서는 208만건 이상이 처리되었다. 새로운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초기의 신청 포화상태는 해소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는 업무의 중점이 점점 교육 및 연구분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제5장 경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I.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부실경제의 실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았다. 또한 재정지원 분야는 동유럽 수출시장의 붕괴와 같은 재정 부문 외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다. 1990년 부터 연방의 재정적 이전급부를 통해 신연방주의 재건과 복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재건과 복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모든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경제적인 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 공공재정 이전의 전개과정

연방의 재정정책은 신연방주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연방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전체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상태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의 충실화와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분야에서만 거의 1조DM 규모가 신연방주로 순이전되었다. 이것은 국내총생산량(GDP)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6년간 신연방주지역에 대한 재건작업은 더욱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00Km의 연방철도와 11,000Km의 연방장거리도로가 건설되거나 보수되었으며, 독일텔레콤은 1996년 말 까지 5백만의 새로운 회선을 구축하였다. 또한 2가구 중 1가구 꼴인 420만호의 주택이 현대화되거나 개선되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거의 200만명의 노동

자들이 실업상태를 벗어났다.

신연방주가 재정균형이전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신연방주지역 재건체계가 정립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재정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로써 동독지역의 구조적인 재건수요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재정의 이전 규모는 이러한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보여준다. 매년 서독지역 GDP의 4-5%가 공공예산(사회보장보험 포함)을 통해 신연방주로 이전되고 있다. 재정지원의 상당부분은 연방으로 부터 나온다.

< 신연방주지역을 위한 공공재정 이전 현황(사회보장급부 포함)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순이전	106	115	129	125	140	140	133
연방 순이전	42	51	75	71	90	91	81

< 순재정이전 내역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재정이전	연방예산	75	88	114	114	135	138	140
	독일통일기금	31	24	15	5	-	-	-
	EU	4	5	5	6	7	7	7
	연금보험	-	5	9	12	17	19	18
	연방노동청	24	39	39	27	23	26	21
	구연방주·군	5	5	10	14	10	11	11
	총계*	139	152	168	168	185	187	180
역이전	연방세수액	31	35	37	41	43	45	45
	연방행정수입	2	2	2	2	2	2	2
	총계	33	37	39	43	45	47	47

(단위: 10억DM)

*총계는 연방노동청에 대한 연방교부금 중복지급분이 제외된 금액임.

1.1 연방예산

지난 7년간 연방 지출액 중 신연방주로 직접 흘러들어간 재정이전 규모는 매년 연방 총 지출액의 약 1/4에 달한다. 1995년 부터는 직적이전 이외에도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연방의 징세포기액이 재정이전액에 포함되었다.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의 지원규모는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1,350억DM와 1,380억DM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7년 연방예산에 있어서도 신연방주에 대한 지출은 이와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신연방주로 부터의 세수와 행정수입을 공제하면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의 지출액은 1,400억DM로, 예정된 순재정차입 계획분을 상회한다.

신연방주와 지자체에 대한 연방의 재정지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과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따른 지원을 들 수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주로 사회보장급부이다.

1.2 독일통일기금

1990년 부터 1994년 까지 신연방주와 그 지자체들은 통일기금으로 부터 총 1,607억DM를 지원받았다. 이 중 950억DM는 기채를 통해 조달되었으며, 약 660억DM는 연방예산으로 부터의 보조금(496억DM)과 각 주 예산으로 부터의 보조금(161억DM)으로 조달되었다. 이로써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 공공예산을 위한 적절한 재정조달이 보장되었다. 1994년에 폐지된 동기금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구연방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1.3 유럽공동체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신연방주는 유럽공동체 중에서도 「구조취약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1991년 부터 신연방주는 「EU 구조조정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과 경제근접 인프라의 개선이 촉진되었으며, 고용시장과 직업교

육시장의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농업경제에서의 구조전환이 진전될 수 있었다.

기금 지원기간(1994년-1999년) 동안 신연방주는 공식적으로 「제1목표지역」에 속하게 되어, 1999년 까지 「EU 구조조정기금」으로 부터 총 136억4천만 ECU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유럽공동체 사회단체로부터도 11억9천만 ECU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로써 연평균 지원규모는 1991년에서 1993년 까지 지원규모의 거의 두 배를 넘게되었다.

1.4 사회보장

통일조약에 따라 각 부문별 사회보장제도가 구동독지역에 적용됨으로써 동·서독 각 사회보장기관들의 연합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제는 종결되었다. 사회보장의 분야에서도 또한 신연방주의 재건을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신연방주지역의 기여금 부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연방주지역의 연금보험 기여금 납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순이전급부(1996년에 약 184억DM)를 부담하였다. 모든 사회보장기관들 간의 재정연합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신연방주에 유리한 급부이전 제도가 계속 요구된다.

연방노동청은 1996년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과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구동독지역에 118억DM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결코 신연방주지역으로 부터의 기여금 수입으로는 충당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연방노동사회부의 연방예산안과 개별계획에 따라 1996년에 총 456억DM가 신연방주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1997년에는 현재 까지 318억DM가 사용되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높은 비용부담은 내적통합의 달성과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사회보장체제에서의 재정이전 >

재정이전	1995년	1996년	1997년	1995-1997년
1. 노령연금				
총계	32.2	36.0	36.1	104.3
그중				
연금보험	16.7	19.3	17.9	53.9
연방노동사회부 예산	15.5	16.7	18.2	50.4
2. 노동정책 및 실업보험				
총계	38.3	39.2	28.6	106.1
그중				
연방노동청	16.2	11.9	16.6	44.7
연방노동사회부 예산	22.1	27.3	12.0	61.4
3. 전쟁희생자	1.4	1.6	1.6	4.6
4. 총계	71.9	76.8	66.3	215.0
그중				
사회보장보험	32.9	30.3	32.9	96.1
연방노동사회부 예산	39.0	45.6	31.8	111.8

(단위: 10억DM)

2. 1997년 까지의 이전재원 조달

1990년 독일통일로 인해 생겨난 재정수요를 재정정책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을 통해 예산 및 재정정책에 편입·조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였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도전은 가용한 재정수단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출절감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실화 확보가 재정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연방정부의 순재정부담금 중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과 예산과목간의 전용을 통해 조달되었다.

연방정부는 1993년 「절약·건설화·성장프로그램」을 확정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엄격한 예산절감을 통해 공공예산의 건설화에 기여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독일의 산업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가속화하였다.

「절약·건설화·성장프로그램」 실행법률의 제정으로 1994년 연방예산의 부담경감액은 210억DM에 달했다. 또한 광범위한 절약지출로 인해 50억DM가 절감되었다. 예산 건설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1995년, 1996년, 1997년 예산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 지출의 변화추이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95년에 지출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다. 1996년도의 저성장은 연방예산에 더욱 큰 부담이 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예산절감을 통해 감당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출규모는 예상부채율 보다 단지 1% 상회하는데 그쳤다. 재정 건설화의 기조는 1997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1997년도 지출은 전년대비 3.4% 감소할 것이다.

광범위한 지출절감과 절약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재정수요가 있는 관계로 재정수입의 개선은 불가피하였다. 조세수입의 증가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의 폐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연방과 각 주간의 소위 「연대협약」의 한 부분으로 1991년과 1992년에 시행된 바 있는 「통일연대부가금」이 1995년 부터 근로세, 소득세, 법인세의 7.5% 수준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통일연대부가금은 신연방주가 일반적인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에 편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연방의 재정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많은 규모의 재정차입이 불가피하였는데, 재정차입은 이제 감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방과 국가 재정적자 현황(1990년~1997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방(10억DM)	48.1	53.2	39.2	66.9	50.6	50.5	78.3	53.3
국가(GDP대비 %)	2.1	3.3	2.8	3.5	2.4	3.5	3.9	2.9

3. 구부채의 처리

구동독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은 1993년 5월 연방 상·하원에 의해 제정된 「연방재정 건설화계획 시행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구부채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이 연방정부의 특별재산으로 설립되었다.

공공기관의 건설과 관련된 채무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연방정부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구부채변제기금」은 구동독 부채 전체의 원리금 상환을 떠맡는다. 「구부채변제기금」의 채무액은 2001년 초에 약 3,600억DM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구부채변제기금」은 구동독의 주요한 재정적 부채를 총괄한 것이다. 1997년 초에 공공기관 건설 관련 채무가 편입된 「구부채변제기금」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의 부채: 1,100억DM

*구동독 예산의 부채분과 화폐교환차액보전금으로 구성됨.

- 신탁청의 부채: 2,046억DM

*신규부채, 인수받은 구부채와 신탁청 소속기업의 화폐교환차액보전금으로 구성됨.

- 동독지역 주택회사로 부터의 인수 부채: 284억DM

*구부채지원법(Altschuldenhilfegesetz)에 따라 주택회사의 구부채 인수

- 공공기관 건설 관련 부채: 84억DM

총 계 3,515억DM

「구부채변제기금」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하여 매년 부채액의 7.5%를 연방예산에서 지원받는데, 이것은 부채액이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1997년 약 259억DM에서 2000년 약 268억DM로(공공기관 건설관련 부채에 대한 주 정부 보조금은 제외) 늘어날 것이며,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때 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구부채변제기금」은 연방은행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그 규모는 70억DM를 넘는 액수이다. 또한 1998년 부터 신연방주는 매년 공공기관 건설 관련 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베를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그 부담액을 연방이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구채부는 한 세대 안에 완전히 청산될 것이다.

4. 새로운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

1995년 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를 통해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독일통일기금」의 폐지 이후에 독일 전역의 재정균형이전제도에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편입되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93년에 제정된 「연방재정 건설화계획 시행법」에 의해 마련되었다.

매상세(Umsatzsteuer)의 분배와 각 주간 재정균형이전제도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매년 약 240억DM의 자금이 신연방주로 흘러 들어갔다. 연방정부는 매상세의 각 주 할당율을 7% 인상함으로써, 구연방주가 신연방주에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구연방주들은 「독일통일기금」이 폐지된 후 매년 21억DM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교부금(1997년 총 251억DM 중 신연방주

교부금은 184억DM)은 특히 신연방주에 유리하도록 확대되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은 각 주의 재정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균형이전제도를 적용한 후 남은 재정부족액의 90%를 일반연방교부금으로 재정이 취약한 신·구연방주에 지원해 준다(1997년 일반연방교부금 지급액은 약 51억DM이었으며, 그 중 신연방주에 대한 교부금은 35억DM).

특히 연방정부는 1995년 부터 2004년 까지 분단에 기인한 특별부담의 폐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조정을 위해 매년 140억DM의 특별연방교부금을 신연방주에 지원한다. 규모가 작은 신·구연방주는 고율의 정책수행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15억DM의 특별연방교부금을 추가지원 받는다(신연방주는 9억DM).

연방정부는 재정균형이전제도 이외에도 신연방주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치로서 1995년 부터 10년 동안 기본법 제104a조제4항에 따른 중요 투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사용목적 지정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66억DM에 달하고 있다. 이 중 7억DM는 병원에 대한 투자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금액은 「동독재건 투자촉진법(IfG)」에 따라 경제력의 격차를 조정하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주요 투자부분으로서는 교통, 지자체 투자, 주택건설, 도시건설, 시와 마을의 정비 분야이다.

새로운 재정균형이전제도는 신연방주와 소속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호전시켰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신연방주 주민 1인당 지출액과 투자액은 각각 구연방지역의 120%와 170% 수준에 달하였다. 이는 또한 순재정차입액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로써 신연방주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연방지역의 생활관계와의 연계를 찾을 수 있는 항구적인 재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방과 각 주는

앞으로 1999년에 분단에 기인한 특별부담의 폐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조정을 위해 신연방주에 지급되고 있는 특별연방보조금(1995년 부터 2004년 까지 매년 140억DM)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다.

II. 경제통합의 과정

1. 1995년 이래 동독지역 경제상황의 전개

1.1 서론

신연방주 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통일당시의 열악했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지역 재건」이라는 과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1996년 「독일과 유럽에 있어서 동독지역 재건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1997년에도 연방정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동독지역이 독자적인 힘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충분한 고용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동독지역의 경제력을 재건하는 것이다. 연방, 주, 지자체, EU, 경제주체, 임금협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들의 공동노력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재건과정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지역 재건은 서독경제의 구조와 경험, 그리고 기준을 그대로 모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체제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신연방주의 경제적 재건이라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법을 찾는 작업이다.

1.2 일반경제적 전개과정

동독지역에 효율적인 경제를 구축함에 있어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 준다.

- 산업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1996년 실질성장율: 전년대비 6% 상승)
- 제품 판매에 있어 수출비율의 점진적 증가(현재 거의 12%)
- 인프라의 현저한 개선(11,000Km의 연방장거리도로와 5,000Km의 연방 철도의 개보수 및 건설, 연방지원에 의한 420만호의 주택 정비, 또한 금년도에 이루어질 통신망의 디지털화)
-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투자(투자비율은 52%로서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창출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준)와 설비투자의 증가

이에 따라, 서독지역 대비 1인당 GNP는 1994년 이래 계속 증가하였다. 동독지역의 1인당 GNP는 1991년에 서독지역의 31.3%, 1994년에 50.6%, 1996년에 54.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반 경제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결함과 함께 운영구조상의 결함에 기인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 후 첫 해에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1995년에도 5.3%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한 이후, 1996년도에는 2%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여 경제성장의 속도가 다소 늦추어졌다. 이는 성장 주도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 통일 후 첫 해의 건설붐은 느슨해 지고,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는 1996년에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던 공백을 완전히 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과정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실업문제이다. 저고용의 정도가 25%에 달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단축조업, 직업전환교육, 고용창출 조치 등)을 통해 1997년 1월에 약 70만명의 실업자가 실업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1997년 1월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18.7%에 달했으며(1996년 1월 16.8%), 실업자의 수는 139만3천명으로 1996년 12월 보다 약 13만5천명이 증가하였다.

연방정부는 1997년의 경제성장율을 약 2.5%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농업경제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2. 동독지역 재건(Aufschwung Ost)

2.1 경제정책적 도전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확실한 미래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가 거의 모든 생활조건의 향상과정을 돕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통일 직후에 「동독 지역 재건(Aufbau Ost)」 정책이 개발되었다. 연방정부의 성장주도전략에 있어 민간투자의 촉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이고 경쟁력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동독지역 재건에 있어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인프라의 개선과 투자의 촉진은 1998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향후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1997년 초에 정해지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투자능력, 일자리의 창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임금협약 당사자들의 태도이다. 기업주와 노동자들인 임금협약 당사자들이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협상임금 격차는 1996년에

30%로 서독지역에 비해 너무나 큰 상태이다.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 위원회는 1995년/1996년 연간평가보고서(JG)에서 짧은 기간에 또한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목표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임금을 서독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1996년/1997년에는 정책의 수정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서독경제는 산업입지의 조성·확대와 중심권의 이동을 통해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각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능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 외에 사유화의 잠재력이 더 많이 발휘되어야 하며, 계획과 허가 과정이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

2.2 민간투자의 장려

1996년도 세제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해 실행되는 연방정부의 「중기 지원 정책」은 1998년 까지 안정된 제반조건들을 제공해 오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의 투자촉진을 위한 중심적인 요소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 보조금, 투자보조금, 특별감가상각, ERP 대부, 자기자본 확충 지원프로그램(EKH), 공공 보증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연방경제부(BMWi)와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의 중소기업 및 산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개발, 개혁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은 동독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 부족한 구동독지역의 연구능력을 구서독지역에서 보충하기 위해 연방경제부는 각종 경제, 연구, 정책분야 단체들의 동서독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연구와 개발분야에 있어 기업간의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동독지역을 위한 연방차원의 경제촉진계획은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1997년 5월에 발표되었다.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책은 1998년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중기계획적인 차원에서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다양화될 것이며, 지원의 정도도 심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촉진책은 경영차원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산업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시작될 것이다. 동 지원은 기업의 자본상황의 개선과 기업현대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아직도 불충분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3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

이 공동과제 프로그램은 제조업과 경제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과 함께 산업입지 조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중요한 초석이다.

신연방주에서는 1995년 7월 부터 1997년 2월 까지 제조업분야 지원 부문에서 총 약 101억DM 규모에 달하는 공동과제 지원책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약 385억DM의 투자가 촉진되었으며,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약 14만6천개의 일자리가 확보되었다.

인프라 구축 지원분야에서도 동기간내에 총 투자액이 약 85억DM에 달하는 1,300건의 계획들에 대해 약 57억DM가 지원되었다.

1995년 계획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24번째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과제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신연방주의 재건을 위한 공동과제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졌다.

계획위원회는 지원영역의 재확정과 구동독지역에서의 공동과제 지원책에 대한 1996년 7월 3일자 의결을 통해 공동과제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작

업을 종결하였으며, 1997년 부터 1999년 까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독지역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지역별 지원비율을 새롭게 정하였다.

3. 신탁청

3.1 1994년 주요임무 완료

신탁청은 1994년 말 까지 사유화 과제를 종결하였다.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신탁청은 2,070억DM가 넘는 투자와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었다.

3.2 신탁청 후속기관

다양한 후속기관들이 신탁청법의 제반원칙에 입각하여 1994년 후에도 남아있는 신탁청의 잔여임무와 인계된 의무, 그리고 그동안 도입되었던 조치들을 계속 수행하였다.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은 재산권 분쟁 등 권리행사의 영역, 회사의 정리, 재사유화와 신탁청이 체결한 계약의 지속적인 관리 등 핵심적인 과제들을 떠맡았다.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은 계약관리의 차원에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유화 기업에 대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억5천만DM가 늘어나 10억DM 규모가 된 「연대기금(Konsolidierungsfonds)」은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길러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액수는 사유화 기업이나 재사유화 기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은행이나 기타 관례적인 지원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도 제공되었다. 1998년 말 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1998년 이후에도 현재의 조직을 축소할 가운데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을 계속 존속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말 까지 사유화되지 않은 47개의 신탁청 소속 기업들은 경영합자 회사에 통합되어 베를린경영참여회사(BMGB)에 의해 관리되었다. 경영합자 회사는 1996년에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업들은 사유화될 수 있었다. 베를린경영참여회사 자신도 1997년 말에 해체될 것이다. 폐쇄된 광산과 핵발전소, 갈탄채광지역에서의 생태적 환경오염 처리와 같은 베를린경영참여회사의 장기과제들은 다른 기관들에게 이관될 것이다.

신탁청과 그 자매회사들의 부동산은 토지와 산림정책에 제공되지 않는 한 「신탁부동산회사(TLG)」의 재산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회사는 연방재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회사로서 신연방주에 있는 연방정부의 재산인 공장부지와 택지에 대한 관리와 매각을 담당하고 있다.

농경지와 산림지의 사유화는 토지매각관리회사(BVVG)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유화계획의 1단계로 이미 90% 이상의 신탁농경지가 장기적으로 임대되었다. 조정급부법에 따른 토지구매신청규정의 시행에 따라 1995년 12월 말에 신탁농경지와 신탁산림지에 대한 사유화계획 2단계가 시행되었다. 1996년에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대규모적인 판매는 1997년 부터 진행되고 있다.

4.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4.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사유화된 많은 동독지역 기업들은 힘겨운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은 경제성장 속도의 저하와 맞물려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동독지역 제조업 분야의 총가치창출은 1996년도에 6.1% 상승하였다. 이는 1991년 수준과 비교하면 53.4% 높은 수치이다. 동 기간 내에 이 분야

근로자는 1,638,000명에서 559,000명으로 줄어들었다(20명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 판매고는 1996년에 1,205억DM으로 전년도(1,212억 DM)와 비슷한 수준이다.

4.2 문제점과 전망

향후 신연방주의 재건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때문에 단위당 임금비용은 서독지역보다 1996년에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독지역 기업들의 실물자본비율은 서독기업들의 50-60%에 머물고 있다. 향후 더 높은 투자수준이 필수적이다.
- 과거부터 너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경색된 자금유동성 상황은 특히 외부자본의 조달 분야에서의 투자와 혁신의 여지를 제한하였으며, 지불불능의 위험을 높게 만들었다.
-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지역시장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외교역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신연방주의 총생산량 중에 단지 13%만이 수출품이었는데, 서독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31%에 달하고 있다.
- 또한 혁신이 많이 부족하다. 서독지역에서는 1993년에서 1995년 까지 내부적인 연구와 개발비용이 약 2% 증가하였으나, 신연방주에서는 0.5% 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불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혁신과정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범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한 점일 것이다.

5.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5.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신연방주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2년 까지의 첫번째 창업붐이 지나간 후, 1996년 까지 기업 등록수는 뚜렷하게 감소하였다(기업등록수: 1990년 254,402건, 1996년 27,670건).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창업 능력이 계속 퇴조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새로운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창업의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구서독지역과 비교하여 구조적인 취약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정체되어 있다.

기업의 수는 51만개로 증가하였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340만명에 달한다. 창업 현상이 퇴조하고 난 지금으로서는, 성장과 고용을 담보하기 위해 현존하는 기업의 존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각 산업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그동안 상공업, 수공업, 서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분야와 일부 자유직업 분야에서 구서독지역에 비견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각 경제부문의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다.

5.2.1 수공업

1995년 이후 독일수공업회의소에 등록된 수공업 업체의 수는 약 2%가 증가한 약 131,000개에 달한다. 근로자의 수는 1995년에 125만명으로서, 이는 1989년 말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업체당 근로자 수는 구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약 8명에서 11명 사이이다. 신연방주 수공업 중 건축과 건물 개보수 수공업 분야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구서독지역보다 11%가 높다.

수요의 감소로 인해 건설과 건물 개보수 수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상황이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연방주의 수공업 경기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소규모 업체를 지역적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수공업은 신연방주의 경제적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 안정화 요소의 하나로 평가된다.

5.2.2 공업부문의 중소기업

이 부문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는 매우 높고 복잡한 초기투자, 구서독지역과 외국의 경쟁업체들로 인한 시장진출의 어려움, 대형업체들이 갖고 있는 허약한 기반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상당한 투자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초기의 불명확한 소유관계는 「투자우선법(Investitionsvorranggesetz)」에 의해 거의 해결되었다. 1993년 초 부터 신연방주 공업부문 중소기업들은 눈에 띄게 재건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신탁청의 각종 촉진책에 힘 입은 바 크다. 1996년에는 약 1만6천개의 독립적인 중소기업체가 시장에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 수는 약 71만5천명에 달했다.

5.2.3 서어비스업

신연방주에 효율적인 서어비스업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욱 진전되고 있다. 가치창출 분야에서는 물론 고용분야에서도 제3차 산업은 성장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서어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구서독지역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발전의 양상도 바뀌었다. 전통적 서어비스업 분야의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서어비스업이 발전을 주도했다.

할레경제연구소(IWH)는 생산관련 서어비스업에 있어 신연방주가 부족한 점을 수치로 제시하였다. 1995년 구서독지역의 경우 주민 1만명당 1,124명이 생산관련 서어비스업에 종사한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830명만이 이 분야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양질의 생산품을 지적 서어비스와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조업 분야에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분야의 서서비스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5.2.4 상업

신연방주의 소매업은 품목별 전문판매, 소비자 시장, 셀프서서비스 판매 방식 등 현대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주민 1인당 판매면적의 크기는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구서독지역에 맞먹게 되었다. 다만 동독지역 도시들에서 같은 공간적인 상업구조가 여전히 결점으로 남아있다.

자기자본의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도시내 판매에 주력했던 종래의 중소상인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현대화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1996년 부터 중소상인들을 중소기업 관련 10%의 투자촉진 지원책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상업회사들의 약 1/3이 1996년에 투자를 실시하였다.

1996년 11월 부터 시행된 점포 개점시간 연장조치로 인해 특히 대형상점들의 고객수가 늘어났으며, 부분적으로는 매장도 증가하였다. 상점들이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났던 1996년의 고용을 저하현상은 이러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11월과 12월에 중단되었다.

신연방주의 도매업은 확실히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인 판매량의 3%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서독기업의 강력한 시장진입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도매상 체제가 전독일적 사업구조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5.2.5 관광업

신연방주 관광업의 시장경제적 구조개선은 비교적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자연적·문화역사적인 잠재력과 함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관광지의 사

유화가 이루어졌다. 기존 관광상품들을 시장에 적응시키는 것 이외에도 신규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광상품은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1996년에 약 7,500여개의 영업용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약 40만명이 숙박할 수 있었는데, 그 중 5,500개는 호텔이다. 경기악화와 관광업의 저조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숙박율은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1996년에도 10% 증가). 물론 현재 수요의 증가율이 공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광업체들의 운영효율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3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와 함께 판매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매력적인 여행국으로서 독일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한편, 독일 정보 및 예약주식회사의 도움으로 국가정보 시스템과 예약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다.

5.2.6 자유업

신연방주의 자유업 부문은 계속 긍정적인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이전에는 자유직업의 독립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신연방주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직업의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졌으며 구서독지역 수준에 도달하였다.

의사와 치과의사 부문에 있어서 자유직업으로의 이동이 매우 신속히 종결되었다.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86%는 이미 1991년 말에 개업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개업한 의사와 치과의사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구서독지역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1996년 초에 신연방주에서는 자유직업자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반

면, 구서독지역의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신연방주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법률, 경제, 세무관련 자유직업으로 약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7만5천개의 개인병원 및 사무실 등에서 약 20만5천명의 자유직업인들(견습생 포함)이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직업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분야 종사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6. 산업부문의 연구, 개발 및 혁신

6.1 통일이전의 상황

효율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구, 기술, 혁신은 구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같은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구동독의 콤비나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과 기업의 연구개발부문의 상당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연방정부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보면, 1993년 말 현재 신연방주의 연구개발부문에 약 22,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4년 말에는 약 21,400명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산업부문별 연구·개발비 지출총액에 관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3,500개가 넘는 연구개발회사가 있다. 이는 신연방주 기업들의 1/4 내지 1/3이 연구·개발활동을 하고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구서독지역의 기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신·구연방주 연구개발회사들의 구조는 매우 다르다. 구연방주의 경우 산

업관련 연구개발인력의 14%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약 70%의 인력이 근로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연방주들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들은 기업의 혁신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연방-주 연구기술위원회(Bund-Laender-Aussuss 'Forschung und Technologie')」를 통해 신연방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2 연방정부의 지원

연방정부는 1990년 중반 부터 일련의 지원조치를 통해 신연방주의 산업에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제고하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특정 기술부문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구동독기업과 산업관련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통일 이후 약 2,45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3억6천만DM가 승인되었다.
- 연방경제부는 「시장진출 대비 산업연구와 경제구조 변화(MVI)」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연구회사와 연구개발 서어비스 분야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91년 부터 1996년 까지 7억3천만 DM에 달하는 자금이 지출되었다.
- 경쟁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연구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장치인 「산업체 공동연구·개발 지원(Foederung der industriellen Gemeinschaftsforschung und -entwicklung)」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 말 까지 약 2억9천2백만DM가 지원되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창업지원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종의 모델실험으로 「기술중심의 기업(TOU)」 설립에 대한 지원이 이

루어졌는데, 현재까지 360개 기술중심 기업체에 대해 2억6천5백만DM가 지원되었다.

- 연방정부는 평균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독창적 상품의 생산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혁신과 기술 중심 기업들의 창업」이야말로 신연방주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중심 기업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FUTOUR)」과 함께 일련의 새로운 지원책을 통해 기술적 차원에서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중적인 창업상담, 재정적 보조, 장기적이고 유리한 투자 등이 함께 묶여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1999년 말 까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약 250개의 기업이 창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2,500개~3,000개의 야심차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약 5억DM의 재정보조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 「기술센터 및 창업센터(TZ) 확충」의 실험모델은 TOU 지원조치에 대한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실험은 신생 기술중심 기업을 위한 적절한 육성과 재원조달 체계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개 TZ 확충작업과 10개 TZ 계획작업이 지원대상이며, 현재까지 약 4,140만DM가 지원되었다.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들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연구개발인원 확충 지원(ZFO)」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의 확충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1,590개 업체 4,630명에 이르는 연구개발 종사원들에게 9천만DM가 지원되었다.
- 연방정부는 「수주연구 및 개발(AFO/AWO)」이라는 두가지 조치를 통해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기업의 주문 제공 및 획득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두가지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약 4,700개 계획에 대해 총 3억8천만DM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원책에 힘입어 8억6천만DM의 수주가 이루어졌다.
- 일부 핵심 기술분야의 경우, 「생산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생산품과 기술서비스의 개발이 지원되었는데,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의 재산 중 7,500만DM가 약 170개의 연구개발계획에 사용되었다. 이 계획들에 따르면 초기 3년 동안에만 약 7억DM의 판매고가 기대된다.

- 생산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생산 및 공정의 혁신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연방경제부는 「구동독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지원(PFO)」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 까지 3,100개 기업에 4억2천만DM를 지원하였다
- 야심찬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지원프로그램(IFP)」이 시행되었는 바, 동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 말 까지 1,100개 기업에 3억3,200만DM가 지원되었다.
- 연방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공동연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파트너를 포함하여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가운데 기업 간의 연구·개발협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지원조치는 수주연구와 연구인력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독일의 산업연구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데, 지원대상 기업체의 약 30%는 신연방주 기업체들이었다. 지금까지 약 880개의 구동독지역 기업체들이 약 1억2천만DM를 지원받아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1,200가지의 다양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관련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신연방주 경제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여건들이 조성되었다.

- 기술이전조치 지원의 일환으로 21개소의 지역별 「기술이전사무소(ATI'S)」와 12개의 특수기술 및 업종 중심의 「기술이전센터(TTZ)」가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 및 공정과정에서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자들을 돕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기술이전 제공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1억2천1백만DM가 사용되었다.
-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중요한 촉진책의 하나로 연방정부는 한시적이고 시범적으로 소위 「시범센터(Demonstrationsz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연방주에 현재 15개의 「시범센터」가 운영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지금까지 5,300만DM가 사용되었다.

현재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신연방주 기업들의 80%-90%가 연방정부의 경제부문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1990년 중반 부터 약 40억DM를 신연방주 기업들의 산업연구 분야에 투입해 왔는 바, 이로써 기업들의 기존 연구개발 능력과 혁신능력의 제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6년 한 해 동안 이를 위해 7억4천만DM의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도 효율적인 산업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노력의 성공여부는 산업체가 연구개발에 자체적인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7. 신연방주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적 혁신

신연방주 주택분야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마찰이 적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택상황은 매우 노후되었다(194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비율: 신연방주 약 50%, 구서독지역 약 30%). 게다가 주택들의 설비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1995년 기준으로 8.1%의 주택이 실내화장실이 없으며, 7.3%가 목욕과 샤워시설이 없고, 33%가 현대적인 난방시설이 없는 상태임), 주택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구서독지역의 경우 평균 4.4실에 86 평방미터인데 반해 신연방주의 경우 평균 4실에 69 평방미터임).

재산법 개정법률과 재산귀속 규정을 통해, 주택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개인 재산권이 신설되었다. 또한 임대료의 개혁으로 건축물의 몰락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월 1일자 임대료의 자유화(조정임대료)조치시 까지 임대료는 물가와 연동되어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자유로운 재원조달을 통해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즉시 자유화되었다. 설비개선에 따른 임대료의 인상은 1995년 8월 부터 10% 내지 15% 범위내에서 허용되었다. 1997년 1월 1일부터는 5%의 추가

인상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물론 지역적으로 대도시에 국한해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로 1996년 까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에 대한 현대화와 개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의 약 20% 정도 만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현대화되었다.

제1차 기본임대료 인상규정(1991.10.1)과 함께 「주택보조금 특별법(Wohngeldsondergesetz)」을 통해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입각하여 절차의 획기적인 단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서독지역에 비해 매우 개선된 주택보조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고려가능한 주택관리비목의 상황 조정을 통해 많은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 외에 난방비와 온수비가 고려되었으며, 소득 조사에 있어 특정한 종류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물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6년 12월 31일 「주택보조금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1997년 1월 1일 부터는 「주택보조금 이양법(Wohngeldueberleitungsgesetz)」을 통해 신연방주에 유리한 특별규정들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특별한 임대료 상한표와 소득조사에 있어서의 특별 개산금의 인정이 그 주된 내용이다.

1993년 6월 23일자 「구부채지원법(Altschuldenhilfegesetz)」을 통해 지금까지 주택기업, 주택조합, 지방자치단체, 개인 임대업자의 90%에 대해 광범위한 채무 경감조치가 취해졌다. 570억DM에 달하는 원부채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었다(이자에 대한 보조부분이 51억DM, 분할 경감분이 285억 DM임). 이로써 신규 신용차입이 가능해져 주택의 관리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동시에 유리한 조건하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 매각이 가능해졌다.

1995년 5월 이래 허용되고 있는 유사 임차인 중심의 사유화 형태(중간구입자, 임차인 조합, 소유권 취득 목적 조합)는 사유화의 전제조건을 다시 한번 개선한 1997년 1월 1일자 「구부채지원법 개정법」과 함께 사유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기에 제시된 매우 유리한 부채의 상각율은 주택기업들이 직접 임차인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이제부터 허용되는 지상권의 행사는 임차인의 주거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자가주택 보유율에 직면해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지원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 목표이다. 1991년~1995년 동안의 직접적 재정지원(주택구입보조금: Erwerbzuschuss)이 만료되고, 이제는 「자기소유 주택 보조법(Eigenheimzulagengesetz)」상의 주택소유에 대한 조세지원책에 따라 자기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연방주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1월 1일에 시행된 새로운 8년 간의 정액 보조금 정책은 신연방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지원책 보다 저소득자나 중간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신축건물의 경우에 연간 5,000DM, 구건축물의 경우에 2,500DM가 지원되며, 어린이 1인당 1,500DM가 추가로 지원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자가소유 목적 주택조합의 지분권 구매에 대한 「자기소유 주택 보조법」 차원의 1차적 지원과 함께 주택구입에 관심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적 촉진책이 마련되었다. 자기자본 차원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

1997년에 8억1천만DM에 달하는 신연방주에의 사회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재정의 지원은 주택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도 투입될 수 있다. 주택 현대화와 주택신축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률은 임대주택 신축의 경우 1997년 잔여기간과 1998년 동안에 25%로 인하되었으며, 임대주택의 현대화의 경우에는 40%이다.

「신용재건기금(KfW)」의 주택 현대화 계획에 따라 조성된 600억DM의 대출자금 중에서 500억DM 이상이 1991년 이래 신연방주에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290만 가구의 주택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남은 100억DM로 1997년 말 까지 주택 현대화 계획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평균 지원액은 qm당 약 250DM이며, 평당 투자액은 qm당 약 370DM이었다. 연방정부는 동 계획상의 저리융자를 위해 총 127억9천만DM를 지원하였다. 이 계획의 지속 추진 여부는 1998년도 예산결정에 따르게 된다.

고용촉진적 투자 지원책과 1997년에도 유효한 지원책의 차원에서 조립식 건물에 대한 특별 저리융자를 위해 지원가능한 규모는 30억DM에 달한다. 1%의 추가적인 대출이자 인하가 있었는데, 이로써 현재 특별저리융자의 이율은 3.75%이다.

중소규모의 건설업을 계속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구동독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건설부는 1994년 1월 28일 공공건물 건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완화 규정을 발령하였다.

건설수주할당규정(VOB)에 따라 담보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신연방주 기업들에게 유리한 완화조치들은 1996년 12월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신연방주에서의 유해물질 방출은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계속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신연방주의 경제재건을 CO₂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의 증진 조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건물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다. 많은 난방시설들이 기술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건축재질들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2년간 중요한 규정들이 모두 수정됨으로써 CO₂ 감소를 위해 필요한 건설과 시설기술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단열규정(WSchV)」과 1994년에 신설된 「난방시설규정(HeizAnlV)」은 CO₂ 배출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8. 대외경제: 코메콘(COMECON)에서 자유국제무역으로

8.1 화폐·경제·사회통합 이후 대외경제의 발전

1994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신연방주 대외무역의 증가추세는 1995년과 1996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96년 1월 부터 9월 까지의 대외교역량은 전년 동 기간에 비해 3.9% 증가하였다(502억DM).

신연방주 대외교역량 중 서구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8.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신연방주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구와 동구국가들이 1996년 동 기간내에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감소하였다.

중요한 수출대상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공화국이다.

독일 전체의 대외교역량에서 신연방주의 대외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구서독지역의 수출이 30.7%인데 반해,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11.9%이다.

8.2 대외경제에 대한 지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겨우 수출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조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와 외국에서의 판매 촉진조치의 중심요소로서 박람회 지원, 시장진출 지원과 유연한 헤르메스(Hermes) 보증을 들 수 있다. 1997년 연방정부의 예산액(해외박람회 개최에 있어 특별혜택 부여를 위한 약 3백만DM를 포함한 3천만DM)은 박람회 지원과 시장진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1996년에 효력이 상실되기로 되어있던 지원프로그램들도 일단 1997년과 1998년 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었다. 「수출업자 협의회(Lieferantenforum)」가 새롭게 연방경제부의 시장진출 지원프로그램에 편입

되었으며, 엄선된 중부·동부유럽 국가(헝가리, 체코)들과의 대외교역이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

독립국가연합(CIS)과의 거래에 있어 최소수출량의 결정에서와 같이, 신연방주 기업들을 위해 유리한 조건의 헤르메스 보증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1996년 말 까지 신연방주로 부터의 수출과 물품공급에 대해 304억DM 규모의 헤르메스 보증이 가능하였으며, 그 중 85%에 해당되는 252억DM가 독립국가연합에의 수출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1997년에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회원국과의 대규모 교역(각각 3천만DM와 2천만DM 이상)에 있어 최소수출량은 신연방주의 경우 50%이다. 독립국가연합 이외의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1997년에도 신연방주지역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각 주의 수출물량 제한이 운영측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신연방주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산업입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부터 베를린 소재 연방경제부내에 「외국인 투자 안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1996년 12월에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은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공동기관을 설립하였다(신연방주-산업투자 위원회).

9. 신연방주의 EU로의 통합

9.1 EU 규정의 적용

독일의 통일과 함께 유럽공동체의 제1차 법규(EU 기본조약)와 소위 제2차 법규의 많은 부분이 신연방주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다만 일부분의 EU 법규의 경우에는 신연방주에 대한 예외적 적용과 과도적 적용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특별규정들의 효력이 점차 만료되어감에 따라, 이제 EU 법규의 대부분이 신연방주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종자, 식물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통독 전 동독당국에 의해 내려진 일련의 승인사항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EU 법규에 대한 별도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9.2 EU 구조조정기금

신연방주는 1인당 GDP 측면에서 유럽공동체의 구조취약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연방주는 1991년 부터 「EU 구조조정기금」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1991년~1993년 동안의 지원액은 60억DM이었다.

1994년 부터 1999년 까지의 지원기간 동안 동베를린지역을 포함한 신연방주들은 공식적으로 「제1목표지역」(저개발지역)으로 분류되어 1999년 까지 총 136억4천만ECU를 구조조정기금으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11억8천6백만ECU를 유럽공동체 사회단체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연간 지원액은 1991년~1993년 간의 약 2배 가량으로 많아졌다. 구조조정기금은 민간분야의 생산적인 기업투자(특히 중소기업), 경제근접 인프라의 구축, 환경상황의 개선, 연구와 혁신의 촉진, 직업교육, 자질교육, 고용촉진 교육의 진흥조치, 농수산물의 가공과 마케팅의 개선과 농촌지역의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EU 구조조정기금의 지원 가운데 「EU 지역기금」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94년~1999년 동안의 지원기간 동안에 68억2천만ECU가 지원될 수 있다. 비록 1995년 부터 전 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미 전체 지원규모의 50%가 승인되었으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총 규모의 1/4에 달한다. 약 16,000개의 개별계획에 대해 총 375억DM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9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77,000개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

Ⅲ. 신연방주 농업의 구조조정

1. 1995년 이후의 농업경제의 상황전개

1.1 농업정책의 목표

연방정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면서 시장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림정책을 통해 유럽시장에서 독일 농림업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연방주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이 규정들은 지금도 여전히 EU 농업개혁과 세제입법의 틀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전연방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제반 조건과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이다.

1.2 법적 기초

연방하원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정되고, 그동안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조정작업이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농업구조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은 제한없는 토지처분권에 입각한 농림경제를 다시 부활시킴과 함께 동독 농업기업의 구조조정을 달성하려는 소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통독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신연방주에 기업농을 재건함에 있어 아주 어려운 과정들은 이미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가 탄생하였다. 모든 기업농들의 경제적인 합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많은 농업회사에서 이미 만족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과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 승계 기업, 청산된 협동농장 간의 재산권 분쟁은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1996년 말 발효된 농업구조조정법 제4차 개정법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법 제3b조에 규정되

어 있는 소멸시효는 5년간 연장되었으며, 청산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재산권 분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집중적인 홍보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 특별책자에서는 물론 단체와 개인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다.

1.3 농업분야 구조변경 현황

(1) 기업농의 구조

신연방주 농업기업들에 대한 구조전환 작업은 그 속도가 다소 느려지기는 했지만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동독의 4,650개의 커다란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대신에 1995년 까지 약 30,200개의 개별농이 나타났다. 1996년 까지 그 숫자는 기업분할과 기업신설 등을 통해 약 2% 증가한 30,800개로 늘어났다(경작면적 1ha 이상). 이 중 약 25,000개의 개별농과 약 2,800개의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들은 각각 신연방주 경작면적의 약 22%를 경작했다. 또한 약 3,000개의 법인형 기업들이 경작면적의 약 56%를 경작했다.

평균경작면적을 보면 개별농은 48ha,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들은 437ha, 법인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1,000ha가 넘었다. 농업기업들의 평균 임차농지 비율은 약 9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개별농 중 약 70%가 부업농이며, 나머지는 전업농이다.

(2) 노동시장 현황

과거 동독 농업부문에서의 노동력 초과 고용문제는 이미 90년대 초에 정리되었다. 1995년 4월 현재 161,500명이 전업농민 또는 부업농민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 중 77,000명은 자연인 운영업체에서, 84,500명은 법인 운영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 100ha당 노동력 투입비율은 2.3명으로서 구서독지

역 수준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신연방주의 경우 구서독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작면적 구조가 상이하고 가축사육이 훨씬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6년 가을 현재 농업분야에서의 단축노동자 수는 약 500명인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실업자의 수는 57,400명으로서 전체실업자 수의 5%에 해당된다.

식품생산업종의 경우, 1995년 현재 노동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830개의 공장에서 약 7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식품생산업종 외에도 식품가내업(제빵·제과업, 육류가공업)은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1995년 3월 현재 약 7,900개의 공장에서 약 84,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3) 농업부문 소득추세

1995/1996 회계연도 중 독일 개별전업농의 수익은 약 54,000DM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지역별 농업부문 소득추세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신연방주 각 주의 개별전업농의 평균 수익은 약 68,000DM(작센주)에서 약 98,000DM(작센-안할트주)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연간 수익의 증가율은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경우 약 11%이며,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는 약 1%에 머물고 있다. 1995/1996 회계연도 중 사단법인 형태 기업들의 평균수익은 약 128,000DM이었는데 반해,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297,000DM(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와 138,000DM(튀링겐주)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들은 전년대비 평균 28%의 수익 증가를 보여주었다.

신연방주의 법인형 기업들은 1995/1996 회계연도에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1996/1997 회계연도에는 모든 법인형 기업에 있어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1.4 과거 인민소유적 농림지와 기업의 사유화

1996년 현재 신연방주 신탁관리 농지의 임대계획은 대상토지의 90% 이상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산림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비용보전을 받아 각 주가 경작·관리하고 있다.

「보상 및 조정급부법」은 농림지의 특혜적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경지구입). 연방정부는 경지구입 관련 규정을 마련, 1995년 12월 30일에 발효시켰다. 경지구입 규정에는 구입자격의 내용과 범위, 유리한 구매가격, 구매절차,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과 조언과 자문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산림 부문에서 최초 판매가 실시됨으로써 과거 인민소유적 농림지에 대한 사유화 단계 중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업무는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고 신연방주 각 주에 지부를 두고 있는 「토지매각관리회사(BVVG)」가 맡고 있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토지매각관리회사에 제출된 특혜구매 신청은 10,947건에 달한다. 이는 266,000ha의 농경지와 647,000ha의 산림지에 해당된다. 농경지의 특혜구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2000년 3월 31일 까지이다. 경지구매와 병행하여 평가단위별로 분할된 구동독의 인민재산들도 판매와 임대를 통해 사유화되고 있다.

1945년~1949년 동안 소련군의 점령고권에 의해 진행된 재산몰수 조치의 희생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보상법」과 「조정급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고 있다. 본안에 대한 판결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경지구매를 금지하는 잠정적인 규정을 발령해야 한다는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 연방정부의 대책

2.1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결합

사회주의적 법률질서와 경제질서에 기초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법률관계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률질서로 환원시키는 것은 항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구조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주거, 근로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법」 제8절과 「경지정리법(Flurbereinigungsgesetz)」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여기에서 동독시대의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의 분리체제를 폐지하는 것이 투자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조치임이 입증되었다. 약 7만개의 협동 농장건물과 시설들 및 20만개의 개인주택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소유권의 결합 작업은 주로 농경지에 대해 농업구조조정법의 절차에 따라 경지정리관청들과 민간수탁경제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처리는 각 주에서 상당히 진척되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 관계의 새로운 정립은 다음 목적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 소유권의 경제적인 이용
- 투자계획의 기초인 신용가치로서의 토지가치 창출
- 판매와 유산상속에 있어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

소유권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인 요소외에도 중요한 노동시장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 권리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경제활동의 장애 제거

- 투자가 지역 수공업 및 농업에 대한 사업신청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보장됨.

「농업구조조정법」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이미 완결된 많은 절차들이 보여 주듯이, 경지정리 관청들은 토지정리 수단과 함께 「토지정리법」의 적절한 적용과 「물권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협상수단을 가지고 있다.

연방과 주 간의 「토지질서 조정회의」 차원에서 항상 대화가 있어 왔는데, 이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었다. 이 분야에 있어 신연방주 고등행정법원의 초기 판결들은 관청과 수탁기관들이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인 원칙하에서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통일된 교통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토지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계획은 대부분 토지들에 해당되며, 현재의 도로와 수로, 농업구조를 포괄한다. 소위 「기업부지 정리의 특별절차」의 임무는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소유권 관계 및 농업 인프라의 재정립을 통해 농촌지역에 훌륭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2.2 구조조정 지원

EU와 연방, 각 주의 농업구조 조정지원은 지금까지 신연방주의 농업기업과 가공 및 판매시설들의 효율적 육성과 환경친화적 생산의 지원, 그리고 농촌지역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는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GAK)」이라는 공동과제 계획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포괄적 지원책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

1996년에는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 계획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 농업구조의 발전을 위해 9억9천9백만DM에 달하는 연방재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각 주와 EU의 지원이 보충되었다. 지원의 중점은 개별농에 대

한 투자지원과 4억2천7백만DM에 달하는 「조정보조금(Ausgleichszulage)」에 주어졌는데, 이는 전체기금의 42.9%에 해당되는 것이다.

1995년 이래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사이의 지원조건들은 끊임없이 근접되었다. 1996년에 농업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하에 단일한 원칙이 도입되었다. 신연방주 농업기업의 재설립과 법인형태 농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연방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하였던 EU의 특별규정은 1996년 말에 효력이 만료되었다.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즉시 독일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투자지원 원칙을 의결했는데, 이는 1997년~2000년 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시장구조와 농산물 가공 및 시장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상기 기간 동안에 5천만DM가 사용되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구연방주에 비해 5%까지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은 EU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 즉 1999년 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경지정리, 농촌마을 재정비, 농로건설 등과 같은 개별업체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들은 개별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들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전체기금의 15.5%에 해당하는 1억5,460만DM가 마을 재정비에 투입되었다. 또한 건설, 개발, 철거 등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등 구연방지역과는 다른 특별규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신연방주 농촌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시장조건과 산업입지 조건에 적합한 농업경제의 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1996년에 약 4,500만DM가 지출되었다.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지원조치들은 각 주의 이에 상응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에 의해 보충되었다.

또한 농업경제는 「제1목표지역」 지역인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1999년 까지의 지원기간 동안에 EU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총 약 60억DM를 농업경제와 농산물의 가공 및 시장개척과 농촌의 발전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럽농업설립보장기금(EAGFL)」의 설립항목, 「유럽지역기금(EFRE)」, 「유럽사회기금(ESF)」으로 부터 신연방주의 농업과 농촌지역을 위해 총 약 60억DM가 마련되어 있다. 높은 공동재정지원율을 통해 이러한 지원책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GAK)」 차원의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책과 민간부문의 지원을 합쳐 약 200억DM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1목표지역」에 대한 지원조치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장치로서 공동발의 제도가 있다. 공동발의 제도 관련 조치를 위해 「제1목표지역」에는 약 1억7천5백만DM의 EU 지원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2.3 구부채에 대한 규정

신연방주 농업기업들은 1990년 7월 1일 기준으로 약 76억DM의 구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이 구부채들은 시장경제로의 적응을 위한 구조전환과정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구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정비가 가능한 농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구부채 관련 조치를 마련하였다.

- 통일조약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탁청(THA)과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은 14억DM의 구부채를 인수하였다. 총 약 1,400개의 기업들이 국가가 강요한 특정한 부채(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급부채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게 된 부채)에 대해 평균 1백만DM의 부채가 면제되었다.
- DM 대차대조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借邊상 부담경감의 대상이 되는 계약합의와 관련하여, 신탁청과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이 인수하지 않은 구부채에 대한 지불정지가 보장되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경감된 구부채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변제가 가능하며, 그것도 이익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49억DM에 달하는 구부채가 면제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경

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당초 구부채 총액 76억DM의 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1995년 1월 1일 부터 1996년 12월 31일 까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구부채에 대한 변제액은 약 2억DM이다.

연방정부는 구부채 정리를 위한 위와같은 2가지 조치가 협동농장 후속기업체들의 구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들의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2.4 EU 농업개혁 관련 특별규정

EU 전체에 대한 농업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신연방주 농업의 구조조정과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곡물, 식물성 기름종자, 단백질 식물,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 부문에서 특별규정이 마련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내 농업지원 조건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규정들은 한시적이거나 계속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1996년 6월 브뤼셀의 유럽 농업장관회의에서는 신연방주에 한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15만ha의 경작지에 대한 경작지 축소 개시년도를 2년간 연기(1999년 수확기 부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경작지의 용도 폐기 작업이 예상보다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조치였다. 또한 1996년 6월 양고기 분야에서 2000년에 가축 수의 제한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사용되지 않은 어미양에 대한 장려금 분은 모두 유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우산업의 재건을 위해 1996년 10월에는 신연방주에 대한 장려금 규정이 1998년 말 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적응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우유생산 쿼터제의 만료시한을 1998년 3월 31일에서 2000년으로 연장하였다.

IV. 신연방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1. 교통

1.1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1.1.1 개관

연방은 1990년 하반기 부터 1996년 말 까지 신연방주의 교통인프라 분야에 약 680억DM를 투자하였다. 이것은 연방전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투자액(약 1,550억DM)의 44%에 해당하는 것이며, 1992년도에 수립된 「연방교통로 계획(BVWP 1992)」 중 신연방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39%를 넘는 것이다. 680억DM 중 360억DM(53%)가 철도부문에, 180억DM(26%)가 연방장거리도로에, 10억DM(2%)가 연방수운교통에 투자되었다. 나머지 130억DM는 신연방주와 공공근거리 여객교통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을 위해 투자되었다.

지금까지 긴급교체 및 유지보수 투자 이외에도 약 5,000Km의 철도와 총 11,000Km의 도로가 개축, 신축, 확장되었다. 그 가운데 약 340Km의 고속도로가 확장되었고 30Km의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20개의 우회도로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한 지역의 인프라가 이만큼 광범위하게 현대화된 사례는 전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다.

1997년에는 210억DM 이상이 독일의 교통인프라 부문에 투자된다. 이 중 신연방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90억DM로서, 전체의 43%에 해당된다.

이로써 신연방주의 교통인프라 수준을 구서독지역에 맞추는 일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것이다.

1.1.2 독일통일 교통계획

연방정부는 「독일통일 교통계획(VDE)」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의 총 투자규모는 약 700억DM로서 교통분야 투자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계속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210억DM가 17개 계획에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 약 150억DM가 환경친화적인 철도사업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우선적인 재원마련은 「독일통일 교통계획」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방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공공정책과 재정정책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지금도 동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9개의 철도계획 중 3개 계획(Eichenberg-Halle 구간, Bebra-Erfurt 구간, Helmstedt-Magdeburg-Potsdam-Berlin 구간)이 완료되었다.

또한 2개의 철도계획(Hamburg-Buechen-Nauen-Berlin 구간과 Hagenow Land-Schwerin-Rostock 구간)에 있어서는 1996년 가을부터 전철운행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Hamburg에서 Schwerin과 Rostock을 거쳐 Stralsund까지의 전철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Hamburg-Berlin 구간의 경우 운행시간이 40분 줄어 2시간 38분으로 단축되었다. Salzwedel에서 Stendal까지의 60Km에 걸친 구간은 2년 간의 공사를 거쳐 1996년 8월에 단선의 디젤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독일통일 교통계획」의 Nuernberg-Berlin간 철도계획으로 Ebensfeld-Erfurt 구간과 Erfurt-Halle/Leipzig 구간에 대한 건설작업이 1996년에 시작되었다. Halle/Leipzig-Berlin 확장구간은 철로와 관련시설들의 약 80%가 완공되었으며, 시속 160Km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통일 교통계획」의 철도부문에 있어 약 1,700Km의 철로가 신설되거나 정비되었고, 1,570Km의 철로가 개선되었으며, 580Km가 새롭게 전철화되었다.

Hannover-Berlin간 2번 고속도로, Berlin-Sued, Ostring간의 10번 고속도로, Berlin-Nuernberg간의 9번 고속도로, Eisenach-Goerlitz간의 4번 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있어 신연방주지역에서는 195Km가, 구서독지역에서는 51Km가 확장되었다. 나머지 신연방주의 208Km와 구서독지역의 113Km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Magdeburg-Halle간의 14번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1996년 11월에 Koennern-Loebejuen간의 12Km구간이 신연방주 신설고속도로의 첫번째 구간으로서 개통되었다. 또한 1996년 12월에는 두번째로 8Km의 Weissenberg-Nieder Seifersdorf 구간이 Dresden-Goerlitz간 4번 고속도

로의 연장노선으로 개통되었다. 이 두 개의 고속도로와 함께 새롭게 건설되는 Luebeck-Stettin간 20번 고속도로, Goettingen-Halle간 38번 고속도로, Erfurt-Schweinfurt간 71번 고속도로에 대한 공사가 총 157Km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Hannover-Magdeburg-Berlin간의 수로확장 공사를 위한 기획과 건설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교량의 신축을 포함한 수로확장 공사는 서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60Km에 달하는 동부지역 내륙운하를 거쳐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Magdeburg를 수운의 교차지로 하는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다.

내년에는 많은 구간이 개통될 것이다.

「독일통일 교통계획」 중 철도부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997년 중반까지 Hamburg-Berlin 동물원까지의 구간과 Uelzen-Stendal 구간, 1998년에는 Hannover-Stendal-Berlin 구간이 단선으로 완전 전철화된다.

Leipzig-Dresden 구간은 Leipzig-Riesa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1998년까지 완료됨에 따라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되게 된다.

고속도로 신설에 있어서는 Luebeck-Stettin 구간의 2번 고속도로에서 Wismar 우회도로, Magdeburg-Halle 구간의 14번 고속도로에서 Magdeburg 서부우회도로, Frankleben/Beuna 구간의 9번 국도구간에서 Berlin-Nuernberg 구간의 9번 고속도로 간의 구간을 Goettingen-Halle 구간의 38번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건설된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의 확장부문에 있어서는 Hannover-Berlin 구간의 2번 고속도로와 Berliner Südostring의 10번 고속도로, Berlin-Nuernberg의 9번 고속도로, Eisenach-Dresden-Goerlitz 구간의 4번 고속도로에 훨씬 효율적인 연결도로가 마련될 것이다.

「독일통일 교통계획」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2000년 초 까지 완료될 것이다.

1.1.3 기타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독일통일 교통계획」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투자들이 실현되었다.

철도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약 400Km가 전철화되었는데, 그 중에는 Erfurt-Soemmerda, Neubrandenburg-Stralsund, Camburg-Probstzella 구간 등이 포함된다. Nordharz의 Vienenburg와 Stapelburg가 연결되어 운행이 개시되었다. Camburg-Hochstadt-Marktzeuln 구간이 완전히 복선화되었고, Sachsenmagistral-Plauen-Leipzig/Dresden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구동독 국철(DR)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독일국철(DB)은 1994년~2002년 동안 매년 37억DM의 투자보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로써 구동독 국철의 철도망과 철도 인프라를 독일국철의 건설 수준과 기술 수준에 맞추기 위한 투자 재원이 마련되었다.

연방장거리도로에 대한 투자의 중점은 교량에 대한 보수와 확장 및 연방도로망의 확장과 개선, 그리고 우회도로의 건설과 노면의 보수 등에 주어졌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연방도로 구간에 12개의 교통흐름 조절장치가 설치되었으며, 3개의 교통흐름 조절장치가 140억DM의 투자규모로 공사 중에 있다.

연방수로망에 대한 조치들은 수로확장을 위한 예비작업 이외에도 수문과 축대의 시급한 유지보수·신축과 함께 연안보호에 집중되고 있다.

해상교통에 있어서 Wismar와 Stralsund항의 선박 진입시설 건설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다. 1996년 Rostock항의 진입시설에 대한 공사도 시작되었다.

Havel-Oder강 수로의 부분확장과 Niederfinow에 또 하나의 선박기중장치 설치, 수로건설을 통한 엘베강의 수운교통 개선, 기타 수로의 유지보수와 현대화 등이 내륙수운교통 분야의 중요투자 부문이다. Saale강에서는 수운교통의 개선을 위해 수문의 보수와 준설작업이 이루어졌다.

1.1.4 공공근거리 여객교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건설 지원

공공근거리 여객교통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연방정부는 1988년 1월 28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교통상황의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법(지방자치단체 교통재원조달법: GVFG)」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공공근거리 여객교통 상황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1992년 2월 21일자 「가정부담경감법」과 「투자 및 고용조건 개선법」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 축적과 지원율의 인상, 지원목록의 확대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시행권이 주정부에 대폭 이관되었다. 이로써 각 주정부는 각 주의 교통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원의 80%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나머지 20%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데, 특히 중요한 근거리 철도교통 계획들이 이에 해당된다.

1990년 하반기 부터 1996년 말까지 연방은 신연방주에 약 130억DM를 지원하였다.

중요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베를린 전철망의 복구와 연결
- 도시전철의 신축과 확장
- 전철 및 버스 정류장의 현대화

- 노선버스와 전철의 현대화
- 주요 시내도로와 도시횡단 교통망 진입도로의 확충

철도교통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1월 1일 부터 근거리 철도여객교통(SPNV)에 대한 책임은 각 주로 이관되었다. 1993년 12월 27일자 「공공근거리 여객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주는 1996년 부터 사용목적이 공공근거리 여객교통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근거리 철도여객교통에 사용될 수 있다. 1996년 신연방주에 지원된 이 재원의 규모는 약 30억DM이었다.

1.2 복합교통 및 화물교통센터

연방정부는 도로교통 이용율보다 철도교통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조치로서 복합교통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신연방주는 복합교통의 환승·환적역을 통해 전국 및 국제 교통망에 연결되었다.

독일과 동구국가 및 비EU국가들 사이의 복합교통망 연결은 1995년과 1996년에도 계속 확충되었다. 이에 대한 일례로 1995년 10월 부터 베를린과 모스크바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일명 「동풍(Ostwind)」이라는 컨테이너 운송열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질적인 면에서나 수송시간의 측면에서 독일과 러시아간의 복합교통에 있어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1995년에 철도는 복합교통체계를 이용해 약 3천10만t을 운송하였으며, 1996년에는 약 3천80만t을 운송하였다.

Rostock, Leipzig, Dresden, Erfurt, Glauchau(Chemnitz/Zwickau), Magdeburg, Berlin에 화물교통센터(GVZ)가 점진적으로 설치되면, 철도, 도로, 내륙수운, 해상수송 간의 상호연결체제가 개선되며, 도심지의 화물운송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교통안전도도 높아지게 된다.

8억DM가 Leipzig 화물교통센터에 이미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보장되었다. Erfurt 화물교통센터에는 지금까지 3억DM가 투자되어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1.3 항공교통

일련의 현대화 및 확충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신연방주의 주요공항(Erfurt, Dresden, Leipzig/Halle, Berlin Schoenefeld 공항)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터미널의 신축과 확장, 활주로의 보수, 이착륙 유도 보조시설들의 확충 등이 해당된다. Dresden 공항과 Leipzig/Halle 공항에서는 매우 나쁜 기상조건(운항등급 IIIb)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Erfurt 공항에서도 향후 2년 내에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1996년에 약 6백만명의 승객이 상기 4개 공항을 이용하였다(1995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반대로 동 기간내 항공기 운항회수는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대형항공기의 운항이 증가하였고, 장거리운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의 운행횟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항공회사(BBF)와 연방(지분율 26%), 베를린시(지분율 37%), 브란덴부르크주(지분율 37%)는 1996년 6월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의 입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Schoenefeld 공항을 교통의 발전에 맞추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지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기획, 건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신국제공항의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항공회사(BBF)와 자매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민간자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 해상교통과 항만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항만경제는 국내외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항구들은 EU의 확대와 경제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해 동해(Ostsee)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항구의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가 이미 확충되어 해운경제적으로 호응도가 커져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항만정책은 이 곳을 전통적인 환적장소에서 다양한 서어비스 시설을 갖춘 해운서어비스센터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일 것이다.

1996년 신연방주 항구의 화물처리량은 약 2,370만톤(운송수단 자체무게 제외)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가 증가한 것이다. Rostock항의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물처리량이 1995년 1,270만톤에서 1996년에는 1,58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Wismar항은 1996년에 화물처리 가능규모를 1995년 대비 20만톤 향상시켜 연간 19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였으며, Stralsund항, Wolgast항, Greifswald-Ladebow항도 꾸준히 일정량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Rostock/Warnemuende항, Sassnitz항, Mukran항을 통해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250만명의 승객이 수송되었다. 화물수송량은 1995년에 약 590만톤, 1996년에 580만톤을 기록하였다.

1995년 6월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 주정부는 1억7천5백만DM 규모의 투자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Mukran-Klaipeda 사이의 왕복페리호항의 항구시설을 더욱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2개의 정박장과 세관을 갖춘 새로운 승선시설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는 1998년 초에 완료될 것이다.

「독일동해페리회사(DFO)」는 Trelleborg 항과의 운송서비스를 Sassnitz 항에서 Mukran항으로 이전하였다.

신연방주 항구에서의 화물처리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월~1997년 1월 동안 항만분야 노동자의 수는 1,381명에서 1,085명으로 감소하였다.

해운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노동정책적 비중을 감안하여,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 주정부는 항만인프라의 확충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의 틀 안에서 총 약 7억9천만 DM 규모의 지원책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총 약 11억DM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161척의 화물선과 약 13,000명의 근로자를 가진 「독일로스톡선박회사(DSR)」에 대한 사유화 작업이 1993년 중반에 완료되었다. 1995년 12월 까지 Rostock시와 인근지역의 최소한 625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2,225개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약속은 지켜졌다. 현재 「독일로스톡선박회사」에는 전세계적으로 3,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중 약 1,800명은 선박운항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독일로스톡선박회사」를 통해 총 수송능력 약 1백만톤(선적무게와 선박 자체무게)인 약 50척의 자기소유 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1998년 말 까지 추진되는 선박개선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독일로스톡선박회사」는 17척의 새로운 선박을 주문하였다. 이 중 14척이 컨테이너선(약 55,000개의 컨테이너 선적 가능)으로 컨테이너 수송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1.5 도로교통안전

1997년 1월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약 663만대의 승용차가 등록되었다(이 중 80.5%가 배기가스 정화차량). 1996년 12월 현재 1,000명 당 승용차 보유 대수는 467대로 서독지역 수준에 거의 근접하였다. 독일전체의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502대이다. 경찰당국에 의해 파악된 신연방주의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5년 79,800건에서 1996년 78,600건으로 줄어들었다. 동 기간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106,500명에서 104,700명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1992년 이래 감소 추세에 있다(1991년: 3,760명, 1996년: 2,632명).

1990년~1996년 동안 약 2억7백만DM가 독일전역에서의 교통안전 활동에 사용되었다.

연방교통부는 이를 통해 신연방주에서의 교통안전활동의 재편을 지원하고, 독일교통안전위원회와 교통안전감독원과 함께 1991년 부터 분야별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예를 들면, 1996년 까지의 「안전제일」이라는 구호).

구조활동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직체계가 마련되었다. 신연방주들은 독자적인 주 구조서어비스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1.6 도로화물운송 관련업체

신연방주에 있는 약 8,600개의 도로화물 운송업체(독일 전체의 약 20%에 해당) 중의 많은 업체들이 운송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운송능력은 광범위하게 발전되었으나, 수요량이 적은 관계로 이러한 운송능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낮은 운송요금과 관련, 자본의 확충이 미약한 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동구국가와의 월경운송에 있어서 동구지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독일화물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 미만인 상태이다. 화물도 지금까지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건축재, 연료, 금속폐

기물)에서 투자재와 소비재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대화된 배송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서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다.

「독일 화물 교통업과 운송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 1995년 작업 계획」이라는 실행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교통부는 유럽에서의 재정적, 사회적, 기술적 경쟁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으로는 운송부담을 균형화하고, EU 역내에서 서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실시하며, 사회복지 규정에 있어서 단일한 규율을 유지하며, 기술적 감독의 기준을 균형화하고 도로화물 운송분야의 시장질서를 더욱 근접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2. 우편 및 통신

우편 및 통신분야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근본적인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 1989년 제1차 체신개혁(Postreform)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주권적이고 정치적인 분야가 사업적이고 기업적인 분야와 분리된 이래, 1995년 제2차 체신개혁으로 「독일연방체신우편(Deutsche Bundespost)」의 기업들은 「독일텔레콤주식회사(Deutsche Telekom AG)」,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 「독일우편은행(Deutsche Postbank AG)」으로 전환되도록 계획되었다.

새로운 「정보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과 「우편법(Postgesetz)」 초안에 의해 우편·통신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에 필요한 법률정책적 틀이 마련되었다. 1998년 1월 1일 연방체신부가 해체됨에 따라 연방경제부 산하에 설립되게 될 후속관청은 우편과 통신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특정영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인프라의 안정화와 독일 산업입지의 관점에서 「독일연방체신우편」과 후속기업들의 재통합은 커다란 도전이다. 양적, 질적으로 구서독지역과 같은 수준의 우편·통신 서서비스를 가능한한 빨리 신연방주에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계속 추구되고 있다.

2.1 우편

1990년 이후 신연방지역에 존재했던 우편인프라의 커다란 취약점들이 광범위한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거되었다.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계획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잠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신속하고 역동적인 이러한 적응조치들은 올바른 방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7월 연방전역에 새로운 소포우편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신연방주는 유럽의 가장 현대적인 소포우편망에 편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이래 모든 주에서 소포우편 서어비스의 완전한 동질화가 확보되었다. 신연방주 소포우편 상품의 다양성과 서어비스의 질은 향상되었으며, 구연방지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4시간 내지 48시간 내의 소포우편 서어비스를 보장하는 총 33개의 소포우편센터 중에서 8개 소포우편센터 지부가 신연방주에 설치되었다. 이 신연방주 지부에는 품질보장과 고객 서어비스를 위한 특별부서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소포 발송에서 부터 배달 까지 평균 1.2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편지우편에 있어서도 「편지우편 2000(Konzept Brief 2000)」 정책으로 고객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우편작업과 배달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초현대식 자동화우편센터의 설치가 여기에 속한다. 1998년 까지 총 83개의 자동화우편센터가 독일 전역에 설치될 예정인데,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이 계획을 위해 39억DM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미 총 12개의 자동화우편센터가 신연방주에 설치되어 우편망에 연결되었으며, 1998년 까지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편지우편 분야에서도 뚜렷한 질적 향상이 달성되었다. 1995년 7

월 중순 부터 1997년 초 까지 동베를린 지역을 포함한 5개 신연방주에서의 우편배달 소요기간은 구연방주 수준에 도달했음은 물론 구연방주 수준을 뛰어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1996년에 최고 배달수준에 도달되었다. 독일의 평균 편지우편 배달 소요시간은 1.1일이며, 편지의 91% 이상이 다음 날 까지 배달된다.

독일우편주식회사는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쟁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편광고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신연방주 중소기업의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1996년에 총 10개의 우편광고센터가 개설되어 무료상담과 다양한 지원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우편광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개소는 베를린과 드레스덴에 있다.

우체국의 현대화는 고객친밀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기여하였다. 신연방주에서는 「열린 서어비스 정책(Open Service-Konzept)」에 따라 27개의 우체국이 개축되었으며, 1,300개가 넘는 우편 처리소가 설치되었다. 신연방주 소재 10개 우체국에서는 우편서어비스 외에 생활용품, 종이류, 잡지류를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우체국(PostPlus) 경영방식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통해 서어비스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신·구연방주 사이의 서어비스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Emnid의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우편 인프라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연방주 인프라 수준으로의 적응이 달성되었다. 독일우편주식회사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통해 신연방주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에 동 회사는 1995년 중반 부터 1996년 말 까지의 기간 동안에만도 신연방주 회사들에게 4억3천만DM에 달하는 약 14만건을 발주하였다.

2.2 통신

시행기간이 1997년 말에 끝나게 되는 통신분야 인프라구축 프로그램인 「

Telekom 2000」으로 인해 신연방주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망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과 신연방주 기업이나 신연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주민 생활수준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었다.

1996년 8월 1일 새로운 「정보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의 발효로 신연방주를 포함한 독일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신연방주가 가지고 있는 이와 관련된 산업입지적 장점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Telekom 2000」 프로그램에 따라 1996년 말 까지 약 445억DM가 신연방주에 투자되었다. 이로써 현재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는 8백만 이상의 전화회선이 디지털 통신망으로 구축되었다(디지털 통신망 구축률: 신연방주 약 98%, 연방 평균 81%). 고정 통신망 외에 이동전화 회선은 많은 공급업자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1996년 말 까지 발주되지 않은 「독일텔레콤주식회사(Deutsche Telekom AG)」의 475,000건의 전화회선 구축 위탁사업들에 대한 발주는 1997년 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제 1998년 부터는 신연방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화회선 공급계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시장지배자적 입장에 걸맞게 일반적 사업조건들에 따라 지체없이 전화회선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독일텔레콤주식회사에게는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신연방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3만7천개로 구연방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의무 서어비스와 일반 서어비스를 위해 공중전화부스의 증설이 계속 될 것이다.

신연방주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공급수준은 구연방지역의 수준과 같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위성수신과 독일텔레콤주식회사의 지상방송망을 통한 지상방송, 독일텔레콤주식회사의 광역주파수 케이블 방송망 및 지역방송 운영자 간의 경쟁 속에서 달성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제 신연방지역에 구연방지역 수준과 동일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과제는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디지털화 정도에서 보여주듯이 부분적으로는 신연방주가 구연방주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연방정부가 신연방주를 위해 특별히 처리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현대적인 환경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연방정부는 주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위험 요소의 제거 및 신연방주에의 효율적인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일 후 첫 해에 일련의 특수한 환경보호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산업, 공기정화와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등의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0년 까지 독일 전체에 똑같이 높은 수준의 환경조건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환경상황과 환경인프라가 점차 개선되어감에 따라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차원의 지원은 그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와 환경의 지속적인 이용 및 환경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연방의 지원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E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부터의 특별한 지원책이 이용될 수 있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연방환경부는 1995년과 1996년에 신규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해 총 2천5백만DM를 사용하였다. 폐수처리, 공기정화와 환경친화적인 교통인프라 부문이 중점지원 대상이었다.

1995년과 1996년에 유럽부흥계획(ERP)으로 부터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폐수정화, 폐기물산업, 공기정화 분야에 대해 총 38억DM의 저리융자가 보장되었다.

게다가 EU 구조조정기금으로 부터 환경보호 조치를 위해 1994년~1999년 동안 총 13억7천만ECU(약 27억4천만DM)가 독일에 제공된다. 이 중 약 11억ECU(약 22억DM)는 신연방주(제1목표지역: 저개발지역)에 제공된다. 중점지원 분야는 용수원의 보호와 유지, 정수시설의 건설, 폐기물 처리, 폐기된 산업용지의 정화, 환경기술센터의 건립 등이다.

1996년 부터 1999년 까지 EU의 환경지원 프로그램인 「LIFE」는 환경 및 자연보호계획을 위해 유럽전역에 총 약 4억5천만ECU(약 9억DM)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신연방주는 1995년과 1996년에 7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437만DM를 지원받았다. 이는 주로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법인체에 유리한 지원을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시험적인 계획과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3.1 식수공급과 수리보존

환경보호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용수분야도 환경·사회친화적인 경제 및 생활방식이 전세계와 전세대에 걸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용수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달성해야 할 장기적인 환경의 질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수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를 규정해야만 한다.

지상수와 지하수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공공용수의 안전성 확보는 환경 및 보건정책의 핵심과제이다.

통일당시 신연방주의 지상수와 지하수의 일부는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그 이후 자연상태의 물(1990년 당시 심하게 오염되었던 엘베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을 단순하고 거의 자연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적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없고 안정적인 위생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방과 각 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주체들의 공동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통일당시의 개략적인 분석에 따르면, 동독주민 절반 이상의 식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식수상황의 특징으로는 공공급수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식수 자급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방과 각 주는 「식수응급조치 전문위원회(FKST)」를 설치하여 식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당국의 자문에도 응하도록 하였다. 신연방주 식수의 2/3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수연구계획의 일환으로 지하수 성분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다.

그동안 「식수응급조치 전문위원회」의 업무는 종결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보건상 문제가 없는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정화조치들이 입안되었으며, 해당관청에 의해 수행되었다.

신연방주 식수에 있어 식수규정에 따른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철분과 망간과 PH치와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들 뿐이다. 한계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해당 보건관청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일례로 식수의 PH치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현재 주민의 1.8%(35만명)에 불과한데, 1989년에는 28.3%(470만명)에 달했다. 비록 PH치의 초과 자체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속파이프의 부식을 가져와 파이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파이프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금속성분이 식수에 축적될 가능성도 있다.

식수사용의 감소추세에 따라 식수원에 유해물질이 심각할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 급수시설을 폐쇄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졌다. 과도한 질산염으로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약 10만4천명에 대한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186개의 소규모 급수장은 아직도 질산염 함유량이 50mg/l 이상이며, 그 중 2천명에 대한 급수장 10개의 경우에는 90mg/l이다. 통일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1989년 당시만 해도 무려 100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한계치를 넘는 질산염이 함유된 식수를 공급받았으며, 그 중 약 10만명에 대한 식수의 질산염 함유량은 90mg/l이었다. 공공급수망을 확대함에 있어, 질산염 오염도가 높은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들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가정 우물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식수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바, 물이 급수 파이프에 정체됨으로 인해 위생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신연방주의 공공급수 연결율은 1990년 이래 약 6% 증가한 97.8%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생산비용 충당 성격의 요금체계의 도입과 식수 소비량의 계속적인 측정, 녹슬은 급수파이프의 집중적인 정비를 통한 누수량의 감소로 수도요금은 당초 수준의 50% 까지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량의 변화와 무관한 고정비용이 80%에 달하는 식수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식수소비가 감소할 경우에 생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광범위한 투자를 지원하였지만, 식수공급에 대한 책임을 종전의 「식수공급 및 폐수처리회사(WAB)」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분적으로 매우 소규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단체로 이관하는 과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많은 경우에 있어 필요한 정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요금결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에 있어 중요한 이러한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1993년과 1994년에는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통일기금」이 사용되었다. 1995년 부터는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에 따른 특별재원을 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2 하수처리

3.2.1 신연방주의 하수도 연결율과 시설현황

관련기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작성된 다음 표가 보여주듯이, 하수도 및 정화시설 연결율의 발전 추세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연방주 하수도망의 우선적인 확대와 생물학적 하수처리를 통해 하수연결율은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하수연결율과 시설현황 >

	1979	1983	1987	1991	1995
주민수(천명)	16,700	16,700	16,700	15,790	15,503
하수도연결율(%)	68.8	69.9	71.8	75.0	80.0
공공하수로의 총연장(Km)	22,000	29,800	37,600	37,960	50,000
정화시설 연결율(%)	52.0	54.0	56.8	59.6	70.0
공공정화시설의 수	자료없음	자료없음	1,100	1,268	1,769

3.2.2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의 절감

식수와 하수도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정책적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평균 하수도 요금은 1m³당 5DM인데 반해, 신연방주의 경우에 9.7DM 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적으로 주민 고통의 한계에 다다른 하수도 요금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의 비용절감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비용과 요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된 최근의 조사에서 일련의 잠재적 절약요인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미래의 수요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와 관련 되는 연간비용을 광범위하게 계수비교함으로써 가장 저렴한 정화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분야에서의 비용절감 조치들은 책임감과 기

업경영적 접근방법의 결합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보다 많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격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토록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효율적인 수리경제적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민간자본 또한 많이 조달되어야 한다. 그 일례로 폐수처리를 위해 ERP 특별재산으로 4억1,650만DM에 달하는 용자가 승인되었다. 이는 1조5,891억DM의 투자액에 대한 것이다. 이 중 5억2,450만DM의 투자액에 대한 1억6,840만DM이 신연방주에 해당된다.

< 신연방주의 평균 하수도요금 >

연방주	표본추출도 (%)	요금의 가중평균치 (DM/m ³)	조사된 요금의 분포범위 (DM/m ³)
브란덴부르크	68	5.82	3.36 - 9.70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	45	4.67	1.75 - 8.47
작센	53	4.31	2.85 - 8.42
작센-안할트	42	4.84	3.05 - 9.55
튀링겐	57	4.11	1.00 - 8.66
신연방주	53	4.70	1.00 - 9.70

3.3 폐기물 처리

폐기물 산업은 개선을 거듭하여 구연방주 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가동되었다. EU의 폐기물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를 통해 충족되고 있다. 폐기물 산업의 인프라 구축 작업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모든 주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물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법」, 「폐기물처리기술지침」이 정하고 있는 환경보호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은 포기될 수 없다. 이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상을 막기위해 모든 주에 광역적인 폐기물 처리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3.4 민간경제의 참여에 의한 경쟁력 있는 해결책

급수, 하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같은 분야는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재원을 민간재원을 통해 조달하고 해당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에 맡기면 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 및 재정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급수·하수처리 업무와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민간경제부문의 효율적인 참여를 기꺼이 허용하려는 분위기가 증가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경쟁 속에서 발견된 민간경제 부문의 해결책이 가격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또한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지는 개별사안 조사의 원칙 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

비용과 가격의 인하에 대한 기대효과 외에도, 민간기업의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제적인 경영과 운영기법, 그리고 민간기업 참여하의 민간경제적인 해결책들은 효과적인 환경보호 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나아가 경제재건 전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연방주에는 85개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이 민간기업의 참여하에 또는 민간기업 독자적으로 기획 또는 공사 중이거나 일부는 완공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나 반대의견도 많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처리단체에 대한 자문 이외에도, 각 주정부 차원에서 해당 법규를 마련하고 시·군에 대해 공공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에 있어 경쟁의 원리와 경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

민간경제적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환경부는 1992년과 1993년에 「신연방주에서의 민간경제 부문에 의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8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실제 경험을 종합한 보고서는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업모델, 협력모델에 관한 시험계약들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실제사례들은 민간 경영모델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증가와 환경인프라 확충의 가속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방, 신연방주 그리고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합동작업반이 제출한 보고서는 환경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총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연방정부가 「독일상공회의소(DIHT)」, 「독일산업연맹(BDI)」 및 각 주 정부들과 공동으로 취한 민간경제조직과 공공조직간 상호참여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의 기본골간이 되었다.

그 중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는 사업의 경제성을 실무적으로 비교형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가장 유리한 조직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 제13대 연방의회 연정내각 구성시 합의사항 중에는 민간이 급수 및 폐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법상의 조직과 사법상의 조직간에 세계상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있었으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96년도 조세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 연방환경부의 발의와 독일상공회의소의 주관하에 독일연방환경재단의 재원으로 베를린에 「지방자치단체 환경인프라 상담소」가 설립되었다.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식수공급 및 폐수처리시설의 공개입찰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것은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직형태를 찾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독일연방환경재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1994년 중반 부터 3년간 자문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인 계약

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연방환경부는 1997년 체크리스트 형태의 새로운 시범계약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수처리 분야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대한 개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6차 수리예산법」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법적으로 하수처리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주가 그들의 하수처리 의무를 완전히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4. 도시건설과 지역개발

4.1 통일당시의 상황

50년 이상 방치됨으로 인해 나타난 도시건설상의 문제점들은 1990년 이래 실시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제거될 수 있었다.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도시들의 몰락현상은 중지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물 신축 분야에서도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쾌적한 주거지역을 통해 형성되는 매력적이고 미래적인 신축지역 구축과 생기있는 도심건설은 신연방주 도시건설 혁신의 목표가 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도시건설 지원은 경제재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비록 통일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정비와 도시기능의 개선과 함께 특히 건축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호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이 가시화되고 있다.

4.2 도시건설 혁신의 법적 기초

도시건설에 필요한 법적 기초는 통일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신연방주에서의 도시건설이라는 과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시급하게 필요한 건설투자에 대한 허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었다. 동시

에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전환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하였다.

1993년 5월 1일 발효된 「투자간소화법」과 「주택건축부지법」에 따라 건축과 건축계획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조치가 확대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또한 신·구연방주간의 법적 단일화 목적이 이미 고려되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구연방주 규정들의 효력들이 신연방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에만 효력이 있던 규정들이 전체연방지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건축계획과 개발계획에 관한 규정들과 도시건설계약에 관한 법적인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초안(BT-Drs.12/6392)을 통해 연방정부는 1993년 2월 12일자 연방하원의 의결사항(BT-Drs.12/4317, 신연방주에 대한 건축법 부속 관련조치법과 과도규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되면 단일 건축법이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결)을 실행하게 된다. 동 초안은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단일한 도시건설법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4.3 도시건설 관련조치

연방정부는 건축유산의 보존과 도시건설의 혁신을 위해 신연방주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1990년 부터 1996년 까지 약 54억DM를 제공하였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조적인 재정지원 까지 포함해서 총 125억DM가 도시정비 및 발전조치, 도시건설계획(1991년, 1992년), 도시개발조치(1993년, 1994년), 대규모 신축지역 개발 및 기념건축물 보호에 투입되었다. 1997년에도 연방은 5억2천만DM를 각종 도시건설 관련 조치들을 위해 신연방주에 제공하였다.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방정부는 다음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다.

- 거주, 문화, 상공업, 서어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부여를 통한 활력있는

도심 창출 및 건축문화적 유산들의 보존

- 사회·생태적 측면의 고려하에 건축물의 보전과 개선
- 거주지역의 개선과 도시건설적 기능의 개선을 통해 대규모 신축지역을 바람직한 도시생활 지역으로 계속 개발

그동안 도시건설 지원책은 신연방주에서 건축물의 보전과 개선, 주거만족, 시·군의 매력과 입지조건의 질을 계속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도시건설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지원프로그램과의 결합 및 민간부분의 투자 촉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 및 노동정책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하게 마련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재건에 있어서도 도시건설 분야의 혁신은 이러한 점을 증명해 주었다.

4.4 도시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도시건설 지원책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1996년에 「신연방주에서의 도시 정비와 개발을 위한 연방-주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의 차원에서 신연방주에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의 효율성이 조사되었다. 5년의 도시정비 기간 동안 매 도시건설 사업건 당 3,420만DM 규모로 도시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구연방주의 경우 10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건축량이다.

효과분석 결과, 군과 그 주변지역의 건설회사들이 총건설 규모의 60%~100%를 수행하였으며, 도시정비에 대한 연방과 주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 분야에 대한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투입을 몇 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실험적인 주택 및 도시건설」이라는 연구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축지역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이프찌히-그뤼나우 신축지역의 예에서 보듯이, 조립식 주택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적 주택건설 방식을 탈피, 조립식 주택건설 방식에 입각한 미래도시에 관한 「이스탄불 의제」의 개념은 신연방주의 해당 거주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중부유럽

과 동유럽,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후세들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신축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V. 노동법 관련제도의 개편

1.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발전

신연방주의 모든 경제분야와 서서비스분야에 있어 현재 완벽한 임금협약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6년에도 구연방주의 단체협약 임금수준에 접근하려는 평준화 노력이 신연방주에서 완만하게 지속되었다. 근로자의 평균 기본임금 수준은 1995년 말에는 서독지역 협약임금의 87% 수준이었으며, 1996년 말에는 89%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한 앞으로도 수 년간 임금을 서독지역 수준에 접근시키기로 합의되어 있다. 서독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임금이 협약임금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임금협약에 기속되는 고용관계를 갖는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협약임금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의 실질소득은 종전과 다름없이 구연방주의 실질소득에 비해 매우 낮다.

임금협약상의 근로조건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당 법정 노동시간과 휴가일수인데, 1996년 말 구연방주의 경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약 37.5시간이었던데 비해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약 39.5시간이었다. 휴가일수의 경우 구연방주는 평균 29.5 근무일이었으며, 신연방주는 평균 29.0 근무일이었다.

1991년 1월 1일 부터 「재산형성법(Vermögensbildungsgesetz)」이 신연방주에 시행됨에 따라 1996년 말 까지 이 지역 임금협약 대상 근로자의 62%가 재산형성에 유용한 급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노동시장의 발전

동독 경제체제의 붕괴 이후 1990년대 전반기 동안 많은 재정이전을 통한 구조전환 과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동반한 경제재건 과정을 통해 신연방주에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신연방주의 국내총생산(BIP) 증가율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8.9%와 9.9%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995년에 5.3%, 1996년에 2.0%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 결과, 1995년 근로자 수는 연평균 72,000명이 늘어난 638만 6천명으로 늘어났으나, 1996년에는 97,000명이 줄어든 628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실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1995년 연평균 실업자 수는 95,000명이 줄어든 104만 7천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116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5월의 경제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도의 경제성장율을 2.1%로 예상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1997년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며, 근로자의 수도 1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7년 4월 말 현재, 신연방주의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 8천명이 늘어난 131만 5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1995년에 14.0%, 1996년에는 15.7%를 기록하였다. 1996년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연방주(9.1%)보다 훨씬 높아졌다.

신연방주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준은 항상 평균 이상으로 높다. 1996년의 경우 구연방주지역에서는 실업자 100명 당 14명이 직업교육, 직업전환교육, 고용창출조치(ABM) 및 생산적 고용촉진조치(Massnahmen der produktiven Arbeitsförderung)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신연방주에서는 44명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도 실업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1996년의 실업자 수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57.6%이었다. 1994년에 이 비율은 약 65%이었다. 1996년 여성 실업자의 비율이 낮아진 이유로는 남성

실업자의 증가율이 27.9%로 크게 늘어난 반면, 여성 실업자의 증가율은 2.1%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실업률은 19.9%로 남성의 실업률 13.7% 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신연방주의 노동시장 상황은 경제적 재건과정이 또 다시 진전되어야 비로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의 예상경제성장율을 2.5%로 설정함에 있어서, 구연방지역에 비해 낮은 신연방주의 생산성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의 감축과 실업률의 증가가 고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건과정이 본궤도에 올라서야 비로소 근로자의 수가 다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세계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경제의 제반조건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에 있어 구연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연방주의 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연방주는 경쟁력에 있어 구연방주에 뒤질 수 밖에 없어 신연방주의 재건과정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 제도를 통한 사회문제의 완화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 제도는 일자리의 대량 감축을 완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초기 노동시장으로의 교량기능에 점점 집중되었다. 이로써 노동시장정책의 정상화에 점점 접근하게 된다.

1995년 가을에 조기퇴직연금(Vorruhestandsgeld)에 대한 마지막 지급이 있었다. 고령과도기연금(Altersuebergangsgeld) 수령자의 수는 1995년에 34만3천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단지 18만7천명에 그쳤다. 고령과도기연금은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 까지 신청되어야 하고, 동 연금은 노령연금 가입 최초 가능시 까지 길어야 5년 동안 까지만 지불되기 때문에 고령과도기연금 수령자의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1997년 1월에는 11만2천명이 고령연금 체제로 편입되었다. 1997년의 평균 고령연금체제 편입자의 수는 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단축조업은 더 이상 경제체제의 붕괴에 대한 완충조치로서 기능하지 않고, 임시적인 노동부족 현상을 메꾸는데 이용되고 있다. 1991년의 연평균 단축조업 근로자의 수는 160만명 이었으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7만1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높은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금대체 급여(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5년에 등록된 실업자의 80.8%가 이 급여를 받았으며, 1996년에는 그 비율이 83.1%로 높아졌다. 그중 실업자의 54.5%가 실업수당을 받았으며, 28.6%가 실업보조금을 받았다.

신연방주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다. 1996년의 실업자 등록신청 건수는 217만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 실업자의 수는 18.6% 증가한 21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직업교육, 직업전환 교육, 고용창출조치(ABM)와 생산적 고용촉진조치(Massnahmen der produktiven Arbeitsförderung)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직업교육과 직업전환 교육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직업교육과 직업전환 교육을 시작한 인원은 1995년에 25만7천명, 1996년에 26만9천명이었다. 또한 동 교육에 참가한 연평균 인원은 1995년에 25만6천명, 1996년에 23만9천명이었다. 앞으로 직업교육과 직업전환 교육 조치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조치(ABM)에 의해 이루어진 직업알선 건수는 1995년에 22만2천건, 1996년에 23만5천건을 기록하였다. ABM 조치에 의해 취업한 연평균 근로자 수는 1995년에 20만6천명, 1996년에 19만1천명으로서 1993년과 1994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다. 1992년의 연평균 ABM 취업자 수는 38만8천명으로 훨씬 많은 수의 실업자가 동 조치를 통해 취업한 바 있다. ABM 조치는 특히 환경보호, 산업용 부지의 정비, 인프라의 개선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93년 ABM 조치가 축소됨에 따라 나타난 공백의 상당부분은 곧바로 고용촉진법(AFG) 제249h조에 따라 도입된 「생산적 고용촉진조치」를 통해

보충되었다. 1995년에 이 조치의 수혜를 받은 인원은 연평균 10만6천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8만6천명이었다. 1996년에 수혜인원이 감소한 것은 공동 재정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화학, 갈탄 채굴업 부문과 환경정화 부문에서의 수혜인원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회봉사와 청소년 선도 분야에서도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그 반면, 1994년 이 조치의 대상분야로 추가된 문화활동, 스포츠, 유적보전 등의 분야에의 참여자는 증가하였는데, 1996년 말 까지 약 9천명이 동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따른 임금보조금(Lohnkostenzuschuss)은 실업수당과 실업보조금의 평균수준을 근거로 하여 개괄적으로 계산되는 관계로 연방노동청과 연방의 예산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ABM 조치의 경우에는 지원종류의 수가 많고 보조금의 액수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연방노동청 예산에 있어 커다란 비용요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ABM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4월 기민당(CDU)-기사당(CSU)-자민당(FDP) 연정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고용촉진법의 개혁과 관련하여, 2000년 까지 신연방주에 대한 ABM 지원규모를 실업상황의 추이에 따라 점차 구연방주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노동청 예산안 편성과 승인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방노동청의 1997년도 예산안에서 이러한 조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동 예산에서 신연방주에 대한 ABM 지원예산은 60억DM로 감축·책정되었다. 이 액수는 여전히 구연방주에 대한 ABM 지원 예산 28억DM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고용촉진개혁법(AFRG)의 시행에 따라 ABM 조치 분야에 있어 지원종류별 지원액이 인하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참여자에게 분배되었다.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따라 1997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생산적 고용촉진조치상의 지원은 계속 보장되었다. 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동 지원은 2002년 까지 연장되나, 1998년 부터는 지금까지 구연방주 지역에만 적용되던 고용촉진법 제242s조에 통합되어 「구조조정조치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된다.

이 지원에 적용되는 임금은 ABM 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비지원대상 노동에 대한 임금수준의 90%에서 80%로 하향되었다. 이로써 공동재정지원에 있어 재정 부담이 경감되었다. 게다가 지원 수준의 인하에 따라 비지원대상 분야로의 직업전환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기가 유발·촉진되었다.

고용촉진개혁법의 시행과 함께 신연방주에 대한 고용촉진법 제249h조와 고용촉진개혁법 후속규정들에 따른 임금보조금 도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실업자들을 제조업 분야의 기업에 투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실업자들을 정상적인 고용상태로 편입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마련되게 된다.

ABM 조치와 생산적 고용촉진조치/구조조정 지원조치에서 정상적인 고용상태로의 보다 용이한 이행을 위해 고용촉진개혁법의 시행과 함께 제조업 분야 기업의 관련의무가 강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기업 견습생 제도를 그 외의 분야에 적용하고, 직업 자격증의 일부를 고용정책에 편입시키는 것도 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창업회사에 대한 고용보조금(Einstellungszuschuss) 지급과 같은 고용촉진개혁법상의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실업자들을 신속하고도 비용면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1995년과 1996년에도 신연방주의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5년에 298억5천만DM, 1996년에 252억3천만DM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지출되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에 105만8천명이, 1996년에는 81만7천명이 고용되어 노동시장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었다. 지출액의 감소 현상은 전적으로, 실업자 수의 감소현상은 부분적으로 고령과도기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수령자의 연령이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해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97년에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 가지고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적인 제반조건들의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선 고용촉진개혁법이 연방노동청의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금협약 당사자들은 최대한의 고용창출을 지향하는 정책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중기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다.

VI.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1. 신·구연방주에서의 연금법의 단일화

사회법전(SGB)VI은 1992년 1월 1일을 기해 신연방주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점으로 부터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법정 연금보험상의 연금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정되고 있다. 연금 전환 당시 이미 연금 수령자였던 사람들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과 연금연령 도달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규정은 1996년 말 까지 모두 만료되었다. 또한 재산보호를 위해 임시적인 급부로서 신연방주 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보전액(Auffuellbetrag)과 연금부가금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연금조정의 틀 속에 융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었다.

1992년 1월 1일 이전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유족연금법이 신연방주에 도입됨에 따라 신연방주 미망인들의 물질적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1996년 7월 1일 현재 미망인 연금액은 매달 평균 878DM로 인상되었다.

1997년 1월 1일 부터 법정 연금보험의 제반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신연방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오직 사회법전(SGB)VI의 규정들만이 적용된다.

2. 신연방주 연금 조정과정의 전개

1996년 7월 1일 부터 연금지급액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연방주의 임금인상율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다. 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다.

구연방주의 경우에 연금조정율은 전년도의 평균 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예상임금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1996년도 조세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예상되는 순연금액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조정 절차의 시행은 긴요하다. 연금조정 절차의 시행에 따라 신연방주 임금수준의 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이 연금분야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임금변동의 역동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연방주 주민의 연금조정 과정에서 더 높은 연금조정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금수준

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수입의 변동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기여금에 기초하고 있는 연금법적·연금인구적 구조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신·구연방주의 연금수준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점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연방주의 기초연금액(Eckrente, 보험기간이 45년인 평균소득자가 의료·간병보험상의 자기부담액 공제 후 받는 월간 연금액)은 1,597.57DM로서 1,941.59DM인 서독지역의 82.3%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신연방주 남성과 여성들의 평균 가처분연금액은 1,344DM로서 1,259DM인 구연방주 수준의 106.8%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별로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은 각각 98.1%과 134.4%이다.

신연방주에서 높은 연금급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신연방주의

연금인구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연방주 남성들의 보험 가입기간은 평균 46.14년인 반면 구연방주지역은 39.60년이다. 여성들의 경우, 신연방주는 33.54년인 반면, 구연방주는 25.29년이다.

현재의 가치분연금액 비율은 대부분 잠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연방주 여성들의 연금에는 다양한 신뢰보호적 추가지급액(연금보전액, 연금부가금, 이행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1996년 이래 연금보전액과 연금부가금은 연금 조정과정에서 폐지되었다. 1996년 7월 1일 신·구연방주에 거의 동일한 효과의 연금인상이 이루어지자, 구연방주 여성들에 대한 신연방주 여성들의 연금액 비율은 1996년 1월 1일 136.3%에서 1996년 7월 1일 현재 134.4%로 조금 낮아졌다. 재산보호적 추가지급액을 고려하지 않을 때, 1996년 7월 1일 현재 구연방주에 대한 신연방주의 연금수준은 남성의 경우 96.2%이며, 여성의 경우 117%이다.

4. 「청구권 및 승계권 이양법(AAÜG)」의 개정

「청구권 및 승계권 이양법」 개정법에 따라 1997년 1월 1일 부터 일정기간 동안 연금계산에 고려되는 소득의 수준이 과거 동독 국가보위부(Stasi)에 대한 직업적인 협조자와 구동독 정권에서 특별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어 높은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국가기관의 국장급(봉급단계 E3) 이상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독인민군, 인민경찰, 세관, 정당과 특정한 사회단체 등 다른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봉급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책을 수행했던 기간에 대한 연금계산에 있어 소득수준은 당시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출된다. 또한 소득수준의 제한이 예정되고 있는 경우는 현재 10만개에서 2만5천개로 한정되며, 주로 구동독의 국가체제, 경제, 사회상황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에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당시의 개별사안들을 이제까지 보다 공정하게 다루는 한편, 구동독 정권에 의해 불리하게 다루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작업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위부와 국가보위청(AfNS) 협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청구권 및 승계권 이양법」의 영역에서 또 다른 조정의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점은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수준 제한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과거 국가보위부와 국가보위청의 종사자들이 제기한 많은 미결사건 판결과정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5. 고통에 처한 농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5.1 농업 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 이양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신연방주 농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 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는 당분간 이양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이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1995년의 「농촌사회보장개혁법(Agrarsozialreformgesetz)」에 따라 1995년 1월 1일 부터 농업 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 제도가 신연방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시점 까지 신연방주에서 자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연금 이양법에 따라 법정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가 이양됨에 따라, 신연방주의 대부분의 자영농민들은 법정 연금보험과 농업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선택권이 없는 자영농민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농업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에 가입되었는데, 그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법정 연금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이었다. 1996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총 약 12,000개의 신연방주 농업기업들이 농업종사자에 대한 노후보장에 가입하였다(구연방주의 경우 278,000개 기업).

5.2 「농업활동 중단에 대한 지원법(FELEG)」의 이양

「농업활동 중단에 대한 지원법」의 이양에 따라 1995년 1월 1일 부터 신연방주의 고통 자영농민과 함께 농사에 참여하는 가족, 농업 근로자들은 특

정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산중단연금(Produktionsaufgaberente)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급여지급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신연방주의 특수상황이 감안되었다. 1996년 12월 31일 「농업활동 중단에 대한 지원법」은 연방 전체지역에서 장래적으로 실효되었는데, 이는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동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만이 지원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9월 30일 신연방주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약 8,000명의 전직농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그 재원은 연방이 부담하고 있다.

5.3 농림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보험의 이양

「농림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보험 설정에 관한 법률(ZVALG)」도 역시 1995년 1월 1일 부터 신연방주에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신연방주내 농림업 근로자들도 1995년 7월 1일 부터 법정 연금보험에 의한 보험과는 별도로 농림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보험으로 부터 법정 보상금을 받고 있다.

6. 의료보험법의 이양

원칙적으로 사회법전 V(SGB V)의 규정들은 신연방주에서도 유효하다.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경제수준이 균등해질 때 까지 법정 의료보험은 소득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분야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신연방주의 보험가입 의무 소득한도액(Beitragsbemessungsgrenze)은 구연방지역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1997년 1월 1일 현재 5,325DM(구연방주 6,150 DM)이었다. 입원치료에 대한 추가지불금(신연방주 1일 14DM, 구연방주 1일 17DM)과 요양치료에 대한 추가지불금(신연방주 1일 20DM, 구연방주 1일 25DM)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전역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최극빈한도액(Haertefallgrenze)도 구연방주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1997년의 경우 월간 총소득이 1,456DM(구연방주: 1,708DM) 이하

인 독신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추가지불금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또한 자기 부담 한도액(이른바 초과요구약관)도 구연방주 지역보다 낮다. 그러나, 약품과 봉대에 대한 추가지불금의 면제에 있어서는 1993년 1월 1일 부터 구연방주의 소득한계가 신연방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독신자의 경우 월간 소득이 1,708DM 이하인 경우 까지 추가지불금이 면제된다.

의료보험조합들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만, 베를린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이러한 분리계리제도가 폐지되었다.

3단계 보건개혁을 통해 모든 보건체계 참여자들의 자기책임이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와 또 다른 조치들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의 기반이 또 다시 공고화될 것이다.

7. 신연방주 간병구조의 구축과 정비

1990년 간병분야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2년 까지 간병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한 간병시설(약 85,000개의 수용능력 필요)이 새롭게 구축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긴급한 투자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간병시설의 상태가 양로원 건축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1991년 이래 간병보험에 대한 준비 및 시행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간병대상자의 상황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Modellprogramm zur Verbesserung der situation der Pflegebeduerftigen)」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약 100개의 외래 치료시설과 다양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일·단기 간병시설과 200개 이상의 입원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약 70개의 시범프로젝트가 신연방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지금까지 약 1억1천만DM가 지출되었으며, 이 중 3천4백만DM는 1995년 이래 지출된 액수이다.

앞으로 간병지원 프로젝트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간병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간병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틀 속에서 이러한 시범프로젝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간병보험법의 의결과정에서 신연방주의 간병인프라의 취약점들이 고려되었다. 연방은 주민들에 대한 외래진료 및 장단기 입원치료의 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간병의 수준을 구연방지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보험법 제52조에 따라 1995년 부터 2002년 까지 한시적으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지역에 매년 8억DM(총64억DM)를 지원하고 있다.

8. 상해보험

「상해보험통합법(Unfallversicherungseinordnungsgesetz, 1996.8.7)」을 통해 「법정 상해보험법」은 새롭게 수정되어, 사회법전의 제7권에 편입되었다. 이 법률은 신연방주를 위한 소수의 경과규정 만을 두고 있는데, 이 경과규정들은 과거 구동독 사회보험의 대상이었던 경우와 1991년 12월 31일 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9. 전쟁희생자 원호대책

연방원호법(BVG)과 관련법률의 이양에 따라 신연방주의 주민들도 사회가 책임져야 할 건강상의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전쟁희생자 원호 분야에서의 보상청구는 100% 가까이 처리된 반면, 기타 법률의 분야(희생자보상법, 연방방역법, 제1, 2차 SED 불법행위 청산법, 군인원호법, 민방위법)에서의 처리율은 감소하였는바, 1997년 까지는 최대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보상법상 연금수준은 구연방주의 82.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 사회부조

사회부조는 소득 및 재산과 연계된 기본보험으로서,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적 국가원칙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궁핍한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

1991년 1월 1일 이래로 몇 개의 제한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방 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이 신연방주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취업불능자를 위한 추가보조금규정(Mehrbedarfsregelung)이 1996년 11월 1일 부터 신연방주에 발효되었다. 사회보조금(Sozialzuschlag)의 지급을 통해 최소연금액을 인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경과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효력이 상실되었다. 신연방주의 특별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 법적인 청구권은 그에 필요한 서어비스나 시설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사용가능한 수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만 사회부조 담당기관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특히 이 조치는 사회부조 담당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회복지시설과 서어비스를 재정비하고 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준다.
- 구연방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추세를 고려하여 사회보조가 지급되는 소득한도액이 새롭게 규정된다. 1996년 7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신연방주 소득한도액의 경우 구연방주의 97%에 달하고 있다.

통일조약상의 조치들은 1996년 8월 1일 이후 베를린지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11. 보건제도의 개편

11.1 외래의료 서어비스 및 치과의료 서어비스

오늘날 일반의료 및 치과의료 외래 서어비스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다. 의료시설들의 분포도가 균일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의료서어비스의 부족현상이나 중대한 애로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료 서어비스의 90% 이상이 현지 의사와 치과의사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조합과의 계약하에 있는 치과의료 서어비스 분야에서는 치아질병 예방조치가 연방 전역에서 긍정적인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연방주 보험가입자들이 구연방주지역보다 각각의 의료서어비스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11.2 입원치료

수 십년간 충분한 보수 및 정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신연방주 병원건물들의 열악한 상황은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병원에 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입원진료 서어비스의 수준을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건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 제14조상의 신연방주 병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5년~2004년 동안 매년 7억DM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각 주정부가 적어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자와 진료비 부담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 기여금을 부담하게 된다. 투자금액이 최소한 210억DM에 달하는 이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입원치료 서어비스는 2004년 까지 구연방주 수준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의 병원 운영체제는 구연방주의 병원 운영체제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11.3 정신병 치료

연방정부는 수많은 조치들을 통해 정신병 치료 분야에서의 긴급한 구조 전환 과정을 지원하였다. 「동독지역 재건(Aufschwung Ost)」 공동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자 프로그램, 병원 투자를 위한 재정조달 공동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의 투자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질향상 프로그램」과 외래 및 보충 치료 분야의 모델지역 및 개별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책 등이 이에 속한다.

입원치료 분야에서의 보충적인 조치들을 포함하여 14개 지역에 상존하는 외래, 보충, 재활치료 서어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결함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 「모델지역프로그램」은 1995년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개별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1992년 부터 1996년 까지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약 2,360만DM이었다.

11.4 의약품의 공급

서독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들은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공급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 14일이나 걸리던 약국들의 의약품 공급도 이제는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공급의 개선에 기여한 국영약국들의 사유화도 사실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구연방지역과 똑같은 의약품 공급체제가 구축되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약 2,650개의 민영약국들이 있다.

신연방주의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훨씬 나은 상황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연방주의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완전히 사유화되었으며, 근로자 수도 약 6,4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구연방주의 파트너회사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제약회사들의 매출규모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연방주내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 25%에서 16.7%로 낮아졌다. 신연방주지역에서 생산된 의약품들이 구연방주에서도 유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연방주 제약

회사들은 이제 시장개척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1.5 공중보건 서어비스

보건분야를 떠받치는 세 번째 지주인 공중보건 서어비스 분야에서 신연방주의 수준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구연방주 지역의 공중보건 수준과 일치하고 있다.

11.6 건강보호

신연방주지역에 생필품 관련 규정들이 적용됨으로써 신연방주에서도 구연방지역 수준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2. 장애자의 재활 및 적응

재활의 목적은 정신적 장애자와 장애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 직업과 사회 안으로 통합하거나 적응시키는 데 있다. 의료적, 직업촉진적 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이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되어 있는 현 노동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신체적 제약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장애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질을 갖춰 장애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12.1 의료재활

그동안 신연방주에 많은 재활시설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환자(발작 환자, 대뇌부 손상환자, 노령환자, 하반신 마비환자)들의 의료재활을

위한 특수시설들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방노동사회부는 의료재활 시범시설의 설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 재활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연방노동사회부의 재정지원 하에 두 개의 노인의학적·신경의학적 재활시설과 한 개의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의료 및 직업적 재활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게다가 병원에 두 개의 노인의학적 재활시설과 한 개의 일반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2.2 장애자의 직업적응

신연방주에 양적·질적인 면에서 구연방주의 시설수준에 버금가는 장애자 직업 적응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들 수 있다.

- 성인 장애자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을 위해 약 3,000석의 자리를 갖춘 7개소의 취업지원 교육시설
- 청소년 장애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위해 약 2,380석의 자리를 갖춘 8개소의 직업교육 시설

그동안 비록 일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취업지원 교육시설과 직업교육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적어도 18억D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1996년 동안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약 4억2천만DM를 지원하였다. 1997년에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구연방주에 있는 신체 장애자를 위한 5개의 직업교육센터들의 서비스를 신연방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172개의 승인받은 장애자용 작업시설이 있는데,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수 없는 약 2,400명의 장애자들이 여기에서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거나 장애자에게 적합한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러한 시설들의 건립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 까지 연방정부는 숙소의 건립 및 확충을 포함, 이 분야에 약 9억4천만DM를 투입하였다.

각 주로 부터의 수요량 신청과 1997년 연방의 지원 권고량 등을 감안해 볼 때, 작업장과 숙소의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신연방주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이에 필요한 확충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12.3 사회적 재활

장애자 지원부문의 많은 부분에 있어 일자리, 시설, 기타 재원 및 기존의 제반 지원 수단에 대한 수요들 간의 불균형 상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개의 제한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자 적응지원을 위한 법적인 청구권은 사회부조 시행기관이 이에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한 청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는 사회부조 시행기관들로 하여금 가용 재원을 긴급한 사회복지 시설과 서어비스의 정비·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로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수준에의 도달과 기존 시설들의 정비를 위해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정신장애자와 복합장애자들을 위한 시설 분야이다. 1995년 현재 신연방주 정신장애자의 약 30%가 1실에 3개 이상의 침상이 있는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자 수용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입원시설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서어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연방사회부조법 제3a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원 이전 응급조치」의 원칙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4 중장애자 현황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연방주에는 약 88만5천명의 중장애자가 있었다. 이 중 약 13만명의 중장애자가 직업생활을 하고 있으며, 1996년에 연평균 2만4천명의 중장애자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18.9%의 실업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연방주의 중장애자 실업률은 15.9%를 기록하고 있다. 중장애자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매우 어려운 신연방주의 경제상황 때문이다. 1995년 연평균 중장애자의 취업률은 공공분야의 경우 3.7%이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2.4%이었다.

13. 외국인 지원체제의 확충 및 편입조치의 신연방주에로의 확대

카리타스(Caritas), 디아코니봉사단(Diakonisches Werk), 근로자후생복지단(Arbeiterwohlfahrt)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상담 네트워크가 신연방주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까지 연방노동사회부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12개의 상담소가 개설되었다. 신연방주에서는 구동독과의 고용계약 하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구동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노동자(주로 베트남인)들의 직업 및 사회적응을 위해 2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 숙박, 서어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와 사회교육적 내용으로 구성된 연수교육 및 직업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개선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지리교육과 주제별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연방노동사회부가 지원하는 독일어 교육과정도 신연방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VII. 생태학적 생활조건의 단일화

1. 통일이전의 환경상황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

신연방주는 하나의 거대한 환경오염 지역이었다. 4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무자비하게 다룬 반면, 이에 필요한 구조적응 조치는 소홀히 다루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양, 수질, 공기의 오염이 유발되었다.

개인들은 보통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개인은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이 그를 위해 결정될 뿐이었다. 이 점은 자연보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연보호의 문제는 계획적 경제체제 하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 단기적인 계획목표를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들은 현대화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적·생태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들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정화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변환경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원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가격 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원천적인 실책이었으며,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 분야에서는 가격 측면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상당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동독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 부족한 경제력, 경제적 후진성 등은 동독이 범세계적인 환경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는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부문에 있어 필요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서독 간의 환경기술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보

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생산기반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수 십년간 인프라 자본을 방치한 가운데 이를 계속 소모만 함으로써 환경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계속 양산함에 반해, 경제의 실패와 효율성의 저하로 환경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체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들은 통일조약상의 제반 규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공급·유발·협동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신·구연방주의 생태적 생활상태를 2000년 까지 단일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이 계속 경주될 것이다. 1990년 7월 1일자로 환경통합이 달성되자, 수 많은 환경오염 사례들에 대한 정화 작업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통합이 이루어진 후 2년 동안 신연방주 지역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에 집중되었다. 환경조건을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화폐·사회통합과 더불어 연방환경법이 구동독지역에 도입되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방지 차원 이외에도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생태학적 토양오염 및 환경보호 시설의 미비 등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었다.

1.1 위험방지: 인간과 환경의 보호

통일당시의 환경오염 문제는 오늘 내일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염방지 능력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자연적인 생활조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통일 후 환경정책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원의 즉각적인 제거와 또 다른 위험요인들에 대한 안전조치
- 수질, 토양, 자연, 풍광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오염요인 제거

통일 후 환경상황의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수 많은 환경보호 긴급조치를 시행하였다. Greifswald지역과 Rheinsberg지역에 있는 6기의 구소련식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과 1996년에 연방환경부의 감독 하에 가동중지와 부분철거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원자력법상의 허가조치가 발령되었다. 핵물질과 핵폐기물의 저장을 위해 현재 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 중간저장소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원자력법상의 허가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원자로의 가동중단과 철거 및 중간저장소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연방예산에서 부담한다.

1992년에 제안된 계획 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의 맥락에서 「Morsleben 방사능 폐기물 최종저장소(ERAM)」의 운영허가 만료일인 2000년 6월 30일 이후에도 동 저장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가동을 중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들이 1998년에 제출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계획 확정절차가 2003년 이전에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운영시한에 대한 법적 안전성과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허가를 2005년 까지 연장해 주도록 제안되었다.

연방은 통일조약에서 신연방주에서 채굴되는 방사능 함유 광석에 의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평가할 의무를 부여받았다(환경오염 조사 프로젝트: Projekt 「Altlastenkataster」). 1991년에 시작되어 1997년에 종결될 이 계획의 목적은 위험방지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보건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 관할 주 당국은 즉시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광산 채굴을 통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채굴 시설과 저장소 이외에 채광 잔류물의 극히 일부 만이 뚜렷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여진다.

응급조치의 중점은 식수 공급과 폐수 처리 및 안전저장에 두어졌다.

관련 지원조치와 고용창출 조치에 의한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위험요인

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지속적인 오염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계속 필요한 상태이다.

1.2 법적 근거

1.2.1 환경법의 도입

통일조약의 체결과 함께 신연방주에 도입된 연방환경법은 기존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는 물론, 새로운 시설에 의한 오염요인들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우라늄 광산에 대한 정화처리와 관련한 방사능 오염 방지 분야에서는 현재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의 특정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오염방지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계속 적용되고 있는 구동독의 제반 규정들을 연방전역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수리예산법안(Wasserhaushaltsgesetz)의 규정에 제시된 제반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현재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초인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포함된 주 상·하수법(Landeswassergesetz)이 주정부 관할하에 시행되고 있다. 하수유입에 대해 내려졌던 기존의 허가는 연방 전체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허가조건에 입각하여 재조정되었다. 제4차 하수도세법(Abwasserabgabengesetz) 개정법은 신연방주에만 적용되는 동일 하수유입자의 다양한 하수유입 설비에 대한 하수도세 청산규정을 두었으며, 투자(손실보전)를 통해 하수처리 시설이 구축·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의 추가적인 동기제공 요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물을 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연방주에서는 항공기소음방지법(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을 통해 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공항과 원자력 항공기가 이용

하게 될 균용비행장에 대한 항공기 소음 방지 체제가 구축되었다.

EU 환경법을 신연방주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 과정은 종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EU 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연방주에 대한 경과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이제 환경분야에 있어서 신연방주에 대한 어떠한 경과규정이나 특별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2.2 각종절차의 신속처리

1996년 하반기에 다음 법률에 대한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 인허가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GenBeschlG)
- 환경오염방지법상 인허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에 관한 법률
- 행정재판소규정과 다른 법률들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6.VwGO-ÄndG)

이러한 법률들은 신연방주를 포함한 연방전역에 있어 계획수립 절차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신속화 법률」들의 내용을 보면, 투자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 완화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 인허가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GenBeschlG)

행정절차법의 개정과 폐기물법, 폐기물재활용법, 원자력법, 수리예산법의 관련조항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이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제반 절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제한하고, 자문에 응할 의무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며, 신속한 절차 모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처리 기한을 새롭게 정하고 청문 절차 면제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계획확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단순한 사안에 대한 계획 인허가절차를 매우 단순화하는 한편, 계획수립 및 인허가절차에 있어서 비교형량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b) 「환경오염방지법」상의 허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한 법률

이 법은 물질적 환경기준을 하향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까다롭던 「환경오염방지법」상의 신청절차를 완화하고, 관련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더 부합되는 절차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c) 행정재판소규정과 다른 법률들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

이 법은 행정재판 절차의 단축과 신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2조가 특히 환경분야에 중요하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나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호혜적 행정작용에 대해 제3자가 법률구조 요청을 했을지라도, 법률구조 요청에 수반되는 유예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신연방주에만 적용되며 2002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하다.

수리예산법 제6차 개정법(WHG-Novelle)의 수리시설 허가절차 신속화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 갈탄광산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폐광을 호수로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것과 같이 그동안 유보되었던 수리시설 허가건에 대한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수리예산법 제23조와 제33조의 개정 에 따라 무해한 강수의 유입·활용이 용이해졌다. 또한 수리예산법 제6차 개정법은 폐수 처리기관으로 하여금 비교형량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허가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은 1996년 9월 19일 부터 효력이 발생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계획절차와 허가절차는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기책임 의식을 부여하는 절차규정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에 대한 10개항의 프로그램에 따라 신연방주에 서의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물질적 환경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인허가절차를 유연화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1.3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환경정화

신연방주의 생태적 환경정화 및 환경개발 전략의 중심적인 기조는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 이외에도 환경보호가 복합적인 산업입지 정책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의 생태적인 환경오염은 민간 및 공공투자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환경상황은 지역단체들의 개발계획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효율적이고 환경적합적인 경제적 산업입지 조건 창출의 기본조건이 된다.

1.3.1 생태적 환경정화와 개발의 지원

연방과 각 주는 처음부터 통일조약에서 환경과 자연보호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정부는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 많은 긴급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해당지역의 환경정화와 환경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였다. 신연방주 및 해당 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연구의 결과는 해당지역의 개발에 있어 개발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종의 모델로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의학 관련연구와 다른 특별연구들은 일종의 모델적 성격을 가지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환경정화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오염된 환경을 재건하는 것 말고도, 신연방주는 점점 자원 재활용 경제체제의 구축,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의 제거, 지속적인 도로 포장 등 구연방주와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1.3.2 갈탄 채광지역의 정화를 포함한 토양오염의 정화

신연방주의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토양오염 문제이다. 토양

오염은 단지 인간과 환경에게만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험부담 요인이 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백만DM의 비용이 필요하다.

1990년 환경조건법(Umweltrahmengesetz)상의 토지오염 정화 조항을 통해 토지와 토지 부대시설의 소유주나 사용자 및 구입자들에게 기존의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연방주 산업지역에 기존기업들이 계속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의 입주도 권장될 수 있으며, 초지에 공장을 마구 설립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책임면제 신청은 약 70,000건에 달한다.

신연방주의 지속적인 경제재건에 있어 투자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토양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과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는 1992년 12월에 체결된 행정협정을 통해 신탁청(Treuhandanstalt) 관할하의 기업들이 토양 오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 통상 60(연방):40(주정부)의 비용분담 비율로 1992년~2001년 동안 총 100억DM가 투입됨.
- 소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75(연방):25(주정부)의 분담비율이 적용된다. 총 규모 60억DM 이상에 달하는 23개의 대형 프로젝트(화학, 철강, 광산, 조선 분야)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
- 독일 최대의 종합적 환경 프로젝트인 「갈탄채광지역 정화 프로젝트」를 위해 1993년~1997년 동안 약 75억DM가 마련되었으며, 1996년 까지 이 중 약 59억DM가 지출되었음.

연방과 갈탄 생산 주정부간에는 「갈탄채광지역 정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1997년 이후 까지 연장할 것과 1998년~2002년 동안 단기적으로 필요한 재정규모를 협의·결정할 것이 양해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5년 1월 1일 행정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폭이 늘어났으며, 정화조치의 시행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1996년 1월 연방환경부의 주도하에 연방과 각 주정부는 개별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 연방의 재정분담 비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개별 협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절차 간소화가 뚜렷히 나타났다. 왜냐하면, 연방이 추가적인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추가적인 조치들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의 시행에 있어 각 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획팀이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에 창설되었다.

이미 1996년 말에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3개 대형 조선소 프로젝트(Wismar, Rostock, Stralsund)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방과 주정부 간에 합의된 정화계획에 입각하여 연방의 구속력있는 재정분담 비율이 정해졌다.

모든 신연방주에서의 대규모 토양오염 정화 프로젝트를 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의 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옳은 방법이다. 연방은 1997년에도 합의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다.

창연(蒼鉛)회사들의 가동중지와 정화를 위해 연방예산으로 부터 130억 DM가 10년~15년 동안에 사용되게 되며, 1996년 말 까지 약 46억DM가 지출되었다.

1.3.3 고용촉진조치에 의한 환경정화

고용창출조치(ABM)는 신연방주의 환경정화 부문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신탁청 소속기업들의 경우, 1991년과 1992년에 평균 6만명 이상의 ABM 노동자들이 환경보호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의 종사자와 합하면 이 숫자는 10만명을 넘어선다. 그 이후에도 고용창출조치(ABM)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추진되었다. 1996년 말 현재 약 18만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상당수가 환경보호 분야 종사자였다.

고용창출조치는 당초 2년 간의 한시적인 조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 지역의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 부터 「동독지역 고용촉진조치(고용촉진법 제249h조)」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계속 추진되었다. 또한 1997년 말 까지 우선적으로 환경, 사회봉사, 청소년 지원분야에서 실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관련조항이 마련되었으며, 1994년 부터 체육, 자율적 문화활동,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96년 말 현재 약 8만4천명이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의해 직업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 약 70%는 환경보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토양오염 정화조치는 고용촉진 조치와 성공적으로 접목되었다. 1996년 말 현재 갈탄채광지역의 정화 분야에서만 약 1만3천명의 노동자가 지원을 받았다. 갈탄채광지역의 정화 분야는 신연방주에서의 환경정화 조치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Cottbus 기술대학의 「갈탄채광지역의 정화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1995년에 4억8천3백만DM에 달하는 정화사업이 주로 중소기업에게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의 수탁을 통해 이 기업들은 약 3천5백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1997년 말 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던 생산적인 고용촉진 조치는 고용촉진법 개혁법안에 입각한 구조조정 촉진 전략에 따라 2002년 까지 5년간 연장되었다. 이로써 실업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재정수단이 고용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분야에 계속 지원될 수 있게 되었다.

1.3.4 현대적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혁신적인 환경보호는 생산구조의 현대화를 가져오며,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게다가 환경기술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독일기업들에게 주목받는 진출시장이다. 1994년 독일에서는 거의 1백만명의 노동자가 환경보호 분야에 종사하였는데, 이 중 27만명이 신연방주에서 근

무하였다. 최근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고용은 다른 분야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국가에 있어 환경기술 분야는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체제전환 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항상 환경정책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환경보호 제품의 교역에 있어 독일은 현재 미국 다음의 최대교역국이다. 환경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소위 「종말처리 기술(End-of-pipe Technik)」로 부터 제품 기획 및 생산단계에서 이미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 환경기술(integrierte Umwelttechnik)」으로의 기술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인 구조전환은 제반 환경정화 조치들과의 결합하에 현대적인 환경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환경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제구조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마련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불과 몇 년 안에 신연방주에 중요한 환경기술 전문분야가 나타났다. 물론, 신연방주의 환경보호 산업의 대외수출물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오염정화와 전환 과정에서 얻은 총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와 동구 및 아시아·남미에서의 오염정화 과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미래의 환경시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 연방정부와 작센주, 라이프찌히 경제과학연구소의 주도 하에 「국제환경기술이전본부(ITUT)」가 설립되었다. 이는 상기 지역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단체, 연구단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의 일부이다. 국제환경기술이전본부는 독일 환경기술의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망 구축을 통해 환경기술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동 본부는 상대국의 환경수준을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로 UN 환경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기술 접근과 환경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1.4 자연적인 생활공간의 보존

구동독의 자연보호 상황은 두 가지의 양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물, 공기,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자연경제와 자연자원에 대한 커다란 위험요소가 제기되어 있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신연방주에 아직도 희귀한 동·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천연지역과 이와 유사한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은 귀중한 자연유산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1990년 9월 현재 신연방주 지역에는 5개의 국립공원, 6개의 생태계 보존지구, 3개의 자연공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총 면적은 9,180km²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연보호구역 설정은 통일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10개의 대규모 보호지역에 대해 임시보호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UNESCO는 Rhön, Speerwald, 뤼겐 남동부 지역, 엘베강 중부지역, 베서탈/튀링거 발드, 쇼르프하이데-코린지역과 Oberlausitzer Heideschaft, Teichlandschaft지역의 40만7천ha 지역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보존지역은 또한 자연 휴양과 풍치 관광의 발전 측면에서도 월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립공원 프로그램의 제1단계 계획의 시행을 위해 1990년 한 해 동안 1,130만DM가 투입되었다. 국립공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신연방주의 90여개 자연보호 프로그램에 1,500만DM가 지원되었다. 또한, 동독지역 재건 공동대책안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310개의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5,760만DM를 지원하였다.

그 외에 1996년에 연방정부가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시범계획에 100만DM
- 실험 및 개발계획에 90만DM(1997년도 계획: 50만DM)

-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보호계획에 1,410만DM

기본법상의 권한분배 원칙에 따라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은 신연방주로 이관되었으며, 자연보호 관련 법령들이 발령되었다.

자연보호와 풍치보호를 위한 제반 요구조건과 조치들은 「풍치보호계획(Landschaftsplanung)」을 통해 제시된다. 풍치보호계획상의 제반 계획수단을 신연방주에 인식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3개의 시범적인 풍치보호계획을 지원하였다.

1.5 환경오염 정화의 효과

신연방주의 환경오염은 통일 후 뚜렷히 개선되었다. 수 많은 긴급조치를 통해 환경이 많이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토양과 물,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의 유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신연방주의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 현황》

1990년 이래 신연방주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粉塵(-77%)과 SO₂(-52%)인데, 이는 구동독지역에서의 갈탄 사용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粉塵의 감소는 粉塵 방출량 감소 기술의 조속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SO₂와 NO₂ 처리기술의 보완과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세기 말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금속 배출량의 감소현상은 중금속 처리시설의 보완과 함께 노후한 시설의 가동 중단에 기인한다. 1995년 까지 신연방주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방출 감소현황을 보면, 1985년 대비 비소 86%, 카드뮴 80%, 크롬 69%, 구리 88%, 니켈 82%, 수은 86%, 아연 83%

가 감소하였다.

《신연방주의 대기오염도 측정》

오랜 경험과 구연방주의 지원에 힘입어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대기오염도 측정망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거의 완료되었다. 이로써 독일 전역에 있어 실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신연방주 각 지역별 공기정화 현황》

<SO₂ 배출>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와 브란텐부르크주의 1994년 까지의 연평균 SO₂ 배출량은 구연방주 수준으로 낮추어진 반면,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의 연평균 배출량은 50 μ g/m³을 넘는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25~50 μ g/m³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의 배출량은 1993년 이래 대기오염기준치(TA-Luft)를 넘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폴란드, 체코와 같은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취해지는 제반 조치들을 통해 현재 높은 대기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SO₂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粉塵 배출>

粉塵 배출량에 있어 신연방주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말 100 μ g/m³을 기록했던 튀링겐주와 작센주의 연평균 粉塵 배출량은 1994년 50~75 μ g/m³으로 감소하였다. 구연방주는 25~50 μ g/m³을 기록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분진 배출량에 있어서 SO₂의 경우와 같은 감소추세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인접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반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 통》

신연방주에서의 환경에 대한 교통의 영향은 1990년 이래 구연방주의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다. 비록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구비율이 높아지고 도로교통량이 매우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1996년 동안 개선된 배기가스 처리기술로 자동차들이 재정비됨으로써 신연방주의 탄화수소(635kt에서 133kt로 감소)와 일산화탄소(1305kt에서 515kt로 감소)의 배출량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승용차의 NO₂ 배출량도 86kt에서 62kt로 감소하였다. 교통부문 전체에 있어서는 1990년~1996년 동안 NO₂ 배출량은 151kt로 증가하였다. 이는 도로화물 수송량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결국 이는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에 상공센터와 판매센터가 매우 광범위하게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연방주에 환경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공공여객 수송에 있어서 1990년 이래 매우 현대화된 도로교통망이 도심과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근거리 여객수송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연연료에 대한 세계 우대조치에 따라 유연연료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5년 말 현재 자동차 연료 중 무연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이르렀다. 1985년~1995년 동안 납 배출량은 약 5,000톤에서 400톤으로 감소하였다. 납 오염의 감소는 또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의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 1990년~1993년 동안 신연방주의 무연휘발유의 구성비율은 0%에서 90%로 높아졌다. 영향력 있는 유류공급 단체들이 1996년 가을 부터 유연휘발유를 시판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6년 말 부터는 유연휘발유의 판매가 중지될 것이다.

또한 1994년 9월 26일자 「제3차 연방 환경 오염물질 배출방지 규정(BImSchV)」에 따라 디젤 연료의 유황성분 비중이 최대 0.05%(500ppm)로 낮추어 지게되며, 이를 통해 1996년 10월 1일 부터 환경정화 분야에 있어 추가적인 진척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지 이러한 조치 만을 통해서 도로

교통에 있어 매년 방출량은 15% 감소하게 된다.

《하천보호》

「엘베강 보호 국제위원회(IKSE)」 실행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최근 몇년간 이 지역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틀에서 1991년~1995년 동안 126개의 대규모 정화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96개는 독일내에(투자액 약 40억DM), 30개는 체코공화국에 설치되었다. 게다가 수 백개의 소규모 정화시설이 설치됨으로써 하수오염의 뚜렷한 감소가 달성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과정에서 특별히 몇 개의 커다란 오염원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resden-Kaditz의 생물적 정화시설의 가동을 통해 Dresden 거주지역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엘베강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어졌다. 또한 Bitterfeld의 화학회사와 Wolfen시의 공동정화시설로 인해 엘베강의 유해물질 오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1996년에도 총 15개의 정화시설이 설치되었다. 게다가 Aussig와 Halle에서와 같이 중요한 정화시설들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엘베강 유입지역의 화학, 제약, 금속가공, 제지, 섬유산업의 하수오염도 1991년 이래 90% 까지 감축될 수 있었다. 또한 1990년 이래 Schnackenburg 측정지역에서는 암모니아와 인의 오염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염화물 오염도는 43%, 수은 오염도는 64% 감소하였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공장 가동 중지, 또한 정화시설의 신규설치와 현대화를 통해 엘베강 중에서도 특히 오염이 심한 지역의 수질은 3-4 단계로 개선되었다. 독일·체코간 국경지역으로 부터 북해에 이르는 엘베강은 전체적으로 수질등급 II-III(심하게 오염되어 있음)에 해당된다. 또한 엘베강의 지류인 Mulde강과 Schwarze Elster강은 수질등급 IV(과도하게 오염되어 있음)에서 수질등급 II-III으로 개선되었다. 1990년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엘베강은 이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엘베강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합동연구들은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

며, 인식의 공백을 메꾸고 하천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는 향후 5년 동안 약 3천만DM를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7개 연구사업에 대해 1천5백만DM가 지원되었다.

1996년에 구성된 「오데르강 보호 국제위원회」도 오데르강과 그 지류들의 오염물질과 부유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사한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동해(Ostsee) 유입지역의 수질 개선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지역 정화시설을 통해 생물학적 오염은 46%, 인 오염은 66% 감소될 수 있을 것이며, 농경지의 경우 질소오염은 49%, 인 오염은 33% 감소된다.

인 오염이 함유되지 않은 세제의 도입을 통해 하천수의 인 오염은 14,000t에서 약 30%가 감소한 8,900t으로 감소하게 된다.

2.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 협력

폴란드와 체코와의 협력은 환경문제 극복의 어려움과 독일과 이 두 나라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국경하천의 오염 방지, 해損과 자연재난의 방지, 국경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국경선을 따라 양측에 유리한 환경보호의 해결책이 제공된다. 따라서, 최근 국경을 초월하여 독일-폴란드, 독일-체코간의 하수처리 공동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일부는 종결되었다. 폴란드 지역의 Gubin과 Schwinemünde의 하수 정화시설과 체코 지역 엘베강 유역의 Raudnitz와 보헤미아 지역의 Kamnitz, Tetschen의 하수 정화시설은 환경공동시범계획으로서 독일정부로부터 약 4천5백만DM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상기 2개소의 폴란드 하수 정화시설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공동처리되고 있다. 그 외에 체코의 화학회사인

Spolchemie에 3백만DM가 추가 지원되게 되는데, 이는 엘베강의 염화물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1백만DM는 함부르크 환경청이 떠맡게 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보호에 있어 성공적인 협력의 기회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 독일-폴란드의 자연보호 지역인 「오데르강 하류지역(Unteres Odertal)」은 여타 공동 자연보호지역의 개발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공기정화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각 주와 폴란드, 체코는 국경을 넘나드는 공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의 Türchau 화력발전소와 체코의 북부Böhmen 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화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 특별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들은 1997년 말에 정화될 것이다. 독일은 공기오염 물질을 신속히 감소시키기 위해 Prunerov I, Tisova I 화력발전소와 Litvinov 석유화학단지의 T700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독일-체코간 국경지대의 공기오염도에서 SO₂가 99,000t/a, NO₂가 6,200t/a, 粉塵이 2,050t/a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이다.

Litvinov 석유화학단지의 T700 화력발전소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청정화 물질을 함께 연소시키는 시범계획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첨가연소 방법이 계속 이용될 전망이다.

연방환경부로 부터 120만DM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환경오염 원격측정시스템(Fernmeßsystem)」을 통해 독일-체코 국경지역의 환경조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촉진될 것이다. 1996년에 독일, 폴란드, 체코의 환경부들은 「삼각지대(Dreiländereck)」에서의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가을 부터 단일한 공기오염 측정망이 가동되었다. 현재 연방환경부는 국경을 초월하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들에 대해 체코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

독일-폴란드 및 독일-체코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의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쌍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경 인접지역에서의 환경협력에 국한하지 않고, 독일은 연방정부의 「전환자문 프로그램(TRANSFORM-Beratungsprogramm)」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서의 환경정화의 경험을 폴란드와 체코에 이전함으로써 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구국가들에게 독일의 환경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 주는 일은 앞으로 환경협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설치된 감독·조정위원회(독·폴 환경회의, 독·폴 국경지역 환경협력 위원회, 독·체 환경공동위원회)들은 국경지역에 위치한 신연방주들의 참여하에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협력의 기반은 1994년 4월 7일 폴란드와 맺은 「환경협정」과 1996년 10월 24일 체코와 맺은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제6장 교육, 학문, 연구 및 기술

I. 개 요

신연방주에 현대적인 교육, 학문, 연구 및 기술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체제전환 초기단계 부터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가 추구해 온 중점적인 정책과제였다. 연방정부, 주정부, 연구기관과 학술원을 비롯한 각종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체제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91년 부터 1995년 까지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는 신연방주의 교육, 학문 및 연구의 촉진을 위해 총 121억DM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32억6천만DM는 대학 연구기관이외의 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43억4천만DM는 직·간접적인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44억9천만DM는 특별지원조치(BAföG: 대학건축, 대학특별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1996년에는 연구기관 지원금으로 10억2천만DM,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12억DM, 그리고 특별지원금으로 9억DM가 사용되었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배정된 연방예산 범위 내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신연방주의 교육, 학문, 연구 및 기술에 대한 총지원금으로 약 30억DM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안정화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의 신연방주 수준을 구연방주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II. 교 육

1. 신연방주의 교육체제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 교육통합이 이루어진 후, 1991년 까지 교육체제의 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각 주의회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로써 교육분야에서의 자율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조약에 의거한 「함부르크 협약(Hamburger Abkommen)」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에는 상호 비교되는 기본적인 교육체제 및 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들과 주정부의 교육담당 장관들의 회의체인 「교육장관회의(KMK)」에서 합의된 각 주의 교육체제 쇄신을 위한 공동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교육목표에 대한 신연방주 교육법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원칙은 구연방주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교육법들은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가치관 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 재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과정과 졸업증서의 다양화
- 교육내용의 개편(민주적 가치와 행동양식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여러 분야에서의 유럽지향적인 일반교육)
- 교육행정의 분권화 및 교사, 학생, 학부모간 공동대화의 확대
- 민간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구비요건 마련
-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도입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40년 간의 분단으로 인해 신연방주의 상황이 구연방주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몇 년간의 시험과정을 거쳐, 1996/97 학기 부터 「삶의 형태-도덕-종교학(Lebensgestaltung-Ethik-Religionskunde)」 과목을 도입하였다. 1997년 9월 현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한 종교수업의 폐지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4개 주의 학교법들이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Abitur)을 포함한 8년 간의 김나지움(일반인문고등학교) 교육과정과 12학년 수료 후 일반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4년

을 포함하여 12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브란덴부르크주는 1997년 9월 현재 구연방주처럼 김나지움 교육과정을 9년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장관회의(KMK)는 1997년도 제1차 회의에서 일반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향후 수학기간에 대한 최종적인 원칙에 합의하였다. 연방주들은 내용적 기준에 따른 합의를 함으로써 수학기간이 12년이든 13년이든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의 질을 계속 보장해 가고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합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급영역 I 단계(Sekundärstufe I)와 김나지움 상급반에서의 일반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적어도 265주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학교제도의 개편에 있어 교사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률과 규정을 통해 신연방주들은 변경된 학교제도에 맞추어 교사를 양성하고, 서독의 학교교육 규정에 맞는 교사직을 마련해야 하였다. 교사양성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졌으며, 원칙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수업 이수를 전제로 한다.

또한 향후 교사양성 교육개혁을 위한 개별적인 사항들도 고려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교사양성 교육이 장차 맡게 될 담당과목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포츠담의 교사양성 모델).

1993년 5월 교육장관회의(KMK)는 「구동독의 교사양성 과정의 인정과 일반경력에의 포함 문제」에 관해 의결하였는데, 이는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봉급을 통상적인 교사양성 과정을 거쳐서 교사직을 획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교사자격시험이 새로운 법에 의해 시행된 경우에는 1992년 6월의 교육장관회의 의결사항이 상호 인정된다. 1994년 6월 23일 독일연방하원에서 의결된 「교사봉급 규정 개정법률」을 통해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하였다. 즉 주정부의 담당관청은 구동독시절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을 연방봉급규정 A와 주봉급규정 A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법률에 따라 급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학생수의 대량 감소로 인하여 잉여 교사인력이 크게 늘어났다.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교사에 대한 해고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별·학교별 근무시간 감축모델이 모색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근무지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2. 직업상담

정보 및 상담의 지속적인 제공은 기업으로 부터 제공되는 직업교육 일자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청소년과 부모들이 직업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잘 아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노동청에는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위한 광범위한 상담 및 정보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각 노동청은 직업정보센터(BIZ)를 통해 개인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개의 이동직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연방 전역에 걸친 직업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학교 방문상담, 학부모 강좌, 직업설명회, 개인별·그룹별 상담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10월~1996년 9월 동안 54만7천명이 넘는 신연방주 청소년들이 직업상담을 받았는데, 이 중 약 20만9천명은 직업교육 일자리 신청자들이었다.

또한 모든 김나지움 상급반 학생들은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이전학년에 「교육계획과 연구촉진을 위한 연방·주위원회(BLK)」와 「연방노동청(BA)」에 의해 매년 발간되는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간·직업간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노동청들은 「고용촉진법(AFG)」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과 취업준비 교육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업훈련보조금」이 지원된다. 장애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외의 기관에서 직업훈련의 전과정을 이수하거나 직업교육에 수반되는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고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직업교육

신연방주의 직업교육체제를 재구축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체제전환 초기 단계 부터 직업교육정책의 우선적인 과제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충분한 직업훈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계의 책임과 관심이 중요하다.

직업교육정책은 기업내 직업훈련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제반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직업훈련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분야에 대한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3.1 지원조치

3.1.1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직업훈련 체제에 대한 신연방주의 적응기간을 단축하고 직업훈련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일련의 직업훈련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1992년 말 시장진출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고용촉진법상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연방주의 직업훈련 일자리 부족분은 여러 단체들에 의해 보충되었다. 연방정부와 유럽사회기금(ESF),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1993년 10,000개, 1994년 14,000개, 1995년 14,500개의 직업훈련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6년 말까지 총 6억4천만DM를 지출하였다.

1996년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는 동독지역에서의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액션프로그램에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14,300개의 직업훈련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다. 연방정부는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소요예산 중 1억9천만DM를 분담하고 있다. 기업 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련단체 주도의 지원조치와는 달리, 1996년의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기업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이루어졌다. 1997년 초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주도한 직업훈련 지원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총 38,000명이다.

1997년에도 직업훈련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정부와 각 주는 1997년 상반기에 15,000개의 추가적인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0년 까지 약 2억 DM를 지원하게 된다.

동시에 신연방주에서도 경제계가 자기책임하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1.2 직업훈련 대상직업의 구조

직업훈련법과 수공업규정의 발효 이후 승인된 직업훈련 대상직업은 이원적 직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997년 8월 1일 장난감 제조업을 마지막으로 몇 개의 구동독 직업들이 독일 전체지역에서 유효한 직업훈련 대상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의 직업훈련 기회가 보존될 수 있으며 이같은 자격에 대한 수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직업훈련 대상직업은 지역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술수공업의 일종인 입으로 불어서 유리기구를 만드는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직업훈련 규정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도자기 및 악기 제조공과 같이 구동독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직업을 수정하고

재구성한 것도 있다.

3.1.3 여 성

구동독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기술직에 종사했었으나, 통일 변혁기를 거치면서 전통적 여성직종에서의 여성취업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최근 다시 성공적으로 반전되고 있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는 「라이프찌히 여성 기술 및 상담센터」의 설립과 같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와 모델계획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분야에서의 여성 지원을 위해 연방교육과학연구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중에서 「기술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 캠페인(연방교육과학연구부, 연방노동청, 텔레콤 공동추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96년 말 동 캠페인 조정기구의 업무재편과 향후 중점추진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장래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여성들이 기술지향적인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3.1.4 우수자 장학제도

1991년에 마련된 동 지원프로그램은 1991년~1994년 동안의 시험단계를 무난히 마쳤다. 우수한 젊은 취업자들은 신청에 따라 「직업보수교육비 보조금」을 3년 이상 매년 3,000DM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직업훈련 담당부서(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원된다.

수혜자들은 젊은 취업자로서 「직업훈련법」이나 「수공업규정」에 의한 직업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이다. 신연방주에서의 전문기술자 직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구동독 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이다.

1996년 연방 전역에 걸쳐 13,000명의 장학생에 대해 2,600만DM가 지원되었으며, 그 중 220만DM가 1,124명의 신연방주 장학생들에게 지원되었다.

3.1.5 장애자 지원(Benachteiligtenförderung)

서독지역에서 특히 고용촉진법 제40c조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장애자 지원체제가 신연방주에도 구축되어야 했다. 연방정부와 연방노동청 그리고 각 주정부들은 1990년 부터 장애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물적 그리고 인적 제반조건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청소년들은 「직업훈련지원금」을 받아 공인된 직업훈련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연방전역에 걸쳐 직업훈련 담당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가 신연방주 장애자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 담당자와 지방교육정책 결정권자 및 여론지도층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제공은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구축과 사회·교육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조언제공도 병행되고 있다.

3.1.6 기업공동 직업훈련기관

신연방주에 광범위한 기업공동 직업훈련기관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직업훈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기적으로는 서독지역 수준과 맞먹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과 1992년의 지원 초기단계에서는 수공업, 건설업, 소기업 분야에 대해 임시작업장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기업공동의 직업훈련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1992년에는 금속 및 전기직 직업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산업공장에 최신 기계·도구, 조종기술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약 2,900만DM가 투입되었다. 기업공동 직업훈련 지원의 2단계로 1993년 부터 장기훈련장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임시작업장을 점차적으로 대체하면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기업공동의 직업훈련을 충분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재원으로 약 5억4천만DM 규모의 150여개 기업공동 직업훈련장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약 7,900개의 임시 작업실이 설치되었으며, 장기훈련기관에 8,000개 이상의 작업실과 약 4,400개의 이론교육실, 그리고 약 1,100여개의 기숙사 시설이 설치되었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기업공동 직업훈련 지원 이외에, 연방경제부는 직업보수교육에 중점을 둔 수공업 분야에서의 기업공동 직업훈련장을 지원하고 있다.

3.2 구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증의 인정

구동독시절 취득한 대학과 전문학교, 직업군 장교 교육과정 졸업증의 동등권을 보장하고 보육사 자격을 인정하며, 교사양성 과정을 전통적인 교사양성 과정으로 인정·귀속시키는 것은 통일조약 제37조제1항~제3항과 이에 근거한 1991년~1994년 동안의 교육장관회의(KMK) 의결사항에 의해 대부분 완결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구동독 국영기업 마이스터들을 수공업 명부(Handwerksrolle)에 등록하는 것과 구동독 국영기업 마이스터 수료증을 공업마이스터 수료증과 동등하게 인정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부터 1999년 까지 사회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조정교육(Anpassungsqualifizierung)」이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은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들이 지정한 교육학 관련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육에 최초로 참가했던 사람들은 1997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사업 전문학교 수료증」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1994년 2월 부터 신연방주에서는 구동독에서 취득한 상업 및 경영 전문학교 수료증에 대한 「자격조정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은 1993년 5월 전문학교 수료증의 동등권 보장을 위해 교육장관회의(KMK)가 결정한 보충교육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 주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사설 직업보수 교육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국가시험 합격에 의해 종료되며, 합격자들은 「국가공인 경영인」이 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구동독의 상업 및 경영 전문학교 수료증 인정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합헌적으로 단일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동독 전문학교 졸업자들에게는 1991년 1월 교육장관회의(KMK) 결의안에 따라 방송교육(Fernstudienkurs)을 통한 보충교육을 통해 전문대학졸업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3.3 직업보수교육의 촉진

직업보수교육과 직업전환교육은 고용시장의 안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그러므로 연방노동청은 직업보수교육과 직업전환교육의 촉진을 위해 1995년에 73억DM를 1996년에는 72억DM를 사용하였다. 1997년에도 다시 59억DM가 연방노동청 예산에 책정되었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개인 자질과 능력의 적응과정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있다.

1991년 구연방교육학술부(BMBW)가 입안하여 1992년 부터 시행한 「자질과 개인개발 관리(Qualifications-Entwicklungs-Management)」 프로젝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개인자질의 적응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직장 및 산업체 보수교육과 보수교육 연구, 보수교육 담당자들의 자질향상 및 표본추출된 그룹의 자질향상 실험 및 개발을 위한 실험위주의 학문적 인프라의 구축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조치들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연방교육과학연구부(BMBF)와 유럽사회기금(ESF)은 1991년 부터 1995년 까지 총 약 4천만DM를 지원하였다.

상기 프로젝트의 시행 결과와 실제적인 경험에 따르면, 대대적인 투자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 산업체 중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력 및 조직개발

분야에서 아직도 계속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1995년 「신연방주 산업체의 인력 및 조직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과 기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미래지향적인 인력 및 조직개발 모델을 개발·시험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1995년~1998년 동안 약 1천만DM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 중 350만DM는 연방교육과학연구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유럽사회기금과 동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분담하게 된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능력개발을 통한 산업입지 확보 및 산업체 보수교육의 구조전환」의 일환으로 1996년 부터 신연방주 산업체를 위해 새롭고도 복합적인 연수체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의 자질향상 수요가 산업체별로 점점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체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조직 개발 및 기술투입이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1996년에 약 3십만DM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1997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유럽사회기금에 의해 조달된다. 이 모델에 참여한 기업들도 약 3십만DM를 제공하였다.

직업보수교육은 직업과 직장생활에만 치중되어서는 안된다. 신연방주의 실업은 체제전환이라는 특수상황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실업자의 자질과 잠재력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각종 단체와 민간운동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점들이 경시되어 왔었다. 따라서,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주민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직장생활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생활에서의 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7개 지역에서 사회적 인프라망의 시범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6/97년에 유럽사회기금에 110만DM와 연방교육과학연구부에 70만DM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말 부터 Chemnitz-Zwickau공대에 인력개발 분야 석사과정의 개설되었으며, 1995년 부터 성공적으로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동 과정은 사회지도층의 전문지식과 방법론 및 사회적·인격적 자질을 고양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 과정은 1996년 11월에 신설된 Chemnitz-Zwickau공대의 「혁신적 경영 및 인력개발연구센터(ifip)」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4.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새로운 개인적,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 융화시키며 체제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연방주의 평생교육체제는 새롭게 재편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인 항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연방주의 평생교육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신·구연방주 사이에 이 분야에서의 대등한 교류가 오래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신연방주가 이 분야의 기구와 단체들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신연방주에는 다른 주에 비견되는 평생교육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 작센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연방주에 이러한 교육적 변화의 법적 근거로서 「평생교육법」이 공포된 것을 들 수 있다.

4.1 평생교육 상담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시범계획 지원에 힘입어 신연방주에는 지자체별 평생교육 상담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정착기간을 거쳐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중간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상담소들은 서비스의 폭을 교육에 대한 지역적 수요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예로 관공서나 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상담, 프로젝트의 발의, 시행, 주관 및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평생교육 상담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담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 보다 다양화된 교육과제, 다른 지역적 과제들과 함께 강화된 교육 및 평생교육 상담망의 구축에서 볼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80% 내지 90%는 직업교육 수료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새로운 자격증의 취득이 아니라 자격의 보존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2 평생교육 참가

구연방주와 비교해 볼 때 신연방주의 직업보수교육 참여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 평생교육에의 참여도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직업보수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은 평균 교육 소요기간으로도 알 수 있는 바, 각 교육과정별 소요기간은 176시간으로 구연방주 수준의 2배를 넘는다.

구연방주와 비교해 볼 때, 신연방주에서의 평생교육은 산업체의 직업교육 기관이나 직업보수교육기관과 산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러한 교육담당기관의 점유율은 구연방주의 경우 26%인데 비해, 신연방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37%이다. 상승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민교육기관(Volkshochschule)의 비율은 여전히 구연방주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 담당기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회, 각종 회의소, 노조들과 같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구연방주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4.3 시범계획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시범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지역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다원적 구조의 확충

- 특별그룹(평생교육담당자, 장기실직자, 조기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제공
- 평생교육의 특별한 주제(정치교육, 현대사, 자연보호 등)에 대한 자료 지원
-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 및 평생교육 실시
- 평생교육 부문에서의 현대적 매체의 투입 지원

4.4 일반평생교육 및 문화평생교육

체제전환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신연방주에서는 여전히 문화분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태이며, 그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1995년에 성공적으로 종결된 「문화분야 자질향상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새로운 문화분야 책임자들과 문화관련 기관들의 효율적인 기획 및 업무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법적 문제들에 대해 단기간내에 직무와 관련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문화행정 체제가 신속하게 구축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동안 문화교육 분야에서의 제반 조건들과 요구사항, 문제점들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 연방 전역에 걸친 문화운동, 각종 경연대회, 문화단체 활동에 신연방주가 균등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5. 연방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의 촉진

신연방주에도 1991년 1월 1일 부터 특별 경과규정을 통해 「연방교육지원법(BAföG)」이 적용되었다. 1991년 교육지원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216개, 학생회에 15개가 설치되어, 평균 약 16만4천명의 초중고학생과 대학생들을 지원하였다.

1992년 가을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서독지역과 같아지고 난 후, 1997년 7월 1일 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연계된 특별 산정기간이 사라졌다. 서로 상이한 주거비용과 높은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연방교육지원법상의 「곤란한 경우」에 대한 추가급부 규정에 의해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지원에 관한 한 신·구연방주간의 실제적인 격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연방교육지원법은 신연방주에서 취업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데 계속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의 교육지원을 위해 1997년에 책정된 예산은 2억8천만DM이다.

6. 신연방주의 EU 교육정책에로의 편입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신연방주의 교육기관들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EU의 교육정책적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럽의 교육정책적 공동사업에 신연방주를 편입시키기 위한 특별조치를 위해 EU는 1991년 부터 1993년 까지 총 1,000만ECU를 지원하였다. 유럽의 교육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1995년 부터 사업내용과 교육대상을 추가보완하여 LEONARDO와 SOKRATES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계속되었다.

EU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LEONARDO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예산규모는 6억7천만ECU이며, 1999년 말에 종결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직업교육과 직업보수교육은 물론, 超국경적인 수년간의 산·학협동 시범계획, 직업교육생·젊은 취업자·학생·직업교육담당자의 장·단기 해외체류, 대학교육 및 「대학 후 교육」을 통하여 EU 회원국들의 직업교육시스템과 직업교육기관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995년에 약 1억4천만ECU이었으며, 1996년에는 약 1억5천

만ECU이었다.

독일정부는 프로그램 실시와 예산편성시 신연방주의 프로젝트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주관하에 1995/96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162개의 시범계획과 연구사업 중에서 37개가 신연방주 기관의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각각 최대 400,000DM에 이르는 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1천만DM에 달한다.

또한 신연방주 기관들은 최소한 위와 같은 수의 외국인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7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차세대 시범프로젝트도 포함된다.

1995/96년 직업교육생과 젊은 취업자, 직업교육담당자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전체 신청자 중 1/4이 신연방주지역의 신청자였다. 이와 관련한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금은 약 8백만DM이었다. 1996/97 회계연도에는 신청자가 약 28% 증가하였다.

여기에 젊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기업실습을 위해 총 약 660만 DM의 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여기에는 신연방주도 19개의 프로그램(12.75%)에 참여하고 있다.

실습학생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에 있어서 33건의 허가 중 9건이 신연방주로 부터의 신청이다. 직업교육 차원의 교환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특정집단과 특정소득집단에 대해 높은 지원율이 정해졌는데, 이는 신연방주 출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1995년 EU 의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8억5천만ECU(1995년-1999년 간) 규모의 SOKRATES 프로그램은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이행된다.

1995/96 회계연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억7천만ECU가 책정되었다. 1996년에 약 14,000명의 독일 대학생과 4,000명의 직업교육생, 350개의 학교

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학교간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ERASMUS 프로그램(SOKRATES 프로그램 중 대학분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7/98년 부터 소위 「대학협정」이라는 것이 도입되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다자간 국제협력망이 대학 쌍방간 협력체제로 대체되게 된다.

대학협력 프로그램(HKP)의 일환으로 1995/96년에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45개 대학들이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대학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승인 내용을 보면 신연방주의 몇몇 대학들은 독일측 참여 대학 중에서도 최상위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라이프찌히대학과 드레스덴 공대, 베를린 훔볼트대학이다.

신연방주에서는 1995/96년도 ERASMUS 교환 프로그램에 3,106명의 장학생이 참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전년도(2,081명) 보다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독일 전체의 ERASMUS 장학생 중 신연방주의 장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높아졌는데, 이는 독일 전체 대학생 중 신연방주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1994년~1999년 동안의 지원기간 중 신연방주에 대해 총 136억4천만ECU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 중 68억2천만ECU는 유럽지역개발기금이, 40억9천만ECU는 유럽사회기금이 지원하게 된다.

EU의 제5 중점분야인 「인력자원, 직업교육과 직업보수교육, 고용촉진」에 따라 신연방주는 5억8,410만ECU의 유럽지역개발기금과 30억6천만ECU의 유럽사회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Ⅲ. 대학과 학문

1. 대학개혁

신연방주 대학들의 구조적, 내용적, 인력적 개혁은 통일 초기단계 부터 연방정부의 특별한 참여하에 지원되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16개의 종합대학, 34개 지역에 25개의 일반전문대학, 12개의 예술·음악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지역별, 분야별, 기구별로 차별화된 대학교육 공급체계가 존재한다. 여기에 라이프찌히 상업대학, 드레스덴과 모리츠부르크의 교회전문대학과 같은 비국립대학과 7개의 행정전문대학이 추가된다. 구동독 시절 대학들이 베를린과 작센주에 집중되었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라는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권고사항은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약 196,000명의 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는 1989년 이전보다 1/3 이상이 더 많은 수치이다. 비록 신연방주에서는 매년 서독지역(32%) 보다 훨씬 적은 22%의 젊은이들이 대학입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신입생 수는 1989년 32,400명에서 1995년에 39,600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신입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1992년 48%에서 1995년에 58%로 늘어났는데,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약 48%에 달한다.

1.1 대학개혁 프로그램

1991년 연방과 신연방주들이 공동으로 시행한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HEP)」은 신연방주의 대학과 연구 전반에 걸친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17억6천만DM의 재원이 주로 대학인력의 개혁과 학문적 잠재력의 보전, 대학과 대학외 연구기관 건물의 긴급정비 조치를 위해 조성되었다. 1992년 7월 현재 그 규모는 거의 40%가 상승한 24억3천만DM가 되었으며(연방재원 75%, 신연방주 재원 25%), 1996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신연방주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설학과 교수 충원 등의 인력대책을 통해 종합대학과 이와 동격인 일반대학의 법학·경제학·인문과학·문화과학·사회과학 교육체제의 구축을 지원
- 건물 건축·정비 및 시설투자를 통해 신연방주 대학의 기능을 유지하고, 연구와 교육분야에 있어 서독지역 대학에 비견되는 제반여건 조성
- 특별투자프로그램(ISP)을 통해 대학외 연구기관들의 기구·설비와 건물축 상대를 개선
- 보충강좌의 개설을 통해 고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과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생들이 독일전역에서 유효한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학술교류와 학술회의 참석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학과 대학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의 국제학술교류 참여를 지원

특히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 공학 분야의 신설대학 총장들과 신설학과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개혁 프로그램 차원에서 조성되었던 재원은 신연방주에 전문대학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지원수단이 되었다.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5년에 종합대학과 일반대학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407명의 설립교수 가운데 164명이 전문대학 구축과정을 지원하였다. 1991년~1996년 동안 신연방주 전문대학 구축에 사용된 재원은 총 1억6천만DM에 달한다.

전문대학 구축에 있어서 신연방주가 중점을 둔 것은 전문대학의 임무인 연구와 개발, 독일연구협회(DFG)의 지원금 유치,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공조적인 박사학위 취득과정 마련과 구동독 아카데미 학자들도 참가하는 「An-Instituten」의 설립이었다.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개혁 프로그램과 대학재건 공동과제를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1996년 신연방주의 전문대학에 41,300명의 교육정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1993년 약 32,000명).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방송통신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연방주에 우선적으로 방송통신교육본부가 지원·구축되었으며,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추가졸업장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보충 통신강좌(Brückenkurse)」가 개설되었다. 이를 위해 1991년~1996년 동안에 사용된 재원은 거의 5천만DM에 달했다.

1993년 「교육계획과 연구촉진을 위한 연방·주위원회(BLK)」에서 중점 지원과제가 설정되고 「방송통신전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교육은 독일전체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금의 측면에서 연방과 각 주의 공동교육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지원조치 초기에서 부터 1996년 말 까지 BLK에 의해 23개의 방송통신교육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는데, 그 중 13개 프로젝트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관한 것이다.

1997년 작센-안할트주에도 방송통신교육본부가 설립됨에 따라 연방재정의 지원 하에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걸쳐 효율적인 지역적, 광역적 상담·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는데, 이를 통해 연방전역에 걸쳐 신연방주 학생들을 위한 방송통신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1992년~1994년 동안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추가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충통신강좌(Brückenkurse)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베를린에 전문대학 방송통신교육협회(Fachhochschulfernstudienverbund)가 생겨났다. 이로써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송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신연방주에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Hagen 방송통신학교에 등록된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학생 수는 1995/96년 겨울학기 이후로 거의 변함이 없다. 1995/96년 겨울학기의 총학생수는 3,264명이었는데, 이는 1990/91년 겨울학기 보다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개혁 프로그램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학자 통합

프로그램(WIP)」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2년으로 계획되었다가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6년 말에 종결되었다. 연방이 소요재원의 80%가 넘는 5억DM를 지원하였다. 1992년에는 약 2,000명에 달하는 구동독 아카데미 소속 학자들이 지원을 받은 반면, 프로그램 종료시에 동 지원을 받은 사람은 1,285명에 불과하였다. 이 중 학자는 893명이었으며, 나머지 392명은 연구보조인력이었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는 동 지원대책 시행초기에 각 주의 학자들을 그들의 전공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의 연구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주 대학들이 이러한 합의를 지켜나갈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었다.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연구원들의 통합문제는 대학인력의 감축문제 등 수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연방정부는 1996년 9월 「대학특별프로그램 III(HSP III)」을 의결·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1996년 1월 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1.2 대학특별프로그램 III(HSP III)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구조개혁의 강화, 교수와 연구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연구와 교수부문에서의 여성들의 비중 향상 등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의 실행을 위해 연방과 각 주들은 2000년 말까지 총 36억DM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신연방주는 이 중 2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연방은 20억DM가 넘는 재정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개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었다.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에는 신연방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학자들과 그 후진학자에 대

한 지원은 물론, 전문대학의 구축 및 확충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대학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재원은 신설학과의 인력 확보와 같은 교육여건의 구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의 차원에서 총 3,310만DM가 신연방주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은 신연방주의 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해 1억 DM(1997년~2000년)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자들과 연구그룹들은 그들의 연구활동, 특히 경제와 연계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제3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학자 통합 프로그램(WIP)」 추진기간 중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학자들은 1996년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이 지향하는 신연방주의 혁신적 연구 지원은 또 다른 추가적인 특별대책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1997년~2000년 동안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 촉진금으로 총 5천만DM(매년 1,250만DM)가 마련되었다. 이 연방재원과 5천만DM에 달하는 각 주의 장려금, 그리고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의 예산을 합하여 총 2억DM가 신연방주의 혁신적 연구와 연방교육과학연구부 전문 프로그램의 각종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2. 대학내 연구의 촉진

초기에 정체되어 있던 신연방주 대학들의 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1992년 이후 부터는 점차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1992년~1996년 동안 연방교육과학연구부가 신연방주 대학들의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지원한 총 7억5천만 DM에 대한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다.

일반연구 분야에서도 독일연구협회(DFG)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하였다. 1995년에 1,244건의 신연방주 지역으로 부터

의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며(전체 승인된 신청서의 13.7%), 1996년에는 1,334건으로 증가하였다(전체 승인된 신청서의 15.1%). 또한 독일연구협회의 지원금도 1995년 1억4,370만DM에서 1996년 1억7,710만DM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50%는 연방정부로 부터 조달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신연방주의 대학 및 대학외 연구기관들이 독일연구협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1 특별연구 분야

신연방주 대학에 대한 연방차원의 다양한 지원조치를 통하여 학자들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별연구 분야를 설정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로써 독일연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신연방주 대학의 특별연구 분야는 1994년 7개에서 1997년 20개로 증가하였다. 중점이 되는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1994년~1997년 동안 특별연구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은 20억DM이며, 이 중 75%를 연방이 부담하였다.

2.2 석사과정

양질의 후진학자 양성을 위한 중요한 개혁수단인 석사과정 신설은 이제 초기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 차원에서 실험적인 준비과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였다. 독일연구협회에 의해 승인된 신연방주의 석사과정은 1994년 19개에서 1996년 39개로 늘어났다. 현재 또 다른 과정들도 준비되고 있다.

1994년~1996년 동안 석사과정에 대해 2억6,700만DM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연방이 65%, 각 주가 35%를 부담하였다.

신연방주 석사과정 중에서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학과는 수학, 자연과학

과 생물학, 공학이다. 1996년 말 현재 석사과정 수료자 460명 중 약 3/4이 신연방주 출신이며, 1/3은 여성이다.

2.3 혁신과정(Innovationskollegs)

특히 「혁신과정」은 신연방주 대학에 대한 새로운 지원모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가 이를 입안하였으며, 독일연구협회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우수한 학자그룹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대학의 학문적 프로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대학과 기타 연구기관, 경제계 간의 협력 강화와 국제연구기구에의 참여이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신연방주의 11개 대학에 21개의 혁신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1994년~2000년 동안 약 1억4,500만DM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여명이 혁신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약 400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 내에 혁신적 연구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동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체재원으로 혁신과정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작센-안할트주와 공동으로 할레-비텐베르크에 있는 마틴-루터대학 내에 비텐베르크 대학연구소가 개설되었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와 작센-안할트주는 동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5년 동안에 매년 소요되는 150만DM을 35:6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대학건축

신연방주 대학건물에 대한 재정비와 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방교육과학연구부는 대학재건 공동과제의 틀 속에서 1991년~1996년 동안 약 21억DM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긴급한 건축 및 정비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었으며, 각 대학은 대형기기, 컴퓨터 및 기본도서들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대학재건 공동과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공동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수년간 예산편성에 따라 적정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기숙사의 건축은 각 주정부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기본법 제104a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요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신연방주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학생기숙사 정비 및 신축을 위한 5개년 계획(1993년~1997년)」에 따라 2억5천만DM를 투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동독채건 투자촉진법」에 따라 1995년 부터 신연방주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10년 동안 매년 66억DM)도 학생기숙사의 현대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숙사 초과수용 현상이 없어져 기숙사 수용정원과 기숙사 수용율이 낮아졌다.

4. 개혁과정의 결과

6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체제전환과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신연방주에는 구조와 질적인 면에서 서독지역 수준과 거의 동등한 학문체제와 대학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신연방주의 연간 대학신입생 비율은 여전히 서독지역 보다 낮다. 따라서, 신연방주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독지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종합대학의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교수 1인당 담당학생수가 8명으로서, 16명인 서독지역 보다 학생 관리상태가 더 양호하다.
- 신연방주에서는 전문대학들이 짧은 기간내에 활발하게 확충되었으며, 생소한 대학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원할하게 수용되었다. 동시에 신연방주 전문대학들의 대다수가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설립되어 있어 해당지역 혁신기업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연방주 공학도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1993년에 여성공학도의 비율이 18%를 기록하여 서독지역(14.2%)을 훨씬 능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1995년에 이 비율은 20%를 넘어, 서독지역의 16%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IV. 연구와 기술

1. 공공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의 건설화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되는 신연방주의 대학외 연구기관들의 구조전환과 현대화는 연구와 기술분야 통합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1992년 학술원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 학술아카데미의 연구기관들은 13,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약 140개의 대학외 연구기관들로 재편되었다. 새로운 연구기관들은 독일의 연방주의적이며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연구체제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의 대부분은 기본법 제91b조에 의하여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지원을 받는다. 연방교육과학연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현재 84개의 대학외 연구기관들이 지원받고 있으며, 그 곳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9,000명을 넘고 있다.

- Helmholtz협회의 11개 기관(3개의 연구소와 8개의 분소)
- 청색목록(Blau Liste)학술협회의 29개 기관(24개 연구소와 5개의 분소)
- 프라우엔호퍼협회의 19개 기관(9개의 연구소와 10개의 분소)
- 막스플랑크협회의 24개 기관(18개 연구소, 6개 분소 및 연구그룹)
- 2개의 연방-베를린주 공동투자 기관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지원을 받는 대학외 연구기관 이외에도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는 전문 연구기관들과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연구능력을 보완해주는 주정부 연구기관들이 존재한다.

신연방주 막스플랑크협회의 확충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은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 일련의 연구소 설립계획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재건 프로그램들은 21세기 초에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막스플랑크협회는 지출과 연구능력 면에서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막스플랑크협회의 자매단체에 의해 관리되던 7개의 인문과학센터 중 6개는 1996년 1월 1일 부터 주정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대학외 연구기관인 이러한 인문과학센터들은 인근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독일연구협회(DFG)로 부터 지원받는다. 그 중 하나는 이미 1993년 베를린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학술사연구소에 흡수되었다.

제도적으로 지원된 신연방주 최대의 연구기관은 Greifswald에 소재한 막스플랑크 원자물리학연구소(본부: Garching/München)인데, 동 연구소는 대형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90%의 재원을 연방정부로 부터 지원받는다. 동 연구소는 1997년 6월 기공식과 함께 핵융합연구의 큰 틀인 「Wendelstein 7-X(WZ 7-X)」의 구축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2005년에 마감될 예정이다. 이 기간의 총 투자액은 약 4억8천만DM에 달하게 되며, 이 가운데 약 1/3은 유럽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URATOM이 지원하게 된다(W7-X-실험 만을 위해서는 45%). 나머지 2/3의 재원은 연방과 메클렌부르크

크-보어포르멘주가 9:1의 비율로 조달하게 된다. 이 시설이 작동되면 약 350명 내지 400명의 학자, 기술자와 경영인력이 여기에 종사하게 된다. 동시에 Greifswald 대학의 원자물리학 분야가 확장되게 되며, 원자물리학 부설연구소의 업무와 연계되게 된다.

1991/92년 막스플랑크협회에 의해 신연방주의 7개 종합대학내에 5년 기한으로 설치되었던 자연과학 분야의 27개 연구그룹들의 대다수는 1997년부터 소속 대학 편제로 편입되었다.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출자한 막스플랑크협회의 재원 중에서 이 연구그룹들을 위해 1997년 까지 2억4,400만DM가 지원되었다. 막스플랑크협회는 이관된 그룹들에 대해 3년 기한으로 총 3천만DM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1991년에 시작되어 이제는 대부분 완료된 막스플랑크협회의 이러한 긴급 프로그램들은 신연방주의 기초연구 능력 확보에 성공적인 기여를 하였다.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많은 생명과학 연구기관들에 대한 장려기금이 1996년 말 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통일 당시 학술원은 이러한 연구기관들의 재정조달은 제3의 재원으로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이것이 초기단계에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려기금이 생겨난 것이었다. 학술원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서 독일연구협회(DFG)는 이러한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연구프로그램 중 핵심분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의 경제운용계획 협의에서도 가능한 한 학술·인프라 분야의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제3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기본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요통계들은 인력이나 경비 면에서 신연방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지원 수준이 서독지역과 비슷하거나, 부분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체제전환과 연구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진 후(1990년~1995년 동안 약 40억DM), 신연방주에 대한 제도적 지원수준은 10억DM로 높게 조정되었다.

공공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는 연구영역을 유연화하는 한편, 광범위한 연

합모델을 통해 그들의 연구능력을 혁신적 연구정책이라는 커다란 틀에 편입시키려 하는 노력에 있어 각 연구기관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프로젝트 지원

대학과 대학외 연구기관과 경제계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에 대대적인 기여를 한 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프로젝트 지원 전문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수 년 동안 비슷한 수준인 총 10억DM 수준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들은 서독지역보다 10%가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지원은 혁신과 미래지향적 고용 창출을 선도하게 될 정보통신공학, 환경공학, 전자광학, 생물공학 분야에서의 상호연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연방교육과학연구부 프로젝트 지원 전문프로그램은 산·학협동과 교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독일 산업 총생산량의 6%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신연방주의 심각한 비산업화 현상이 연구·개발분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중요하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1990년 부터 약 40억DM를 동독지역 산업연구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로써 신연방주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능력의 구조전환과 기업 혁신력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5.II.6 참조).

중점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신연방주의 투자활동은 최근 서독지역과는 반대로 훨씬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발전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산업은 최소한 개별적 연구·개발분야에서 견고화되었으며,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신연방주의 산업은 보다 뚜렷한 기술지향성을 추구해 가고 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품의 수를 「연구·개발 상품」의 척도라고 한다면, 신연방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특허청(Deutsches Patentamt)에 등록된 독일 특허품 중에서 신연방

주지역 출신 발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4.5%에서 1995년 7%로 높아졌다.

연구·개발에 대한 신연방주의 노력은 우선 중소기업에 집중되었으며, 비교적 높은 집중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향후 몇 년동안 신연방주의 산업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구조를 개선하고 집중화할 것이다.

3. 체제전환 과정의 성과

체제전환과 새로운 형태로의 변모, 많은 재원의 조달을 통해 신연방주의 대학 및 대학외 연구분야에 효율적인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서독지역보다 더 현대화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공공재원이나 산업계를 통해 광범위한 제3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업계로부터 조달되는 제3의 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다가(제3의 재원 확보분의 약 11%), 제3의 재원의 약 2/3가 서독지역 기업들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신연방주 산업의 취약성(산업밀도가 서독지역의 60%)과 연구·개발에 대한 낮은 자생력을 보여준다.

자생적 혁신능력을 갖춘 효율적이고 포용력있는 기업이 연구사업의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에만 비로소 신연방주의 대학 및 대학외 연구는 신연방주 산업의 생산력과 혁신에 완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정책

I. 가정실태의 개선

1. 사회의 근간으로서의 가정

공공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관(기본법 제6조)으로서의 가정은 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통일 이후 가정생활에 있어 신연방주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이다.

결혼과 가정은 신·구연방주를 막론하고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다. 전체 주민의 80%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약 58%가 共同家計 하의 「부모-자녀 공동체(Eltern-Kind Gemeinschaft)」를 구성하고 있다. 낮은 혼인연령, 아직도 혼치 않은 무자녀 가정, 비혼생활 양식(nicht-eheliche Lebensform)의 확산 등이 구연방주와 구별되는 신연방주의 특징이다.

이와 반대로 공통적인 것은 독신자들의 증가추세인데, 신연방주의 독신자들은 파트너나 자기지향적인 성향 보다는 자녀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2세 이하 유아의 1/3은 이와 같은 비혼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나중에 부모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 6-7세 어린이의 11% 정도만이 비혼인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독일 어린이의 19%가 형제자매 없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다. 6-9세 어린이의 50%는 한 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30%는 두 세명의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 신연방주의 형제자매수는 1989년 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출생율 감소로 인하여(1994년까지 약 60% 감소) 구연방주보다 적다. 1995년 6-9세 어린이 중 형제자매가 없는 어린이는 서독지역에서는 17%인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27%였다. 그러나 1995년 부터 출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1995년에는 1994년에 비해 6.5% 증가, 1996년에는 1995년에 비해 11.5% 증가).

신·구연방주 가정 간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여전히 높은 신연방주 지역 어머니들의 취업성향이다. 유아를 가진 90%의 어머니들이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어머니들은 각 연령기의 구연방주의 어머니들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대부분이 하루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5년 부모를 가진 6-14세 사이의 어린이 중 신연방주에서는 57%, 구연방주에서는 단지 16%의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이러한 생활양식은 자기평가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서독지역 어머니들의 38%가 어린이들을 키우는 기간 동안에는 직장생활을 하지않고 가사를 돌본다고 대답한 반면, 동독지역 어머니의 4%만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동독지역 어머니의 28%가 자신이 실업에 처해있다고 대답하였다(서독지역: 2%).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과 부모의 직장생활을 더욱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현 일자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대부분 임금협약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이 분야에 새로운 모델의 도입 및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의 가정정책의 목표는 가정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급부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마련 지원을 가정중심적으로 전환하며, 3-6세 어린이의 유치원 입학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정의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었으며, 이러한 목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수 많은 다른 조치들도 여러 생활영역에서 가정 및 어린이 친화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각종 교육과 정보, 자체조직, 自助, 권익대표 등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가정에 대한 지원

2.1 경제적 상황

소득과 함께 세금감면, 재정이전 지원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 재정이전 지원금은 독신양육자, 자녀수가 많거나 혹은 실업에 처한 가정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한다.

통일 이후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의 두드러진 증가로 인해 가정의 구매력이 상승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1995년 신연방주 가계의 약 71%가 소득세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기록했다. 각종 지원 조치들은 각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된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가정의 수입상황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해야 하는 가정과 자녀가 없거나,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없는 가정 사이에 수입의 공평한 분배를 유지하는 것이 가정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2.2 자녀양육비, 자녀양육휴가

1991년 부터 연방자녀양육비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이 신연방주에도 적용되었다. 현재 독일 부모의 약 95%~97%가 연방자녀양육비를 신청하고 있다. 자녀 출산 이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자녀양육비 수혜자 중 95%(구연방주는 96%)가 자녀양육휴가를 받았다.

2.3 가정급부조정(Familienleistungsausgleich)

1995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했던 자녀수당(Kindergeld)과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액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2원적 체제는 1996년 1월 1일 부터 「가정급부조정제도」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세제혜택으로서 자녀수당을 지급하거나, 무자녀 공제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헌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액이 모든 소득수준에 대해 어린이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자녀수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지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1996년 1월 1일 부터 첫째와 두번째 자녀에게 각각 매월 200DM씩의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세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300DM, 네번째 자녀부터는 매월 350DM씩 지불된다. 연간 세금공제액은 어린이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6,264DM로 인상되었다. 소득증가에 따라 자녀수당을 감축지원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자녀수당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수당 추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녀수당 지급 연령제한은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되었다. 18세까지는 자녀가 직업교육을 받는지, 수입이 있거나 봉급을 받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18세 이상 자녀의 수입 상한선은 1년간의 수입과 봉급을 합하여 12,000DM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1997년 1월 1일 부터 첫째와 두번째 자녀에 대한 자녀수당은 각 20DM씩 인상되어 220DM가 되었으며, 자녀 세금공제액은 6,912DM로 인상되었다.

2.4 생계비 보조

신연방주에도 「생계비보조법(Unterhaltsvorschussgesetz)」이 199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 최장 72개월 까지 생계비보조 신청권이 인정되었다. 생계비보조액은 법률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에서 자녀수당의 1/2를 공제한 액수로서, 신·구연방주간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점차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1997년의 경우 구연방주의 6세 이하 어린이

에 대한 최고지급액은 매월 239DM이며, 7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최고지급액은 매월 314DM이다.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각각 204DM와 270DM이다.

2.5 어머니와 자녀-태아 보호 연방재단(Bundesstiftung 「Mutter und Kind-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신연방주의 임신부와 그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곤경에 처한 임신부를 위한 지원기금」 프로그램이 1992년에 종결되고, 「어머니와 자녀-태아보호 연방재단」이 신연방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동 재단의 지원금이 주재단을 통해 신연방주 여성들에게 지급되었다. 지급액은 현재 매년 2억 DM에 달한다.

3. 가정지원사업 구조의 구축

3.1 가정지원단체, 가정自助 및 가정상담, 가정교육

연방차원의 4대 가정지원단체(독일가정지원단, 신교 가정문제해결 공동체, 독일 카톨릭 가정지원단, 독신부모협회)의 주 단위 기관들이 설치되고, 각 가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된 각종 이익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가정정책이 기본적으로는 가정 스스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지만 관련 이익단체들을 통해 지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담당자·단체들을 위한 전문가 회의, 결혼·가정·가정생활·양육상담·가정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단체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서 1997년 말 까지 시행된 모델프로그램인 「동·서독 가정의 自助力 촉진, 통합 및 네트워크 개발」은 신연방주 가정들의 자체조직 및 활동력 강화에 또 다른 자극이 되었다.

3.2 임신상담과 가정계획의 구축

연방정부는 임신여성의 갈등을 해결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개인적 지원, 사회부조금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신연방주에 광범위한 임신상담망을 구축하였다. 이 상담소들은 또한 가정계획과 성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3년 부터 임신상담소들에 대한 지원은 각 주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중앙상담소를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3.3 가정센터와 「아동·가정에 우호적인 지역」 경연대회 - 각 지역별 가정정책을 위한 중요한 제안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각 지역별 생활공간에 있는 사회적·문화적 인프라를 가정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는 가정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적 가정정책의 구축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지역적 가정정책 소사전」(1996)과 「아동·가정에 우호적인 지역」 경연대회(1996/1997), 1992년 부터 구축된 「지역적 가정정책 네트워크」, 행태연구, 모델프로젝트, 워크숍 등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주정부들이 지역적 가정정책 구축이라는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5개 신연방주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던 프로젝트인 「다기능 가정센터」는 작센주의 Annaberg-Buchholz, Radebeul과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Neustrelitz, 튀링겐주의 Schmalkalden 등에서 세대를 초월한 가정지원 사업으로서 도입되었다.

3.4 독신양육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BMF/SFJ)는 독신양육자들의 교육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신연방주의 독신부모를 위한 상담 및 만남의 장소」 프로그램을 1996년 말 까지 지원했는데, 그 목적은 독신양육자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었다. 「곤경에 처한 독신 양육여성 지원」이라는 모델 프로젝트는 신연방주 독신

양육여성들의 특수한 상황과 그들 스스로의 이해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93년 부터 Wolgast, Dessau, Weimar에 독신양육여성을 위한 자력구조 프로젝트가 지원되고 있다.

3.5 가족휴양과 가족만남 지원

신연방주에는 자녀가 많은 가정, 장애자가 있는 가정, 독신양육자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공 가정휴양소와 함께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구조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16개의 가정휴양소가 3,310만DM의 연방지원금을 통해 설립·정비되었다. 1997년에도 2개의 가정휴양소 설립을 위해 120만DM의 예산이 마련되었다.

3.6 산모요양제도의 구축

현재 신연방주의 요양기관은 복지사업단체들이 운영하는 14개 요양소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산모를 위한 요양자리가 약 5,200개, 유아를 위한 요양자리가 약 7,700개가 있다. 또한 앞으로 3개의 요양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1991년 부터 이 요양소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와 개축을 위해 1,110만DM 이상을 지원하였다.

II.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

1. 통일당시의 상황

신연방주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시간제 근무를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임금협상 파트너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양질의 사회보장법적 수혜가 가능한 가정

친화적인 시간제 근무의 제공, 직장복귀에 대한 지원조치 등이 매우 중요하다.

2. 직장생활의 유연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의 맥락에서 1994년부터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모델프로젝트인 「시간제 근무 상담-여성과 남성들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전문직과 관리직 및 민간경제계에 시간제 근무를 확산시키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유연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또 다른 모델프로그램인 「중소기업체 근무와 가정의 조화에 대한 상담기회 제공」은 기업체에 가정친화적인 조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1996년 9월 「가정친화적인 근무시간과 경쟁력은 상호 모순되는가?」라는 주제의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신연방주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4월 1일 고용촉진개혁법의 발효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체제가 더욱 개선되었다. 즉, 최소근로(Geringfügigkeitsgrenz) 이상의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최소근로도 앞으로는 실업보험에 합산된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 실업수당 제도가 실시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기본생계비도 1998년 초 부터 개선된다.

근무시간의 유연성 뿐만 아니라 근무지의 유연성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6년 「원거리 근무(Telearbeit)」라는 캠페인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기업, 근로자 및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을 포괄하는 것이다.

3. 경연대회: 「가정에 친근한 기업」

연방정부는 1996년에 제2차 「가정에 친근한 기업」 연방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기업들은 특별한 가정친화적 고용조건을 갖춘 기업들이었다. 연방대통령의 후원 아래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215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 35개 기업은 신연방주 기업들이었다. 동 경연대회의 결과는 1997년에 문서로 발표된다.

4. 직장생활 복귀

직장생활이 중단된 경우,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일정한 지원조치를 통해 수월해져야 한다. 직장생활로 복귀하려는 신연방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두 개의 모델 프로그램이 1996년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하나는 직장복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기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 지방에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는 1997년에 제출되었으며, 여성들의 직장생활 복귀 지원 분야에서 참고될 것이다.

고용촉진개혁법 역시 직장복귀 여성들과 남성들을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는데, 구고용주의 가입보조금을 인정하고 보수교육 조치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기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육아비 인수제도를 개선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5. 산모보호

1997년 1월 1일 부터 산모보호법(Mutterschutzrecht) 개정법이 발효되어 조산모와 가정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개선되었다. 소기업의 고용주들은 법정 의료보험으로 부터 그들의 실질적인 산모보호비의 100%를 돌려 받았다.

6. 유아양육

유아양육 분야에 있어서 신연방주는 여전히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은 원칙적으로 하루 종일 유아원에 다닐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짧은 시간 동안만 유아원에 다닐 수도 있다.

Ⅲ. 경제적 · 사회적 변화 속의 여성

1. 통일당시의 상황

통일과 함께 남녀평등 정책은 새로운 활력을 띠었다. 이에 대한 법적 토대는 통일조약 제31조와 제2차 남녀평등법(Gleichberechtigungsgesetz) 및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대한 보충조항이었다.

신 · 구연방주 여성들의 서로 상이한 경험의 배경들이 1995년 11월에 열린 「동 · 서독지역 여성들의 기회균등」이라는 제5차 연방 평등회의에서 새롭게 대두되었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위탁에 따라 실시된 제3차 정기여론조사인 「여성과 남성의 평등 - 주민들의 생각 및 실제」의 여론조사 결과가 1996년에 발표되었는데, 신연방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상황에 대해 훨씬 호전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연방주 주민들의 경제상황 평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연방주 주민들의 약 50%가 1995년 자신들의 경제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1991년: 58%), 신연방주 주민들의 약 42%가 자신들의 경제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1991: 35%). 그러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신의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였다(약 5%).

지난 몇 년 동안 남녀평등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존하는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는 일이다.

2. 직장생활에서의 여성

통일 이후 처음 몇 년 동안 여성들의 실직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래 1994년과 1995년에 여성고용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현상은 1996년에 지속되지 못하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 신연방주에서는 전년 대비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실직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이는 법정 사회보장제도 하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199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 대비 고용감소율은 여성의 경우 -1.7%였으며, 남성의 경우 -5.2%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감축이 여성취업율이 높은 서비스 분야보다 제조업과 건축업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

고용 감축과 함께 1996년의 실업도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업 남성이 연평균 약 27.9%(약 108,100명) 증가한 반면, 실업 여성은 약 2.1%(13,700명이 늘어난 약 673,780명) 증가하여 여성실업 문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실업률은 1996년에 연평균 19.9%(전년도: 19.3%)로 여전히 남성실업률 13.7%(전년도: 10.7%)을 상회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1995년도 여성취업률은 73.9%이었으며, 남성취업률은 79.7%이었다(구연방주 여성취업률은 59.9%, 남성취업률은 81.3%).

1995년 말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튀링겐주에서 고용시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경제계와 노조 및 노동행정 대표자들은 여성들의 제1 고용시장¹⁾ 진출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른 신

1) 일반고용시장을 제1 고용시장이라고 하는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취업이 이루어지는 고용시장을 제2 고용시장이라고 함.

연방주에서도 이와 같은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1996년 초에 연방정부가 제안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여성들의 고용시장 상황의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여성에 대한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 남녀평등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97년 4월 1일 발효하는 고용촉진법의 개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2.1 노동시장정책적 조치

여성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촉진법상의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가운데 실업자 중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여성들이 고용관련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고용촉진법 제2조제5항은 특히 신연방주에서 잘 지켜졌으며,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1991년 부터 약 170만명의 여성들이 고용촉진법상의 자질향상 조치에 참여하였다. 1990년 가을을 기준으로 볼 때(약 390만명이 직장여성), 신연방주 여성 2명 중 1명이 연방노동청이 실시한 지원조치인 직업보수 교육이나 직업전환 교육, 직업복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1996년 이러한 지원조치에 참가한 여성들의 비율은 62%로 실업자 중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57.6%)을 훨씬 능가하였다.

특기할 것은 고용창출조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 분야에서 노동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성의 연평균 참여율은 1993년에 46.8%이었으며, 1996년에는 65.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창출조치에 대한 여성의 참가는 연방전역에 걸친 현상으로서, 통일 초기에 나타났던 지역간 참여율의 편차는 사라졌다. 이러한 참여율은 실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또한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따른 조치(환경과 사회복지사업, 청소년 지원 분야 고용의 촉진)에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연방노동청의 꾸준한 노력이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동 조치에의 여성들의 참여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1996년에 42%에 이르렀다. 여성 참여율의 증가 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지원조치의 주요대상 분야가 환경정화 분야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율은 80%로 이에 비해 상당히 확고한 편이다.

1995년 현재 4명의 장기실직자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특별프로그램인 「장기실직자를 위한 구직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1999년에 만료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1996년 말까지 약 21,400명의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숫자는 여성 장기실업자의 약 7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2 시범계획 「일자리 마련의 새로운 길」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주관으로 노르드하우젠郡(튀링겐주), 귀스트로우/테테로우郡(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 템플린/프렌즈라우郡(브란덴부르크주), 토어가우/오샤츠郡(작센주), 크버푸르트/메르제부르크郡(작센-안할트주)에서 실시된 동 시범계획의 목적은 공동체적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군단위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이 계획의 기획과 실행은 군단위에 설치된 현장팀이 맡고 있는데, 그들은 당해지역의 각종 경제촉진 조치와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적 연관하에서 일하고 있다. 1993년에 시작된 동 계획은 그동안 이루어진 신연방주의 재정분담으로 인해 1998년 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계획의 시행결과 재정지원과는 무관한 2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구들이 설치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2.3 창업

직업활동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에는 여성들의 직업적 독립성 지원과 창업 여성·여성기업주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이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신연방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있다. 3개 중 1개의 기업이 여성에 의해 창업되고 있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기존의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직업적 독립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3. 노후보장

1992년 연금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신연방주에도 유아양육과 가사에 대한 조정급부청구권이 서독지역에서와 같이 인정되고 있다.

신연방주 여성들의 평균 가치분 연금액은 1996년 7월 1일 현재 매월 1,087DM인데, 이것은 1990년 6월 30일 기준 연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신연방주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짧은 근무기간과 낮은 보수로 인해 1996년 7월 1일 현재 남성보다 680DM 정도 적다(남성 평균연금액: 1,767DM).

4. 사회 속의 여성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조가 신연방주에 정착되고 있다. 통일 변혁기 이후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직업단체와 정치적 이익단체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여성단체를 구축하고, 이들과 구연방주 여성단체들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지원조치는 성공적이었다. 총 840만DM가 투입된 「연락사무소」들은 독일여성협의회에 주관하여 그들의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제반 사회정책적 의사결정 과정과 단체정책적 기능의 수행에 여성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1995년 부터 「정치적 명예직에 여성 임명」이라는 시범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신연방주에서 수용되고 있다. 또한 여성 정보교환 모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는데, 1991년 부터 약 350회에 걸쳐 이러한 모임이 개최되었으며, 1997년 말에는 총 약 390회에 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사무처도 계속 증설되어, 현재는 거의 80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사무소들은 지역적 차원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20만DM의 기초재원을 통해 신연방주에 여성보호소와 여성 보호용 주택 건설을 지원하였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120개가 넘는 여성보호소가 있다.

5. 남녀평등의 향후 발전

향후 몇 년 동안 연방정부가 남녀평등 분야에서 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 결과를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 단체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의 대부분은 이미 독일전역에서 해결되었거나 연방과 각 주,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의 중점과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1.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권을 갖는 고위직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진출할 수 있는 권리의 확장
2. 경제산업계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의 개선
3. 인권보호 및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근절

이러한 사항들은 각 주정부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6년에 성안된 국가전략의 핵심사항이다. 또한 이것은 의식강화와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의 극복 및 여성운동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가 없이는, 그리고 경제적 재원에 대한 그들의 접근이 없이는, 또한 사회적 발전을 위한 그들의 기여가 없이는 전세계인은 물론 신연방주 재건과 함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독일인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남녀가 함께 또한 모든 사회단체·기구들과 협동하여 남녀평등 문제를 사회전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V. 노인정책

1. 통일당시의 상황

오늘날 통일독일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870만명이나 된다. 그 중 약 730만명은 구연방주에, 나머지 약 140만명은 신연방주에 살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의학적, 그리고 간병적 차원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변화들에 잘 적응하였으며, 이를 잘 이용하였다. 특히 외래진료 부문에서의 노인에 대한 지원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새로운 노인지원 체제의 구축을 통

하여 독일 전역에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기관들이 제공되었다. 다만, 통일 당시 대부분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통일 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통한 적시적인 정비나 시설해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신연방주 소재 노인 간병요양소와 장애인 요양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개인적인 인생계획과는 달리 직장생활을 일찍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50세~65세 사이의 신연방주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연방주 주민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연방프로그램인 「사회에 참여하는 인생 모임-조기퇴직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Halberstadt와 Brandenburg에서 유사한 사회운동이 중요한 경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구연방주 노인들 사이의 주거조건과 경제사정의 커다란 차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노인정책 과제들과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2차 노인정책보고서에서는 주거문제를 고령기에 들어서까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양로원

현재 신연방주에는 1,186개의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이 있으며, 여기에 10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통일 당시에는 양로원의 약 90%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권자의 변경이 아직 최종완료되지 않은 현재 이 비율은 약 24.2%로 낮아졌다.

구동독의 거의 모든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이 양로원 건축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만 부합하였다. 통일 조약에 따라 양로원 최소건물규정 제30조가 신연방주에도 적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10년까지의 조정기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긴급지원 조치에 따라 양로원 건물의 장기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수 많은 신축·정비작업과 노후 건물에 대한 폐기작업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양로원의 전반적인 상황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신연방주의 투자수요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간병보험을 통한 특별규정들이 모색되었다.

게다가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와 연방노동사회부는 각 양로시설의 현대화와 신·개축 등을 위해 시범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현재 양로원 수용노인들을 위해 양호한 자질을 갖춘 충분한 수의 간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3. 사회복지원-외래, 보건, 사회복지 서서비스를 위한 조직

신연방주가 구연방주로 부터 받아들인 외래, 보건 및 사회복지 서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원은 구연방주에서는 정평있는 조직이었으나, 신연방주에는 전혀 생소한 조직이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1,000개 이상의 공인 사회복지원이 있으며, 대부분은 자율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원은 훌륭한 간병시설 및 기술장비, 차량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적인 개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재정지원과 의료보험으로 부터의 지출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인력의 대부분은 고용창출조치에 의한 인력으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새로 마련된 고용촉진법 제249h조는 고용주의 정식고용을 수월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조치에 의한 지원이 종결된 후라도 지속적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4. 자발적 참여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1992년 부터 「노인사무소(Seniorenbuero)」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자발적 사회활동과 명예직 사회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직장생활 이후의 활동분야 소개 및 명예직 사회활동 참여의 가능성에 관한 상담
- 자력구제활동과 자력구제단체의 구축
- 이웃 및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노인활동의 개발

동 시범프로그램에 따라 13개의 노인사무소가 지원되었다. 또한, 이 사무소들은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노인사무소들을 개설하는데 하나의 자극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튀링겐주에서는 모든 지방행정구역과 도시들에 노인사무소가 개설되고 있다.

V. 신연방주의 청소년 지원

1. 출발상황

신연방주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 실태에 관한 제9차 청소년보고서(1994.12)의 발표를 계기로 청소년 지원체제의 구축과 공동발전, 지금까지의 지원성과에 대한 토론이 연방의회와 언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연방과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연방주 청소년 정책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논쟁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9차 청소년보고서는 기본적인 청소년 지원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연방으로 부터의 제반지원이 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통일 이후 연방의 「청소년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지원분야에서의 제반 조치를 위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동기가 파생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원을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찰 하에 두고 있는 헌법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반복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당해 주나 지방자치단체 관청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재원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2. 청소년 지원

1995년 12월 31일 청소년지원법(KJHG, 사회법전 제VIII권)상의 신연방주에 대한 경과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신·구연방주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의 청소년 지원 수준은 구연방주 보다 낮지 않다. 청소년지원법상의 제반 지원을 위해 1993년 신연방주에 86억DM, 구연방주에 236억DM가 투입되었다. 신연방주의 청소년 1인당 투입액은 425DM로서 구연방주(328DM) 보다 거의 100DM 정도 높다.

앞으로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지역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개선
- 사회복지단체들의 다원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에게 유리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계속적인 계발
- 전문분야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 지원 업무분야가 고용창출조치와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따른 한시적인 인력으로 충원됨에 따른 인원운영의 어려움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업무분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와 주정부로부터 정규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리로 교체

3. 청소년 교육기관의 건축 및 수리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의 재원과 고용촉진개혁법 제271조에 따른 연방의 지원조치들은 청소년 교육기관 건물의 정비와 장비의 개선에도 활용되어야 했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주정부 및 운영단체와 함께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장소와 유스호스텔, 고급 유스호스텔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으며, 동 지원금을 통해 1993년 부터 신·개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브란덴부르크주의 Trebnitz성에 있는 청소년교육원
- 메클렌부르크-보어포르멘주의 Binz, Heringsdorf, Stralsund에 있는 유스호스텔과 Güstrow-Schabernack에 있는 청소년교육원
- 작센주의 Buchheim 유스호스텔
- 작센-안할트주의 Thale 유스호스텔과 Peseckendorf의 청소년교육원
- 튀링겐주의 Erfurt, Weimar, Ilmenau 유스호스텔들과 Oppurg성에 있는 청소년교육원 등

4. 적대감과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AgAG)

1996년에 종결된 연방지원 프로그램인 「적대감과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AgAG)」에 1992년 부터 투입된 금액은 약 9,100만DM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에서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해 약 130개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 복지사업 및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폭력·난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것이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성향이 있는 그룹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폭력성향도 장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적대감과 폭력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또한 활용되었다. 특히 각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연방의 청소년플랜을 통한 정규 및 시범지원 조치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전일제 유치원 확장 프로그램(MFT)」은 1996년에 종결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과 유아원, 방과후학교(Horte)의 담당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주정부와 운영자가 상담, 조직, 기획,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의 상황(Kindersituationen)」이라는 프로젝트는 전일제 유치원에서 교육학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연방주의 육아기관에 대한 참여를 지향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모의 실제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994년 말 「신연방주 청소년 지원 자율단체의 구축과 확충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AFT)」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청소년 지원 체제의 구축을 계속 지원해 왔으며, 그 중에는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 실행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1996년에도 2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지원 체제가 더욱 견고화되었으며, 시범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들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튀링겐 주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학교에서의 청소년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형 개발을 위한 3개년 시범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구동독에서의 「학교의 다양한 사회주의적 기능」에 대한 경험이 청산

되고, 사회법전 제VIII권이 상정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청소년들의 취직을 도와주는 「노동현장과 관련된 청소년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83개 시범프로젝트 중 47개 프로젝트가 시범기간인 1994년 부터 1997년 까지 신연방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원항목을 개발하고 시도해 보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는데, 구동독의 「라디오-음악학교 오케스트라」를 독일음악학교협의회가 운영하는 「독일 음악학교 오케스트라(Deutsches Musikschulorchester)」로 계속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특별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계획분야에 있어서의 법적 관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과정에서 특히 혁신적인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연방중심의 정규적인 지원과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청소년 사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에 있어서 신연방주지역은 그 비중에 맞게 고려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우표 판매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 우표재단(Stiftung Deutsche Jugendmarke e.V)」은 지난 몇 년 동안 신연방주 프로젝트와 그 운영주체 및 운영기관들을 주로 지원하였다.

VI.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Zivildienst)

신연방주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는 1996년에도 계속 확충되었다. 1996년 말에는 약 33,000개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자리 중 약 9,200개의 일자리가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 의무자들의 소집을 위해 준비되었다.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자들에 대한 준비교육을 위해 Schleife와 Barth 외에도 1996년 5월 Sonderhausen에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자 학교가 개교되었다. 이 학교의 개설과 함께 신연방주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를 위한 조직 구축 작업은 종결되었다.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 일자리의 가장 많은 부분은 민간복지사업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협회들은 그들 분야에 투입된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방의 위임하에 행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신·구연방주 사이에 존재했던 격차는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 구연방주의 경우에는 동 협회 소속 운영권자가 약 80%이며, 신연방주의 경우도 이제 거의 72%에 달하고 있다.

VII. 민간 복지사업체제와 명예직 참여 및 자력구제단체 구축 지원

연방은 신연방주의 복지사업 체제의 구축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적시적인 확장을 위해 민간복지사업단체에 대부분 해주는 순환기금(Revolvingfonds)은 신연방주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특별과제의 수행을 위해 1991년~1994년 회계연도에 총 1억DM가 증액되었다. 기존 자본스톡과 증액분으로 부터 신연방주에 투입된 대부분액은 1996년 말까지는 1억 5,650만DM에 달하였으며, 이들 통해 총 138개의 관련조치(총투자규모: 7억 9,500만DM)들이 지원되었다.

구동독에서는 까다로운 조건하에서만 허용되었던 명예직 참여에 대한 지원은 신연방주 복지사업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명예직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단체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전제조건들과 지원조치들이 연방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연방주에서의 명예직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사회적 자력구제 지원」이라는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연방주의 17개 지역을 조사하는 한편, 자력구제 단체와 자율단체의 설립, 자력구제 의식의 확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술적 조사연구 결과, 「자력구제연락소(Selbsthilfekontaktstelle)」들이 자력구제단체와 이에 대한 참여를 크게 지원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자력구제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자력구제연락소 사업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방전역에 걸쳐 약 265만명의 주민들이 70,000개가 넘는 자력구제 그룹 및 자율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연방주에서는 25만명의 주민들이 약 7,500개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자력구제연락소는 약 50개로 증가하였는데, 구연방주의 경우에는 약 110개 정도가 있다.

계획 중인 새로운 시범프로그램인 「자력구제단체와 자율단체의 활동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의학적 부양기관을 갖춘 자력구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자력구제 네트워크가 질과 양적인 면에서 계속 확장될 것이다.

VIII. 묘지관리

신연방주에 대한 경과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1995년 부터 「전쟁과 폭정 희생자 묘지관리법」에 따른 묘지관리비가 신연방주에서도 전액 지불되었다. 1995년~1997년 동안 매년 약 1,700만DM가 지출됨으로써 신연방주에서도 전쟁과 폭정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갖는 희생자 묘지들이 설치되게 될 것이다.

제8장 문화, 스포츠

I. 문화

1. 통일당시의 상황

독일의 경우, 문화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지원주체는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지속되어 온 것이다. 연방정부는 범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

내적통합의 달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내무부는 1990년~1993년 동안 각종 통일관련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문화재건 분야에서의 과도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였다. 아직까지도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40여년 동안 존재했던 소련군과 구동독 문화정책의 부정적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구연방주에는 문화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높은 수준으로 구비되어 있다.

2. 통일조약 제35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통일조약에는 신연방주의 문화재가 어떠한 손상도 입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의 권한 배분 규정에 따르면 재정조달을 포함한 이 과제의 수행은 신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1993년 과도적 재정지원이 종결된 이후에도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예술과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많은 지원금을 투입하였다. 비록 민간 후원자들의 중요성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대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네트워크가 손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연방주가 이 분야에서의 업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로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인 조명을 다시 받기 시작한 초지역적 의미가 있는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 팽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작센주나 튀링겐주의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들은 세계적으로도 비길데 없는 다양성과 밀집도를 자랑한다.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신연방주는 독일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극장과 오케스트라 분야 등에 조직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연방주 문화환경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변함없이 보존될 것이다.

과도적 재정지원이 종결된 이후 연방의 책임은 신연방주에서나 구연방주 지역에서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문화시설에 집중되었다.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예를 들어 라이프찌히의 독일도서관, 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이외에 무엇보다도 소위 「등대(Leuchtturm)」라고 불리는 문화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문화 인프라 분야에서의 특별한 재건수요를 고려하면서, 선정된 사안의 경우에 문화적 요소의 재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의 정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6년 7월 15일에 제정된 법률(BGBI. I S.980)에 따라 문화적 목적의 지원에 편입되어야 마땅한 장벽과 경계선 부동산의 판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3.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의 지원

3.1 베를린

동베를린과 통합된 연방수도 베를린은 국가적, 국제적 의의가 있는 문화

시설의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중점적인 문화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에 대한 문화지원을 위해 1995년과 1996년 연방예산에 각각 약 3억5,400만DM와 4억300만DM를 책정하였으며, 1997년 예산은 4억1,300만DM를 상회할 것이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연방지원의 대부분은 베를린의 문화시설과 프로이센 문화관리재단 및 베를린축제회사의 행사계획과 같이 국가전체적인 의미를 갖는 행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범국가적 의의가 있는 문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성 및 정원재단, Karlshorst와 같은 사적지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문화시설물과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1994년 6월 30일자 「수도조약」에 의거하여 1999년까지 매년 6,000만DM가 책정되어 있다. 구동베를린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도 연방정부의 문화지원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과 베를린이 동등하게 참여한 감독위원회(Kuratorium)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수도 문화예산을 통해 구동베를린의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와 함께 「운터 덴 린덴 국립오페라」와 독일극장, 베를린 연극관, 겐다르멘 마르크트 콘서트홀, 베를린 신축회당 재단, 유대인 문화센터 및 1997 베를린 음악-비엔날레 등이 함께 지원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지원조치들을 통해 베를린 지역 문화수준의 평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베를린 정부가 문화분야에 있어 연방수도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달성된 문화적 평준화가 또 다시 위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연방수도의 문화적 위상을 보장하고 계속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베를린과 연방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연방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연방으로 부서의 문화지원의 정도와 계속 여부에 대한 연방과 베를린간의 협상은 1998년에 시작될 것이다.

베를린에서 가장 의미있는 문화시설은 프로이센 문화관리재단이다. 이 재단은 연방과 각 주정부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며 재정이 조달된다. 1996년 말 연방과 각 주정부들 간에 이 재단의 향후 재정조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3.2 신연방주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문화지원은 구연방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인 의의가 있는 시설물들에 집중한다. 이에 관한 문화정책적 토론에서 「등대계획-지원(Leuchtturm-Föderung)」 프로그램은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다.

동 지원조치는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문화지원에 신연방주를 참여시키는 한편, 지원대상 기관들의 국제적 위상회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평준화를 위한 높은 투자수요가 해소되어야 한다.

동 지원조치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관들의 일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1995년 말 수 십년 동안 방치되었던 할레 소재 프랑켄재단의 중앙건물이 다시 개관되었다. 범지역적인 의의를 갖는 문화중심지가 이 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프랑켄재단 설립 300주년인 1998년 「역사현장 재현 도서관(Historische Kulissenbibliothek)」이 완공됨으로써 역사현장 재현 분야에 있어 중요한 장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사적지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Philipp Melanchthon의 500회 출생일인 1997년 4월 15일 새롭게 구성된 전시관을 갖춘 Melanchthon의 생가가 복원, 개관되었다. 또한 연방의 지원을 받아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복원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d Muskau와 퀴어스트 퀴클러 파크 안에 있는 파괴된 신궁전의 복구, Stralsund 소재 해양·수산업 박물관의 기념비 정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성 및 정원재단 소속 건축물 중 이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건물과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들의 재개관 등이바로

그것이다(회화갤러리 1996, 대리석궁전 1997).

연방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화시설에 집중된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성 및 정원재단
-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 자료관
- 데사우 건축재단
- 바이마르 고전주의재단
- 부헨발트, 작센하우스, 라벤스부뤼크 사적지
- 소르벤인들의 문화시설
- 루터공회당과 Melanchton의 생가(Wittenberg)
- 루터가 출생한 집과 루터가 사망한 집(Eisleben)
- 프랑켄재단(Halle)
- 뤼어스트 뤼클러 파크 재단(Muskau)
- 독일 해양·수산업 박물관(Stralsund)
-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Berlin)
- Wartburg 재단(Eisenach)
- Dessau-Wörlitz 문화재단
- 뤼어스트 뤼클러 박물관 재단과 브라니츠 궁
- Lessing 박물관(Kamenz)
- Kleist 기념연구소(Frankfurt/Oder)
- 중부독일 바로크음악 연구공동체(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동독 영화부문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통일과 동시에 동독의 영화제작업체와 영화제작자 및 영화관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3년 말 까지 총 1억5백만DM가 투입된 문화분야에서의 과도적 재정지원과 조치들을 통해 동독영화의 전반적인 구조전환 과정이 지원되었다. 대

부분 과거 DEFA 회사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영화회사들은 브란덴부르크, 작센, 동베를린에 설립되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TV 방송 분야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극영화나 연방의 문화영화 지원사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장편의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영화생산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영화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독일통일 직후 영화계는 채산성이 없는 소규모 영화관들이 속속 문을 닫는 등 크게 쇠퇴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연방의 「Ufi 특별재산」의 지원을 통해 많은 영화관들이 현대화되고 신축되었다. 그 결과 관람객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1992년: 1,200만명, 1996년: 2,240만명).

연방의 지원을 통해 문화적 의미가 큰 동독의 양대 영화페스티벌이 보존되었다.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라이프찌히 다큐멘터리 주간」 행사(Dokumentarfilmwoche)와 중부독일방송국(MDR), 독일 제2방송국(ZDF), RTL, Gera시가 주관하는 재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Gera의 어린이 영화페스티벌 「금참새(Goldener Spatz)」가 바로 그것이다. 동독지역 영화문화에 대한 지원의 틀 속에서 연방은 앞으로도 계속 양대 영화페스티벌을 지원할 것이다.

민족적 문화유산의 하나로 약 680개의 극영화, 4,200개의 기록영화 및 단편영화, 750개의 애니메이션 및 트릭영화들을 가진 DEFA 영화자산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주 정부들과 공동으로 DEFA 영화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구동독 소재 역사적 건축물들이 소홀히 관리·보존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연방정부는 국가적 의의가 있는 문화·기념건축물의 보전과 보호를 위하여 1991년 부터 1996년 까지 총 2,950만DM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44개의 개별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1997년 예산은 약 2,800만DM로서 1996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지역을 위한

1997년도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신연방주에서 제출된 모든 지원신청건들이 지원 필요성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1996년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지역에 대해 실시하였던 기념물 보호 특별프로그램(Dach und Fach)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500만DM의 지원을 통해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92개의 소형 기념건축물들이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1997년에 책정된 예산은 약 700만DM이다.

연방추방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제96조에 의해 연방과 각 주정부에게 부여된 동부유럽 및 동남부유럽의 추방지역 및 이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일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독일민족과 외국인들의 의식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임무는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 지역으로도 확장되었다.

문화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각 주의 단체들과 추방민협회들의 문화집회가 보다 더 빈번하게 신연방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연방정부도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였다.

동유럽의 독일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강의분야에서는 1994년 Greifswald 대학에 개설된 「포메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좌가 1999년 까지 연방내무부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라이프찌히의 독일문학 강좌에 대한 지원은 1996년에 종료되었다. 이 강좌는 1997년 이후에는 작센주에 의해 계속된다. 그 외에 Magdeburg대학에 있는 「소련점령지역과 구동독에서의 추방민 동화과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그룹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주박물관 분야에서는 그간 Greifswald 소재 포메른 주박물관이 사법상의 재단으로 설립되었다. 박물관 재건과정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Görlitz 소재 슐레지엔 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4. 문서관리, 문화재 반환

문서관리 분야의 통합과정은 거의 완료되었다. 통일조약 제13조에 의한 연방문서관리법(Bundesarchivgesetz) 개정으로 인해 구동독의 국립중앙문서관리청(포츠담)과 군사문서관리청, 영화자료관리청은 연방문서관리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곳에 분산되었던 문서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이후에는 코블렌츠와 포츠담에 보관되어 있던 1871년 부터 1945년 까지의 독일제국의 전체 문서자료가 베를린-리히터펠데 소재 연방문서관리청의 신축 건물로 이관되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자료에는 1994년 연방문서관리청이 이관받은 구베를린다큐멘터리센터의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1945년 이전 시대에 대한 역사연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구동독 역사연구는 두 번째로 큰 중점과제였으나, 이에 필요한 자료들은 통일 당시 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구동독 국립중앙문서관리청의 자료(이제까지 포츠담 소재)와 정당과 대중조직 자료(이제까지 베를린 토어슈트라쎄 소재)들이 연방문서관리청의 새로운 소재지인 베를린-리히터펠데에 모여지게 되었다.

1992년 3월 13일 연방문서관리법 제2차 개정을 통해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관리재단」을 연방문서관리청 내의 독립적 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SED, DBD, NDPD, FDGB, FDJ, 독·소친선협회, 문화연맹의 문서자료들과 함께 방대한 자료들이 이 재단에 귀속되었다. 동독CDU와 LDPD의 문서자료들은 재단 보관용으로 각각 St. Augustin에 있는 콘라드-아테나워 재단(CDU의 소속 재단으로 동독측 자매정당인 동독CDU의 문서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역주)의 문서보관소와 Gummersbach 소재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DP의 소속 재단으로 동독측 자매정당인 LDPD의 문서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역주)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군사관련 문서자료들은 Freiburg/Br.에 있는 연방문서관리청-군사문서자료실에 집결되었다. 연방문서관리청에 비치된 문서자료의 전체분량은 현재

240Km를 넘고있다.

연방문서관리청(Bundesarchiv)과 영화자료관리청(Filmarchiv)은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이전하였으며, 단지 영화기술 부문만 코블렌츠에 있는 중앙업무소에 남아 있다. 영화자료관리청은 통합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자료보관소의 하나가 되었다.

신연방주에 구축된 문서관리 행정체제는 이미 「연방과 각 주의 문서관리 담당관 및 문서관리청장 회의」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전쟁 당시에 유출된 문화재들의 반환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특히 조지아공화국의 경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1996년에 일부 매우 소중한 책자를 비롯하여 약 10만점에 달하는 책자가 독일로 반환되었다. 이 중의 많은 부분은 Magdeburg시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와의 문화재 반환협상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와도 전쟁과 관련하여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문제를 둘러싼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와의 차기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방정부는 특히 신연방주의 박물관과 문서관리소들이 서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관련 유출문화재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이 문화재들은 전후시대에 탈취 또는 다른 비합법적 방법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된 것들이다.

5. 결 론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구동독지역에서는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예술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1990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전체 문화풍토를 조직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경제적·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문화시설들은 대체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긴급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달 문제에 있어서 현재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드레스덴의 역사적 건축물들의 재건과 같은 몇몇 개의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겨우 극장이나 오케스트라, 박물관들이 그 업무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음 세기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문화적 매력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물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II. 스포츠

1. 통일당시의 상황

일반체육과 선수체육은 국민통합적 성격을 통해 통일독일의 공동성장과 생활수준 평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 일반체육

2.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신연방주에서는 스포츠단체들의 조직이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체육시설을 정비하였다.

2.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체육시설 중 많은 시설들은 매우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서독지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체육연맹(DSB)은 1992년 연방에 소위 「황금계획(Goldener Plan Ost)」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체육시설 개선분야를 동독지역 재건계획과 관련된 투자지원 법안에 편입시켰다.

2.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연방은 투자촉진법의 목적규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대중체육시설의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각 주정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체육

3.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1996년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은 독일 각 주정부 체육인들의 통합체였다. 신연방주의 많은 트레이너들과 후원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독일 체육인들과 후원인들의 자의식 고양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수용에 기여하였다.

신연방주의 장애인체육협회 회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체육단체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반체육과 건강회복운동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3.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장애인체육의 확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장을 받고 있다. 새로 구성된 체육단체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또한 교통 및 주택인프라가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독일장애자체육협회에 의하면 명예직 임원들을 모집하는 것도 신연방주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3.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독일체육연맹과 그 산하의 각 주체육연맹들은 장애자에게 적합한 체육시설 인프라의 계획과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다.

명예직 분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취약점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4. 선수체육

4.1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4.1.1 체육단체 지원

- 새로운 체육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신연방주에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1990년~1993년 동안 많은 연방재원이 투입되었다.
- 장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책 2000(Förderkonzept 2000)」이 개발되었으며, 1997년 부터는 독일체육연맹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범연방적으로 시행되었다.
- 선수 및 지도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동독지역으로의 재이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체육단체와 독일체육연맹의 각 위원회에서 신·구연방주 대표들이 함

께 활동하고 있다.

4.1.2 연방트레이너

선수체육에 있어서 연방체육전문기관의 자기책임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트레이너 운영안(Trainerkonzept)」에 따라 지금까지 연방체육전문기관에 트레이너별로 지급되던 연방의 트레이너 재정지원금이 개산급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트레이너 고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제거되었다.

4.1.3 올림픽 훈련소(OSP) 및 연방종합체육센터(BLZ)

신연방주에 7개의 올림픽 훈련소와 연방종합체육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1996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체육시설의 새로운 구축작업이 완료되었거나 더욱 발전되었다. 이로써 서독지역에 유효한 기준들이 신연방주의 체육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4.1.4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건축

1995년 이래 신연방주의 기록경기를 위한 체육시설 건축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지원되었다. 이로써 또 하나의 평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록경기를 위한 단일한 조건의 마련).

4.2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해결 과제

4.2.1 연방트레이너

신·구연방주 트레이너의 보수는 공공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같아져야만 한다.

4.2.2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건축

체육시설 건축과 정비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재정당국인 연방, 각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4.3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1997년도 조치 내용

4.3.1 연방트레이너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보수의 평준화가 공공분야의 추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4.3.2 선수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의 건축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신연방주의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의 맥락에서 체육시설 지원조치에 대한 적절한 우선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체육학 연구

< 1995년 이후 평준화 과정 >

Köln 연방체육학연구소, Leipzig 응용훈련학연구소, Berlin 운동기구 연구·개발연구소와 같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육학 연구기관들의 업무영역과 상호간의 협력은 선수체육연구, 기술개발, 올림픽 훈련소와의 협력의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계속 성장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양대 기관을 보존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Dresden 인근의 Kreischa에 있는 스포츠 생화학 및 흥분제 분석 연구소는

독일의 두번째 흥분제검사실험실(Dopingkontroll-Labor)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제9장 독일의 국제적 역할

I.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

1. 유럽연합(EU)

독일이 유럽 민주주의 공동체에 확고히 통합되고 대서양 동맹체제의 일원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점함으로써 우리와 우리들의 동반국들에게는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평화와 안정과 풍요가 주어졌다. 사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독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오늘날 까지 독일이 안고 있는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부단하고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유럽정책은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EU에 관한 조약의 지속적인 준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국내정책·사법정책과 기구들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EU의 확장이 그것이다.

향후 통합과정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1996년 Turin에서 정부수반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부여된 과제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EU에 대한 조약을 심사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회의는 「의제 2000(Agenda 2000)」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인 동시에 전제조건이다. 또한 경제 및 화폐통합의 완성, 농업 및 구조정책의 조정, 준회원국들의 가입준비, 외국과의 관계 등 다른 분야의 문제에 대한 결정이 계획에 따라 1997년 6월 암스텔담 정부수반회의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수반회의에서 독일은 지속적인 유럽통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회의의 목표는 EU의 대내 및 대외적 행위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당면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법행정과 내무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주민친화적이고 민주적인 EU의 위상 증진
-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개선과 기구개혁, 조약에 보다 많은 유연성 부여

2. EU의 확장

유럽 분단의 제거와 함께 EU의 중심적 역할이 분명해졌다. EU가 당면한 도전은 공동체내의 대내외적 안보와 안정과 복지의 유지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인접국가들에게도 투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은 EU의 확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1년 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들과 준회원국 협정이 체결되어, 이 국가들의 EU 정식가입이 가능해졌다.

통합을 위한 백서(Weissbuch) 분야는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백서에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법률통합을 위한 권고안들의 세부목록과 EU 가입을 위한 입법·행정구조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개요들이 설명되어 있다. 모든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법률통합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EU 가입 준비에 따른 국가별 개혁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각료회의체(interministerielle Gremien)를 구성하였다. EU의 PHARE-프로그램(중·동부 유럽국가의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였다.

에센 EU 정상회담에서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EU로 끌어들이는 핵심적

전략요소로 결정된 EU와 중·동부 유럽의 준회원국들간의 「체계화된 회담 (Strukturierte Dialog)」은 장관급 회담으로 지속되었다. 1996년에는 수많은 분야별 장관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EU의 국가 및 정부의 정상들이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정상들과 회동하였다.

재정협력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진보가 있었다. 사회간접자본 대책을 위한 PHARE-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1996년 부터 1999년 까지의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탄력적인 프로젝트 지원과 계획이 가능해졌다.

1996년에는 사이프러스와의 가입협상 재개(정부수반회의 의결 6개월 이후)와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1차 가입협상이 시간적으로 겹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3. 서유럽동맹(WEU)

서유럽동맹은 EU의 방위요소이자 NATO의 유럽支柱로서 확충되었다. 모든 EU 회원국과 NATO 회원국 주변에 대한 확장작업이 1995년에 완료되었다(그리스는 정회원국으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터키는 준회원국으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참관국). 1996년에 편입된 슬로베니아까지 포함하여 모든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유럽협정을 통해 EU에 접근함과 동시에 서유럽동맹의 준회원국이 되었다. 준회원국과 참관국들도 정회원국과 함께 직접 WEU 주요기구에서 안보 및 방위정책 여론형성과 결정 과정에 공동참여한다. 또한 이들은 WEU의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WEU는 유럽안보·방위의 일체성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WEU의 작전수행 능력 확충작업은 인도적 임무와 평화유지임무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 6월 NATO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WEU-NATO간 군사작전 협력안에 따라 WEU는 작전수행을 위해 NATO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WEU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가지 작전들과 함께 페르시아만

지역의 지뢰제거 작전, 구유고슬라비아 봉쇄 감시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WEU는 대규모 경찰력을 Mostar의 EU 관할구역에 투입하고 있다. 지역방위의 임무 역시 NATO를 통해 계속해서 보장된다.

EU는 독자적인 군사행동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위기발생시 공동 외교 안보정책의 범위내에서 WEU를 통한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EU의 유럽 공동방위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또한 향후 EU와 WEU 간의 제도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1996년 3월에 개최된 EU 정부수반 회의 의제 중 하나였다.

4. NATO, 북대서양 협력회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회의

NATO는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에 따라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에 맞는 대내외적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NATO는 유럽안보의 지주인 동시에 유럽내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안보체제의 완전한 구성요소이다. NATO가 구현하고 있는 범대서양 안보동맹(Transatlantischer Sicherheitsverbund)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NATO를 통해서도 유럽의 변혁이 형성되었으며, NATO 또한 스스로 이러한 변혁에 적응하고 있다. 1996년 6월 베를린에서 열린 NATO 상반기 회의에서는 이러한 변혁과 적응과정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7년 7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다.

NATO는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내부적 적응을 추진하고 있다. NATO의 구조는 간소화·유연화되고 있으며, 분쟁예방과 분쟁극복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계발되고 있다. NATO내에 유럽 안보·방위의 일체성이 형성되었다. 그 목적은 향후 유럽인들이 NATO의 자원을 이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국제적 위기관리 부문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유럽의 작전수행 능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가입희망국들에 대한 NATO의 문호 개방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1997년 7월 정상회담은 가입희망국과 NATO 가입협상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사전준비로서 NATO는 1996년 부터 13개의 가입희망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벌여왔다. NATO는 개방정책을 통하여 회원국이 되고자하는 유럽국가들의 정당한 희망을 수용하였다. 이 정책은 그 누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많은 안정과 안보를 이룩하기 위한 유럽 전체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NATO는 계속 새로운 가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NATO는 러시아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NATO는 유럽공동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러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다. NATO는 협력증진을 위해 강력하고 탄력적인 기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보협력 관계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헌장(Charter)과 같은 형식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NATO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NATO는 우크라이나를 강화시켜 공식적 기반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NATO의 문호개방 정책은 많은 대화 및 협력정책을 수반한다. NATO는 북대서양 협력회의(NAKR)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회의(PfP)의 틀 속에서 지난 수 년 동안 긴밀한 협력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NATO는 이러한 협력체제를 질적인 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대화와 협력의 확충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과 함께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NATO는 동반국들과 함께 대서양 동반자회의(Atlantischer Partnerschaftsrat)의 창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기구는 새로운 단일 협의기구로서 정치적 분야에서의 동반자 관계 강화와 실질적 협력의 지속적인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NATO는 1995년에 개시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마우레타니아, 튀니지아)과의 쌍무적 회담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평화유지 작전(IFOR/SFOR)은 NATO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작전이었다. NATO가 지휘했던 동 작전은

러시아와 PfP-동반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을 포함한 35개 국가들로 구성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합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조성 과정을 공동으로 보장해가고 있는 것은 유럽협력이 질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긴밀한 협력과 동반자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유럽의 노력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1996년 12월 13일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인 다수의 찬성을 받아 독일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 임무에 총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게 된다. 약 2,000명의 육군병력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주둔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 하에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NATO는 OSCE, UNHCR(UN 난민고등판무관), OHR(EU 상임이사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기구 상호간의 지원개념은 실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NATO가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유럽의 안보적 공조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또 다른 NATO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정치적·방위정책적 노력 또한 NATO가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한 모습이라 하겠다.

5. OSCE의 확충

독일정부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OSCE(1994.12.31까지 CSCE)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CSCE는 70년대~80년대 동안 동·서간 대립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냉전이 종식되자 안보정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전유럽에 걸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확실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럽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국지적 분쟁은 지난 몇 년동안 계속 증가하였다. OSCE는 지역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유럽의 안정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OSC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 보고서의 보고 대상기간 동안 OSCE는 Dayton협정과 OSCE 리스본 정상회의(1996. 12. 2-3)를 통해 부여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임무를 수행하였다. 54개 OSCE 국가들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은 리스본에 모여 예방외교, 분쟁방지, 위기극복과 평화정착을 OSCE의 핵심기능으로 확정한 바 있다. 모든 유럽국가와 북아메리카의 양대 민주국가, 그리고 중부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유일한 기구인 OSCE는 유럽 안보체제 구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1세기 유럽의 공동 안보모델에 관한 리스본 성명서」의 채택으로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의 기본원칙들이 결정되었다. 전체 OSCE 국가들의 자유연합선거, OSCE 기본원칙들의 준수와 이행과 관련한 자국민과 OSCE 국가들에 대한 보고 의무, OSCE 임무 이행시 일치단결된 행동, OSCE 국가에 대한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협의 의무, OSCE 임무의 수호를 위한 공동조치, OSCE 국가의 투명한 국내 안보정책 수립, 군사계획의 다양성 확보 등이 OSCE의 기본원칙들이다. 1997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OSCE 장관 회의에서는 유럽 안보담당기구들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기본원칙과 공동안보강령 준비작업, OSCE의 틀 속에서 유럽안보현장을 의결하자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제안에 대한 토론, 예방외교 및 분쟁방지 분야에서의 OSCE 역할 강화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엔나의 OSCE 사무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개시하였다.

독일은 EU의 틀 속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리스본에서는 독일의 제안에 따라 1997년 장관회의 개최시 까지 OSCE 언론담당관 임명에 관한 법령을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 연방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OSCE 언론담당관의 기능은 기자들의 요청이나 제안을 심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OSCE 정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제안에 따라 리스본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인종청소(ethnische Säuberung)도 배격하며, 망명자와 추방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국제수준에 맞게 쉽게 귀환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약 32만명의 유고내전 망명자들의 귀환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96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OSCE 사상 최대의 작전을 통해 OSCE의 분쟁해결 능력이 실증되었다. OSCE는 민사작전 분야에서 Dayton 협정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감독하에 1996년 9월 14일 총선이 실시되었다(2,000명 이상의 OSCE 파견 선거감독관 중에서 약 160명이 독일인이었음). 또한 OSCE는 인권보호, 군축협상, Dayton협정 부속문서 1b 제2조와 제4조에 따른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OSCE 위임통치는 1996년 11월 21일을 기해 1997년 12월 31일 까지로 갱신되었다. 독일정부는 2년 동안의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적어도 1998년 말까지는 OSCE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말 이래로 독일인이 OSCE 작전군 부참모총장직을 맡고 있다. 내년에도 OSCE는 고위당국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인권상황을 감독하고 민주적 체제의 구축에 동참하는 한편, 군축과 신뢰구축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199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감시하는 임무는 주요임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OSCE는 SFOR상의 관련 작전계획을 따르게 된다. 독일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도 물질, 인적으로 OSCE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6년에도 OSCE의 예방조치에 계속 참여하였다. 독일은 10개의 OSCE 작전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중요했던 조지아공화국 임무는 독일 외무부 소속공무원에 의해 지휘되었다. 1996년에 연방정부는 정기 분담금으로 약 7백만DM, 보스니아특별기금 분담금으로 약 8백만DM를 OSCE에 납부하였다.

체첸 내전 발생시에도 OSCE는 Grosny에 지원단을 파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성사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특히 휴전협상과 전쟁포로 교환도 OSCE의 중재에 의해 성사되었다. 1997년 1월 27일에 실시된 의회 및 대통령선거도 OSCE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다. 독일정부는 연방국방부 직원에 이어 연방외무부 직원을 1996년 Grosny의 OSCE 지원단에 파견한 바 있다.

II. 통일독일의 책임 증대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문제해결에 있어 8,1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유럽 중심부의 경제최강국인 통일독일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강한 독일은 이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1.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독일

외교정책에 있어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통일독일의 책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독일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확인된다. EU와 NATO 체제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독일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관심사인 만큼,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친선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불관계는 유럽통합의 추진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양국관계는 비할 데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통합과 자유무역은 우리들의 풍요를 약속하는 기초이다.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단지 우리의 안보문제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도 독일은 미국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소련 승계국가들의 개혁 성공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판단에 있어 독일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과거 독일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변화무쌍한 세력판도 속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독일이 EU와 NATO에 결속됨으로써 해결되었다. 9개 인접국으로 둘러싸인 유럽 중심부의 통일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모든 EU 회원국과 함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수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외무부 공무원의 교류를 통해 전대미문의 밀접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EU의 내적 투명성은 곧 모든 회원국이 과거의 비밀 막료정책을 철폐하고 고도의 신뢰감을 구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중부, 동부 및 남부유럽의 안정과 소련 승계국가들에 대한 지원

연방정부는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 및 구소련 영토내의 신생독립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안정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동 내용은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1996.6)」과 「1994년 이후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구소련 영토내의 신생 독립국가에서의 개혁과정의 추이」에 대한 독일 연방하원의 질의(BT-Drucksache 13/5601)에 대한 답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자세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5년과 1996년에도 체제전환 과정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개혁과정을 검증된 정책을 통해 계속 지원하였다.

《 정치적 안정 》

<폴란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지난 수 년 동안 선린적 동반자 관계로서 계속 발전되었다.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가 일상화되었으며, 국경문제에 있어서의 난제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양국간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 대학간 협력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소위 「바이마르 삼각(Weimarer Dreieck)」이라고 하는 폴란드-독일-프랑스간의 3국간 협력관계는 유럽적 결속과 책임에 대한 특별한 의지의 표현이자, 확고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체코 공화국>

1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과 체결한 선린조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가인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각각 이전되었다. 이 조약은 독일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성공적인 회담과 협상에 의해 마련된 「독일·체코성명서」는 1997년 1월 21일 프라하에서 양국 정상과 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1997년 1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은 절대다수의 동의로 이 성명서를 비준하였다. 이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불법행위들을 상기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독일과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1992년의 선린조약을 기초로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슬로바키아 정부에게도 독일과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은 유럽 및 대서양 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의 희망을 지원 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민주적, 경제적 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헝가리>

독일·헝가리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1992년 「유럽에서의 우호협력 과 선린관계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freundliche Zusammenarbeit und Partnerschaft)」을 기초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헝가리간의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EU내 국가들간의 관계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이다.

<발틱해 국가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 재개 이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도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급격한 무역의 증가와 빈번한 정치적 방문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3개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원칙들은 1993년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이들 국가의 독립을 지원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들 국가들이 유럽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루마니아>

연방정부는 1996년에도 유럽 및 대서양 체제(EU, NATO)에 편입하고자 하는 루마니아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독일을 서방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 1996년 중반 이후 불가리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출발과 서구체제로의 접근을 향한 EU 준회원국인 불가리아의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의 매우 성공적인 정치·경제개혁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1996년 Herzog 연방대통령과 Kinkel 외무장관의 방문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났다. 1996년 6월에는 슬로베니아와 EU협정이 서명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슬로베니아의 서방체제 편입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 대한 1996년 독일의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크로아티아의 유럽협의회(Europarat) 가입(96.11.6 시행)과 동슬라보니아의 평화적인 크로아티아 국가연합 편입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독일은 크로아티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지원문제를 크로아티아내 민주화와 인권문제, 세르비아계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의 소수민족정책과 전범재판과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국제재판소(헤이그 소재)와의 협력의무 이행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마케도니아>

연방정부는 1996년에도 구유고슬라비아공화국내 마케도니아의 개혁과정
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6년 12월 13일 독일 연방하원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독일연방군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병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독일정책
에 있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는 공동노선이 존재함이 증명되었
다. 독일의회는 분쟁을 종식함에 있어 모든 관련국들이 공동책임의
길을 결연하게 갈 때에만 비로소 Dayton평화협정과 파리협정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평화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으며,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축
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Bosnia-Herzegowina의 재건을 위
해서는 안정된 안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잔인과 증오로 전쟁을 치른 후
다시 연대감을 구축하는 일은 1997년에도 외부의 군사적 보장장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SFOR의 맥락에서 독일은 앞으로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
속에서 군사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1996년 4월 19일 독일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해 독일은 특히 이 국가의 민주
화와 인권문제, 소수민족의 권리 존중, 전범 심판을 위한 헤이그 소재 국제
재판소와의 협력 및 Kosovo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EU내 국가들과의 협의하에 독일은 EU-유고슬라비아간의 긴밀한 협
력과 장기적인 지원 허용 문제를 이 문제와 연계하였다.

<알바니아>

독일은 알바니아의 체제전환 과정을 돕기 위해 1990년 이래로 약 5억DM

의 지원금(쌍무간 지원 또는 EU를 통한 지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알바니아는 유럽국가 중에서 독일과 EU로부터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국민 1인당 지원금 기준). 1996년에는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체제 구축에 대한 지원이 주된 관심사였다.

<러시아>

유럽의 안정과 안보는 민주러시아가 없이는 확보될 수 없으며, 오직 민주러시아와 함께만 보장될 수 있다. 비록 체제전환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비중있는 유럽정치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독일과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경제·정치적 개혁의 성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민주화와 정치적 안정, 경제적 건설성 회복을 통해 러시아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상을 점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정치에 있어 책임성 있는 정책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는 긴밀하고 신뢰에 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반환문제를 제외하고는 양국관계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우크라이나>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이 그 주변국 및 유럽 전체의 안정과 안보 확보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그들의 영토적 통합을 지지한다. 1996년에도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개혁과정 지원에 있어서 단일 지원국으로서는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의 중요한 동반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주성 확보지원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양국간에는 경제협력의 강화(전환프로그램의 확대 등)가 합의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거주 소수 독일인들에 대한 지원 협력에 대한 협정이 서명되었다.

<백러시아>

비록 백러시아가 1995/96년에 독일 등 여러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분야의 군비축소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황의 전개는 다소의 우려를 갖게 한다. 1996년 11월에 실시된 위헌적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원칙에 벗어나는 헌법은 백러시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로 평가된다.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적인 대중매체, 독립적인 노조들과 Lukaschenko 대통령 간의 관계는 민주화 과정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는 다른 EU의 동반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백러시아가 민주적 국가질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백러시아는 유럽의 협력체제 안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몰다우>

1996년 말 전국회의장의 승리와 함께 민주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자유롭고 공명하게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신생국 몰다우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몰다우 공화국의 영토적인 불가침성을 지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얻기 위한 Lucinschi 신임 대통령의 노력이 성공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연방정부는 몰다우 공화국의 영토적 단일성을 확실히 지지하며, OSCE의 틀 속에서 EU내 동반국과 함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아세르바이드산, 조지아 공화국>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Kinkel 외무장관이 코카서스 너머의 3개국인 아르메니아, 아세르바이드산, 조지아 공화국을 방문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이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독일과 이 3개국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 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지아 공화국은 1996년 10월 갑자기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지아지역으로 반출되었던 95,000권의 장서를 돌려 주었다. OSCE-Minsk그룹의 적극적인 회원국인 독일은 나고니 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사람이 연이어 세번째로 조지아 공화국에 대한 OSCE 작전의 참모총장직에 임명되었다. 「조지아 우방국(Freunde Georgiens)」의 회원국인 독일은 압샤시아/조지아 분쟁의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는

UNOOMIG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다비아에 선거감독단을 파견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시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도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이 국가내의 독일 소수민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나, 독일로의 재이주민(Aussiedler)은 서서히 감소되고 있을 뿐이다. Kinkel 외무장관은 1996년 5월 카자흐스탄과 알마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계 주민들에 대한 공동 지원노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타시키스탄은 아직 내전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무장반군간의 종국적인 평화유지 합의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독일은 OSCE가 수행하고 있는 감독임무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평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독일의 UN 특별파견관 Merrem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적 안정 》

지난 수 년 동안에도 역시 쌍무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원조국과 원조기관들이 체제전환 과정을 계속 지원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 서방국가들이 한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이 국가들의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노동 분담체제에의 편입을 통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다. EU협정은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닦았으나, 민감한 성격을 갖는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는 점진적으로만 가능한 상태이다.

국제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재정조달과 조정에 있어서는 국제금융기관(IMF, 세계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대규모 자본과 전문지식의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부담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또한 쌍무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로써 독일은 국제원

조국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쌍무적 지원조치들은 수출보증, 투자, 자문지원 및 해당국가와의 개발협력에 집중되고 있다.

《 헤르메스-수출보증 》

연방정부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투자재에 대한 재정수요를 대규모의 수출보증 인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개혁 노력을 돕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러시아 및 구소련 승계국가들에 대한 약 44억DM(1995년: 34억DM)에 달하는 신규 헤르메스 보증을 인수하였다. 국제보증 규모에서 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현재 13%를 넘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24억DM의 보증을 받아 헤르메스 보증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독일은 1997년에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15억DM에 달하는 예비자금을 러시아의 신용대부 수요 충족을 위해 마련해 두고 있다.

《 체제전환 자문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체제전환 자문프로그램은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을 쌍무적으로 지원·보장하는 유일한 지역별 지원수단으로서, 민주체제의 구축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시한 제반 체제전환 과정에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또한 이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돕는 한편, 이 국가들의 신속한 EU 편입과 경제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독일경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주체제의 구축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여건 개선 등 체제전환 과정에 효과적이고도 가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중동부 유럽국가 및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자문프로그램을 위해 1994년~1996년 동안 약 5억8,500만DM를 사용하였으며, 그 규모는 1997년에 1억7,700만DM로 줄어 들었다. 이들 국가들의自助를 위한 독일의 지원조치들은 탄력성과

효율성, 수혜국가들의 수요를 감안한 방향설정 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개발협력 》

연방정부는 중부, 동부 및 남동부 유럽에서 구유고슬라비아의 승계국가들과 루마니아, 몰다우, 알바니아와의 개발협력에 참여하였다. 그 중 루마니아는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1995년과 1996년 연방정부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국가, 경제, 사회, 행정분야의 개혁 지원과 인프라의 구축·정비, 법률 자문, 개인 사업자 지원 및 환경보호였다. 또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에 대해서는 재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적 재편성과 창업 지원에,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용대부 지원에, 그리고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는 국가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정부는 코카서스 너머 국가들(아르메니아, 아세르바이드산, 조지아공화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였다. 1995년과 1996년에는 재정 및 기술협력 계획을 위해 약 3억3,200만DM(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1억5,620만DM, 중앙아시아 국가들: 1억7,580만DM)에 달하는 재원이 지원되었다.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복구 및 경제개혁 프로젝트(중소기업 지원 포함)에 개발협력의 중점이 주어졌다.

《 채무상환기간 연장 》

러시아에 대한 공공채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독일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97년 2월 5일 Bonn에서는 독일과 러시아 간에 네번째이자 가장 대규모적인 채무상환기간 연장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1996년 4월 29일 파리클럽에서 약 400억달러의 러시아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다자간의 포괄적 합의인 파리의정서에 부속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채무상환기간 연장과정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의 채무에 대한 관대한 상환규정만이 러시아의 개혁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러

시아의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돕게 될 것이다. 파리클럽 중 가장 대규모의 채무상환기간 연장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일은 250억DM의 채권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러시아에 대한 지원 》

1996년 연방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은행들의 신용대부를 위해 총 40억DM에 달하는 연방보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제금융기관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양국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완전히 마감된 구소련군의 철수와 관련해 제반 지원조치들이 취해졌다(제2장, I. 2 참조).

《 민간투자의 촉진 》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분야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쌍무간 「투자 촉진·보장협정」 체결과 투자에 대한 연방보증의 제공으로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투자 촉진·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루마니아와는 1996년 6월 25일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9년 10월 12일자 구협정은 실효되었다. 마케도니아와는 1996년 9월 10일 「투자 촉진·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크로아티아와는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1997년 상반기에 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와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와의 「투자 촉진·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

중동부 유럽 및 러시아, 구소련의 승계국가들에 대한 독일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연방보증 건수는 1994년 12월 31일 321건에서 1996년 말 현재 429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9억DM의 투자에 대한 425건의 연방보증 신

청서는 아직 미결상태에 있다. 동 기간 동안에 투자보증으로 인해 연방채무는 37억DM에서 57%가 증가한 57억DM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국이 투자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헝가리의 1인당 외국인 투자액이 약 1,750DM(1995년말 기준)인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에는 33DM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구유고슬라비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Dayton협정의 이행>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협정(Dayton협정)의 이행은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위한 독일의 공동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1996년도 국제외교정책의 중점과제였다.

분쟁당사자를 성공리에 군사적으로 분할한 후, 국제사회는 동 지역에 대한 행정체제와 민주법치국가 구축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였다. OSCE의 보호와 독일의 인적·물적 지원하에 1996년 9월 14일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평화협약에서 합의된 공동대통령제(Gemeinsame Präsidentschaft)와 공동장관회의(Gemeinsamer Ministerrat)가 구성되었다. 1997년 1월 3일 공동의회(Gemeinsames Parlament)가 사라예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Mostar에 있는 EU 행정관리소는 1996년 말 그들의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으며, Mostar는 광역적인 평화협약 이행과정에 편입될 수 있었다.

평화공존과 공동재건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의지의 부족으로 1996년에도 자주적인 평화과정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각 분쟁당사자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조사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 각 분쟁당사자 중에서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군비축소와 감독에 관한 협약 이행과정에서 계속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적이며 장기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독일은 공정한 국제적 부담분배의 기초위에서 접촉그룹 및 국제평화회의(PIC)의 동반국가들과 함께 앞으로도 평화이행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동구권 거주 독일인을 위한 지원

동구권(중동부 유럽, 동유럽, 남동부 유럽)에는 약 300만명~350만명에 달하는 독일계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독일은 이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독일의 역대 정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이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다. 1989년 대변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소포발송이나 소규모 지원 등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독일인들에 대해 전후처리법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이 현지지원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동구권내 각종 경험있는 기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지 독일인들이 언어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계발하며 공동의 의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 사회, 경제적 지원책 이외에도 공동체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부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거주 독일인에 대한 만남의 장소 확장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학교 밖 언어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이 독일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지원은 가능한 한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중심의 급부제공 보다는 투자지원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조치들은 대부분 독일인이 아닌 이웃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독일인에 대한 지원조치의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조치들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지원 프로젝트들은 특히 독일인들이 모여살고 있거나 다시 모여살게 될 지역에 집중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서부 시베리아의 양대 독일민족郡인 Halbstadt와 Altai 지방과 Asowo, Omsk지역 및 Wolga강 유역의 일부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 그 외에도 Baden-Württemberg주가 참여하는 St. Petersburg지역의 시범프로젝트도 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오버슬레지엔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Oppeln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헝가리 등 다른 국가들에 살고 있는 소수 독일인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연방외무부는 각종 문화 및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3,020만DM를 지원하였으며, 연방내무부는 경제, 농업, 공동체 및 사회적 지원조치를 위해 약 1억5천만DM를 지원하였다.

1997년에도 지원조치들을 위하여 연방외무부 예산에 3,060만DM, 연방내무부 예산에 1억4천만DM가 책정되었다.

모든 지원들은 해당국 정부와 지역 행정관청 및 현지 독일인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동의하에 계획·추진된다.

유럽의 공동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구권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고장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들은 두가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양 민족간의 이해증진에 있어 중요한 교량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발도상국 지원정책

독일통일과 함께 동·서갈등이 극복되고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언을 고함에 따라 개도국 지원협력에 있어 행동반경이 넓어졌다. 또한 인구폭증, 빈곤, 환경파괴, 난민·이민사태 등과 같이 국제사회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자신도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념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동독의 개도국 지원정책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능한 한 이것들이 계속 이용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통일은 또한 구동독이 수행하던 106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우선 72개의 프로젝트만이 계속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통일독일의 개도국 지원정책의 제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동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종결되었다. 이것은 지원 대상국가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가능하고 의미있는 시점에 와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프로젝트들을 해당국의 책임으로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개도국 지원정책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상기 프로젝트들은 독일의 개도국 지원정책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구동독의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과 협력관계, 경험들은 일부국가의 경우 오늘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독일의 개도국 협력분야가 완전히 통합된 현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구동독의 긍정적인 공헌은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업무의 대부분이 연방의 업무로서 신연방주와의 특별한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신연방주는 이를 통해 적지않은 이익을 얻고 있다. 1991년~1995년 동안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13억DM 상당의 위탁업무가 신연방주 회사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신연방주 회사들로 하여금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이와같이 개도국 지원협력정책은 통일독일의 생활조건 평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6. 외국인 및 망명자 보호정책

1993년에 제정된 새로운 망명비호법의 3대 요소인 제3국 규정, 출신국 규정, 공항 규정은 1996년 5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연방외국인난민청의 연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망명비호법 개혁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망명비호권 신청자는 116,367명으로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127,937명이었던 1995년에 비해 9%(11,570명)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원인을 구유고슬라비아 사태의 안정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바, 동 승계국가들로부터의 탈출민으로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1995년에 비해 거의 12,000여명이나 줄어들었다(36% 감소).

망명비호권 신청자들의 출신국은 터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이란, 아르메니아, 자이레, 인디아, 파키스탄 등이다. 1996년 연방외국인난민청이 처리한 195,000건 중 7.4%가 망명비호권을 인정받았으며, 5%는 국외추방보호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망명비호권이 기각된 2,082명에 대해서는 독일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이들의 고국에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전쟁난민의 송환문제는 1996년도 독일의 외국인정책의 핵심과제였다. 독일은 약 345,000명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전쟁난민을 수용, EU 최대의 수용국가가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330,000명)은 Dayton 평화협정 체결 이후 1년이 지난 1996년 말 현재에도 아직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1994. 4), 유고연방공화국(1996. 10),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1996. 11)와 체결한 3개의 송환협정이 커다란 의미를 갖게된다. 동 협정을 통해 협정당사국들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국적이 증명될 수 있거나, 국적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송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재건프로젝트와 송환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쟁난민들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로의 귀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EU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7월 21일 서명된 독일과 베트남간의 송환협정은 초기단계에서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베트남은 약 6,000건의 송환에 동의하였으며, 약 1,80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996년 말 현재 체류허가 없이 독일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인은 약 4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주민 유입의 압력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독일의 동쪽 국경이자 EU의 외곽국경에 대한 감시업무가 대대적인 인원 보강과 장비의 투입을 통해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안 중인 연방국경수비대원 약 15,000명 증원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1996년 6월 18일자 연정의 「범죄인, 외국인 및 망명자처리법」 개정안(BT-Drucksache 13/4948)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등 체류권 박탈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 또한 심각한 국가평화 파괴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없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에는 반드시 국외추방 명령이 수반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구동독 시절의 계약근로자들(베트남, 앙골라, 모잠비크 출신자 약 1만여명)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담고 있다. 1993년 5년 14일 각 주 내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는 일정한 조건하에 체류자격이 부여

되거나 이와 연계된 체류권이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구동독에서의 적법한 체류기간 중 50%까지 8년의 체류기간 요건에 산입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상원이 중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언제 발효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독일이 의장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1994년 12월 22일 본에서 이루어진 「셩겐(Schengen)통과협정의 적용에 관한 의결」을 통해 당시 셩겐협정 7개 조약국들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995년 3월 26일 부터 EU조약 7a조의 자유통행권 보장을 이행하였다. 이를 통해 셩겐통과협정 국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 백만의 제3국 국민들이 사증 없이 다른 셩겐통과협정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셩겐 지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제3국 국민들은 1개의 사증만 발급받으면 되게 되었다. 이로써 셩겐통과협정은 유럽통합으로의 길목에서 또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1995년 가입)에도 가까운 장래에 셩겐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의 사증연방국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1996년 12월 1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셩겐통과협정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가입협정 및 의정서(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와 「협력협정(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 서명하였다. 아마도 1999년 부터 이들 국가에도 셩겐통과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보고대상 기간 동안, EU 국가간 협력의 차원에서 망명자 및 외국인 정책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법 및 내무행정 분야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EU 회원국 법무·내무장관 회의는 1995년 11월 23/24일 회원국들의 영토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제3국 주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결하였다. 동 결정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제3국 국민들의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 회의가 1996년 3월 4일 제네바 난민조약 제1조 A절에 있는 난민의 개념에 대한 일의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망명문제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조화라는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

어졌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내에서는 망명신청서가 일원화된 승인기준에 따라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또한 EU 내부적으로는 제3국 국민들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퇴치 분야에서의 협력체제가 개선되었다. EU 법무·내무장관회의는 불법이민과 불법취업의 방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조화로운 사증정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동 회의는 1995년 9월 25일 EU 회원국의 국경통과시 사증휴대가 요구되는 제3국에 대해 의결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항통과비자 도입문제와 사증발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영사대표부들간의 협력 강화문제도 토의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은 1996년 3년 4월 공식적으로 의결되었다. 동일한 사증형태에 대한 1995년 5월 29일자 EU 법무·내무장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1996년 9월 이래로 모든 회원국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한 동일한 모양의 사증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 12월 16일 EU 법무·내무장관회의는 일률적인 체류허가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다. 이것은 약 200개에 달하는 회원국내의 서로 다른 체류허가 명칭을 일률적인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EU역외 국경과 국내 기관에서의 심사를 훨씬 쉽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서에 대해 현재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보안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EU 회원국에 대해 「더블린 협정」이 발효되는 1997년 중반 부터는 망명권 심사 관할권에 대한 쾰른통과협정의 동일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7. 분쟁지역 관리에의 참여

유엔 차원에서의 분쟁조정과 분쟁해결 수단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은 인력, 물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7월 12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 조치에 대한 독일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독일은 유엔에 가입한 이래 인력, 물자, 작전 지원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독일의 첫 번째 인력 투입은 1989/90년 남미비아의 Untag에 연방국경수비대의 직원과 대원을 파견한 것이다. 그 후 연방군 병력과 연방국경수비대원, 각 연방주 경찰과 민간인들이 수많은 유엔의 작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독일이 국제적인 분쟁관리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희망은 독일의 외교정책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독일이 막대한 물자를 공급했던 걸프戰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군이 최초로 투입되었던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평화유지작전에서도 잘 나타난다. 유럽내에서도 독일의 주요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동부 유럽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에 관한 것이다. 구유고슬라비아의 평화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된 행동은 다른 분쟁지역의 분쟁당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은 EU, OSCE, 유고슬라비아-접촉그룹,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유고슬라비아 문제의 평화적 영구해결 노력에 시종일관 참여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독일은 Dayton 평화협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ATO 다국적군에 연방군을 참여시킴으로써 보스니아 평화유지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차원의 경찰작전인 IPTF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다. 구소련 승계국가내의 각 국간 분쟁과 소수민족간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독일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중에는 이란과 NATO 회원국인 터키 사이의 국경지역인 나고르니 카라박 지역과 조지아 지역에서의 분쟁이 있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분쟁관리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현지 독일대

사나 외교관들이 중재활동과 감시활동을 통해 분쟁당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쌍무적 예방외교 이외에도, 최근에는 지역기구와 그 산하기구들이 이러한 분쟁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 통일기구(OAE)인데, 동 기구는 1993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연례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외에 걸쳐 일어나는 각종 폭력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규제장치」의 마련을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OAE의 발의가 「補助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국제사회에 통용시킨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